

M46-10-2/2008.07

제10권 제2호/Vol. 10 No. 2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팀이 최근의 북한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정보/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70 전송 02-959-611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목 차

□ 포커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협력 현황과 과제 / 3

□ 동향분석

- | | |
|--------------|-------------------|
| 1. 농업정책 / 28 | 6. 농업기반 / 94 |
| 2. 벼농사 / 41 | 7. 산 림 / 102 |
| 3. 밭농사 / 66 | 8. 기타 작물 / 108 |
| 4. 감자농사 / 75 | 9. 기타 보도 동향 / 115 |
| 5. 축 산 / 83 | |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27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27
 -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138
 -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139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73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73
 -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77
- 북중 교역 동향 / 188
 - 1. 북한의 수입 동향 / 188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93

포 커 스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협력 현황과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협력 현황과 과제¹⁾

김 영 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ykim@kinu.or.kr)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식량문제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왔지만 아직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협력 추진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협력 현황과 당면 과제, 그리고 향후의 협력사업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북한과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등이 있다. 강원도는 농업보다는 임업이나 수산업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는 농업을 포함한 종합농촌개발사업에 관심이 많다. 제주도는 특산물인 감귤과 당근을 지원하였으며 경상남도는 경기도와 유사한 분야에 초점을 둔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농기계 및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는 각각의 특산물인 사과와 인삼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에 관심이 있다.

북한과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농업전문가의 교류를 포함하여 특화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른 협력사업과 차별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창구를 확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벼농사, 농장지대 조성, 합영농장 운영, 협동농장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복을 피하면서 체계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는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칙과 목표를 세우고 사전 계획하에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협력에 대한 연구와 통일교육원 강의 내용을 기초로 농업부문의 대북협력을 분석, 논문으로 작성한 것인 바, 기존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음을 밝힌다.

1. 북한의 식량상황과 지방자치단체 대북 농업협력의 의미

북한의 4~6월은 전년도 쌀 생산량이 바닥나고 감자가 생산될 때까지 기근이 계속되는 고통스런 감자고개 시기다. 중앙정부가 식량조달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 동시에, 식량의 공급부족에 따라 곡물가격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다.²⁾ 북한의 식량상황은 현재 외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대규모 기근은 아니라고 해도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8월 중순부터 가을 수확기까지를 가장 심각한(critical) 시기로 보고 있다.³⁾

북한의 식량문제는 어제 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1990년대 중반 발생했던 극심한 기근 현상도 북한 농업, 따지고 보면 북한 체제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였다. 비효율적 농업생산계획과 분배, 농민들의 영농의욕 감퇴에 따른 곡물 생산성 저하 등이 그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현재까지 식량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02년 7월 조치를 통해 북한은 가격, 임금인상, 환율 현실화, 원부자재시장개설, 경제계획 및 관리의 분권화를 비롯해 식량의 국정수매가격 인상, 농장의 농산물 자체처분권 확대, 생산요소 시장 개설 등도 시도했으나 농업생산성의 향상이나 식량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경제개선조치 추진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곡물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동시에 배급제 실시를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기도 했다. 더불어 북한이 취한 농지확장, 관개체계(2002 개천-태성호, 2005 백마-철산 물길 공사 등) 개선조치 등도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에는 식량생산에 필요한 자재 부족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다.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종자 등 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염소, 토끼, 오리 등 초식가축 사육 장려하고 있는 것도 곡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남한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북한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식량문제를 남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가 지자체 차원의 대북 농업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북한이 농업문제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대부분이 농업협력으로 대북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 협력은 정치

2) NGO인 (사) 좋은 벗들에 의하면(『오늘의 북한소식』) 쌀은 2007년 3월 1kg 당 750원에서 9월에는 1,500원으로 배 정도 인상되었으나, 2008년 5월에는 3,350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3) 권태진 박사, 2008.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북한 식량문제 세미나에서 언급.

성이 약하기 때문에 추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북 협력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다방면에서의 경쟁을 유도,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북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비교할 때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남북한 주민들을 동참시킬 수 있어 상호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도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다섯째, 통일시 남북 간 통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농업분야의 대북협력을 통해 농업생산성 면에서 상당한 성과,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보다 더 높은 단위당 곡물 산출량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이상의 관점과 연결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지자체 차원의 대북 농업협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다음, 지자체 차원의 대북 협력사업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2. 대북 농업협력 현황

2.1. 대북 농업협력 현황: 개관

남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 교류협력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부터다. 그러나 지자체의 대북 교류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호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의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대북 정보취득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북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계획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종합교류와 개별교류로 나뉘어진다. 종합교류의 대표적인 형태는 양 지역간의 자매결연이라고 할 수 있다.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인 교류수단으로 인적·물적 교류와 함께 다방면의 종합적인 교류를 위해 상호간에 맺는 형제관계의 약속을 의미한다.⁶⁾ 반면, 개별교류는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상호간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교류는 친선도모나 우호증진에 관심

4) 2002년 10월 부산 아시안 게임과 2003년 6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남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인사가 아닌 북한의 스포츠 인사와 응원단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5) 경기도의 당곡리 농업협력사업을 통해 2006년 1ha당 쌀 5.12톤을 생산, 남한 평균수확량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제시. 경기도청 제공 자료, <http://north.gg.go.kr/nambuk> 2008. 7. 22.

6) 한영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의 현황과 과제,” 「국제교류」, vol. 36 (1999), p. 15.

을 두기는 하나, 특정분야의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상업적인 교류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두어질 경우, 이를 전형적인 개별교류라고 할 수 있다. 개별교류의 대상 분야는 문화, 체육, 행정, 청소년, 종교, 경제·산업 등 매우 다양하다. 실제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교류 대상 분야에 포함되기도 한다.

2.2. 주요 지방자치단체별 대북 농업협력 현황

가. 강원도

강원도는 세계화·지방화라는 국제사회의 변화추세에 부응, 지방자치단체 중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처음으로 도지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평양을 공식 방문(2000.12.16~20), 남북 강원도간 협력을 위한 5개항의 기본합의서와 3개 협의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⁷⁾ 강원도는 지자체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자체 지역이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주력, 강원도가 물류기지, 평화교류 및 관광개발이라는 3대 모델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노력해 왔다.⁸⁾ 이미 1998년 12월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재정적인 기반 확보를 위해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 바 있다.

2005년 9월에는 남북교류 5주년 기념으로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남북 강원도 민속문화 축전’을 개최한 바 있다.⁹⁾ 본 축전에는 남북이 각각 200명씩 참가해 궁도, 씨름, 널뛰기, 그네뛰기, 줄다리기 등 민속경기와 농악, 민요 등 민속행사, 동양화와 민속공예품 등의 전시회를 가지기도 했다.

한편,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4만3천평 부지에는 강원도와 고성군 공동으로 「남북교류타운」이 건설될 예정이다. 본 「남북교류타운」은 오는 2008년까지 9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평화의 문과 교류협력관, 평화철책공원, DMZ박물관 등을 건립·구성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건립과 동해선철도·도로 건설사업과 연계한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7)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 쌍방은 씨감자 원종장 시설건설, 솔잎혹파리 방제, 연어자원 보호 증식사업,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대표단 초청 등 상호 방문을 실시하기로 합의. 남북강원도간 협력을 위한 5개항의 기본합의서 및 3개 협력사업에 대한 부속합의서(2000.12.19) 참조.

8) 통일연구원,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협동연구총서 03-06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103~104.

9) 남북강원도 민속축제는 2003년 12월 23일 강원도 대표단 23명이 금강산 육로로 원산을 방문, 당시 김진선지사와 민족화해협의회 김영대회장과 체결한 협정서에 포함된 사안이었다.

<농업분야 협력사업>

농업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강원도 차원의 대북 협력은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수산과 임업분야의 노력이 더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3개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2001년 3월 강원도는 먼저 북한과 북강원도 고성군 남강 하류에서 어린 연어 55만 마리를 공동 방류하는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본 사업은 분단 55년 만에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 공동으로 추진한 최초의 사업이었다. 이어 2003년 『안변 연어부회장』을 준공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2003.12.23 원산 송도원국제 관광호텔)했다.¹⁰⁾ 연어부회장은 연간 500만 마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와 함께 송어양식장과 수산양식종합단지 (연 50톤 생산규모)도 건립, 내수면 어족의 다양화와 대체식량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05년 『민속문화축전』을 계기로 강원도는 농림수산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를 도출, 동년 10월 강원도 농업전문가가 『원산농민기술강습소』를 방문했으며, 이에 상응하여 2006년 북한 농업, 임업, 수산 전문가의 강원도 방문에 합의한 바 있다.

강원도의 두 번째 대북 협력사업은 금강산 지역에서의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작업이었다.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작업은 2001년 6월부터 해마다 실시 2007년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9,500ha에 달하는 지역의 방제작업이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산림관계자들이 북한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학술적·기술적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방제기술과 방제요령을 전수하는 한편, 공동시범방제도 실시했다. 솔잎혹파리의 방제작업은 산림자원의 보호와 함께, 경제적 이익 및 설악·금강권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방제 결과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¹⁾ 그 외에도 북강원도 『잣나무넓적잎벌』 공동방제도 2003년 7월부터 2007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서는 기자재와 약품을 지원했다.

기타 농업협력 사안으로는 원산 농민기술강습소 보수(자재 212종 지원), 강원대학교로부터 씨감자 30톤(2000.4), 농협강원지원본부의 못자리용 비닐 2,400롤, 천주교 춘천교구청으로부터 옥수수 1천톤, 감자 300톤을 비롯, 연어부화설비 2종(자외선 유수살균기, 고압여과기) 등이 제공되었다.

10) 본 합의서에는 기 추진 협력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도로·건축·수산·산림분야 협력사업의 발전,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 개최, 겨울철 체육교류협력의 실현 등을 담고 있다. 합의서 이외 추가적인 논의사항도 있었는데, 2004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북측 공연단 참가, 춘천시와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공동제작 등이다.

11) <http://uni.provin.gangwon.kr>. 검색일: 2008.7.22

나.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001년 11월 도의회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를 만들었다.

본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남북협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대북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협력기금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 기타수익금 등을 통해 2008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나, 2005년 말 이미 227억 원을 조성, 도내 주민(법인단체 포함)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본 기금을 통해 경기도는 200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대북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는 또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한 기구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북 협력사업을 위해 ①호혜와 협력의 원칙, ②인프라지원의 원칙, ③공개성과 투명성 등 세가지 원칙을 두고 있다.¹²⁾ 호혜와 협력의 원칙은 대북협력사업을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협력사업에서의 역할분담방식을 지향, 남한이 물자, 기술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인력 및 골재 등 투입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인프라 지원의 원칙은 일회성, 전시성 사업은 지양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북한의 농업, 의료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개성·투명성의 원칙은 도민들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사업이 도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사전검토와 사후평가를 충분히 해나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도 2004년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우리민족대회'(2004.6.14~16)¹³⁾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조례(안)를 만드는 등 대북교류협력 전진기지로서의 인천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차원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금(200억 원 조성) 및 이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2004.7.23). 또한 인천항만공사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간 남포항

12) <http://north.gg.go.kr/nambuk> 검색일: 2008.7.22

13) 본 대회에 북한은 126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으며, 남측에서는 여성, 청년, 노동, 농민,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총 450여 명이 참석한 바 있다. 본 행사는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된 것은 아니나 지방에서 처음 열린 남북공동행사라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행사장 곳곳에서 북측 대표단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본 대회의 참여가 배제된 기관(법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등)의 항의 시위 등 추진위와 정부간의 갈등이 연출되기도 했다.

현대화 사업 등에 관한 의향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2005.11.5). 양측은 인천항과 남포항간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민족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교류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남포항 현대화 사업을 비롯, 인천항과 남포항간 항만 및 해운 분야 교류사업 추진, 교류협력사업 실현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 등이 포함되어 있다.¹⁴⁾ 그 밖에도 인천시는 개성직할시와 '2008년 펜타포트 인천전'을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농업분야 협력사업>

대북 농업분야의 협력에서는 경기도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경기도는 2002년 양강도에 농기계(경운기) 200대와 지붕개량을 위해 10억 원을 지원했으며, 2003년 북한 민화협과 교류의향서를 체결, 제2차 방북(2004.4.6~10)을 통해 농업, 보건, 식품, 구호 등의 분야의 지원을 추진했다. 경운기 100대와 콤바인 20대, 치과장비 5세트, 환자수송용버스 5대, 북한 민화협과 평양 시내 곡산공단 내 하루 2톤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당면생산설비를 설치할 것에 합의, 2005년 준공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본격적인 북한 농촌근대화사업이 추진되었다. 2005년 경기도 대표단이 개성을 방문(2005.4.13), 합작 벼농사 시범농장을 평양 외곽에 조성할 것을 제안,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측으로부터 '벼농사 시범농장(당곡리 협동농장)'을 남북공동으로 경영하는 데 합의했다.¹⁵⁾

농촌근대화사업은 농기자재지원을 비롯, 농업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농기자재 지원은 농약, 분무기, 손수레, 경운기, 콤바인 등을 지원한 것을 들 수 있으며, 농업협력사업은 모내기 등 벼농사를 실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육묘장 설치, 이앙기 및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도로포장, 도정공장, 농업용 관정공사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학교 보수, 탁아소 및 진료소를 신축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림녹화사업도 추진되었는데, 개성시 개풍 양묘장(9ha) 조성을 위해 양묘하우스 5톤 트럭, 경운기, 트랙터, 조상기 등 농기계와 양묘용기, 상토 등 기자재, 잣나무 종자 등을 지원했으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50만본 규모로 양묘장(3,300㎡)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08년에는 백합나무 종자, 소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등을 비롯하여 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동, 창고, 차고, 발전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14) 『서울신문』 (2005.11.7)

15) 『서울신문』 (2005.4.14)

경기도의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사 업 내 용	대상지역
2002년	경운기 200대, 지붕개량제 180천㎡, 축구공 2002개 지원	양강도
2003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교류의향서 체결	-
2004년	농업 : 경운기100대, 콤바인 20대 보건 : 치과장비 5세트, 환자수송용버스 5대 식품 : 평양 식품가공공장 설치(착공) 구호 : 긴급 구호 의약품 지원	황해북도 " " 평양 룡천역 폭발현장
2005년	벼농사 시범사업 : 3ha 농기자재 지원 - 농약 150톤, 분무기1200대, 손수레1400대, 경운기 100대, 콤바인 20대, 평양 식품가공공장 설치(준공), 가극 '금강' 공연사업 지원	평양 황해북도 평양 평양
2006년	북한농촌현대화사업 - 농업협력사업 : 벼농사 100ha - 농업기반조성사업 : 육묘장 3,600평 설치, 이앙기500대 도로포장, 도정공장, 농업용 관정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소학교 보수물자 지원 등	평양
2007년	북한농촌현대화 사업 - 농업협력사업 : 벼농사 200ha - 농업기반조성사업 : 농기계수리센터 착공, 유치원 보수 완료, 도로포장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소학교 보수완료, 탁아소· 진료소 신축 산림녹화사업 - 양묘장조성(9ha) : 2011년 이후 150만본 묘목생산규모 잣나무 종자양묘 하우스, 농기계, 농자재 지원 등 북한수해물자 지원	평양 개성 수해지역

자료: <http://northgg.go.kr/nambuk> 검색일: 2008.7.22

경기도는 개성지역 산림녹화사업을 통해 북한의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녹화 및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무심기행사 등 도민 참여를 유도, 도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및 지지를 높이는 한편, 재선충·솔잎혹파리·송충이 등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도 병행 추진 할 계획에 있다.

경기도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은 성과면에서 볼 때 성공적이었다. 2003년 기준, 1ha 당 수확량이 2.7톤이었던 것이 4.94톤으로 획기적인 증산을 시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상토제조법』, 『보온절충못자리』 등 농업기술교육을 통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당곡리 400ha의 기계이앙을 실시, 평양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지 않고 모내기를 완료하는 등 인력감축의 효과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시범농장의 면적을 단계적으로 100ha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2006년 평양시 강남군을 대상지역으로 확정한 바 있다. 2007년에는 다시 벼 재배면적을 200ha로 확대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06년에는 당곡리에서 생산된 쌀이 남한으로 반입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경기도는 비닐하우스를 통한 채소시범재배 사업도 추진했다. 채소재배는 북한이 2006년 재배하여 소득을 올렸던 방울토마토, 오이를 주축으로 작물재배와 기술전수를 추진했으며, 2006년 핵실험으로 인해 마무리되지 않았던 도정공장 및 농산물 보관창고를 전문기술자 투입과 추가자재를 지원·완공했다.

북한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사업은 교육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을 개보수 및 신축하는 것이 주 대상이었다. 소학교, 유치원 등 창호와 지붕교체, 도색 및 교육기자재·유아놀이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진료소와 탁아소 건립(2008년 완공예정) 및 주택 보수(59호 상당)도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신축하고 있는 주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호, 출입문 등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대북 농업 시범사업은 ‘당곡리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 농업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본보기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고 형편이다.

다. 제주도

제주도는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백두산과 한라산 교차관광이 장관급 회담의 합의사항(제3차 회담)으로 정해질 만큼 남북 당국자 회담 및 교류협력의 중요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¹⁶⁾ 남북교류협력사업 차원에서 제주도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33,179

16) 이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Island of Peace)”이라는 이미지 제고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1999년 12월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국가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가 단순 관광지로서만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평화회담장소의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부찬, “남

톤의 감귤과 당근 6천 톤을 북한에 보낸 바 있다.¹⁷⁾ 북한은 이의 답례로 2002년 5월과 11월에 도지사사를 포함, 500명의 제주도민을 초청, 평양과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3년 8월에도 3,000여 명의 대규모 도민방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북한의 요청에 따른 씨앗지원을 비롯, 한라산-백두산 교차 학술탐사가 있다. 2008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교류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주요정책 자문, 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 지원, 교류 협력 촉진 추진계획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해 2017년까지 제주도 및 민간 출연금 등을 통해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라.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2005년 4월 도의회 제226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도지사가 위원장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와 북한 관련 교수, 평통자문위원 등 도내 각계 인사 30여 명으로 구성, 기금조성방안을 확정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기금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이나 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본 기금은 법인이나 단체, 주민의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투입되거나,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협력 증진 분야에 쓰이게 된다. 경상남도는 실무기획단을 통해 북한측 창구를 확보하고, 농수산 분야와 농기계 분야 등의 지원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¹⁸⁾

<농업분야 협력사업>

경상남도의 대북농업협력사업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협동농장을 매개로 종합적인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되, 자체 선진농업기술을 북한에 전수, 농업분야의 경제적 효과를 담보하는 방향에 주력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농업분야에서 대북 협력사업을 추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북교류협력과 제주 평화의 섬,” 『제주발전연구』, 제4호 (2000), p. 10.

17) 대북 감귤보내기 운동은 지난 1998년 과잉생산에 따른 처리를 위해 북한 지원과 연결됨으로써 시작된 사업이긴 하나, 「남북협력제주운동본부」가 동포에 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 남북 지역교류로 정착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라일보, 2005.3.26.

18) 「연합뉴스」 (2005.4.13).

저 2006년 4월 장교리 협동농장에 벼육모농장 준공식 및 이양기를 전달을 계기로 현재까지 농업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추진주체는 경상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대북지원단체로서 통일부 승인)다. 본 단체는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공동협력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6년 경상남도는 200ha의 공동벼농사를 비롯, 24동에 달하는 남새온실을 건립, 4계절 각종 채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양기 250대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지원했다. 이에 대해 북한도 2007년 2월 통일딸기와 북한이 생산한 쌀 1톤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경상남도민 97명이 김해-평양 직항기를 이용 방북(2007.4.9)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경상남도는 북한으로부터도 딸기모종 년 10만주를 반입하는 통일딸기 생산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07년에는 농촌 소학교 건립 및 수해피해지원에 주력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은 2008년에도 이어져 농업 및 교육사업, 과수원 조성사업, 수해피해 가정집 복구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소학교 건립은 농업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장교리 협동농장 내 1,920㎡(580.8평)에 달하는 2층 콘크리트 구조의 소학교를 건립하는 것이다. 본 사업을 위해 경상남도는 시멘트, 철근, 창틀, 교구 등 기본자재를 지원했다. 준공식은 2008년 후반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2007년 수해피해를 입은 농촌가정집 복구사업지원에도 나서, 20가구의 가정집 복구를 위해 각종 건설자재를 제공한 바 있다.

장교리 협동농장 협력사업으로 쌀 생산량은 25% 정도가 증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⁹⁾ 남새온실(1ha) 재배 채소 수익도 전체 400ha 수익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딸기 모종의 경상남도 내 반입역시 경남 농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 기타 지자체

전라남도는 2003년 5월 도의회 차원에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 2004년부터 대북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 3월 황해남도 대동군과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12억 6,000만 원 상당의 콤바인과 경운기 등 농기계 지원했으며, 1억8천여만 원을 들여 농기계수리공장을 준공한 것을 비롯,²⁰⁾ 시범농장 지원에 9,900여만 원 등 총 17억 8,600만 원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 지원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못자리 지원물자와 농사용 비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

19) 경상남도 행정과 직접 문의 결과(2008.7.22)

20) 총 12억 원을 들여, 대지 1000천 평에 250평의 건물(공장동, 창고, 사무실, 경비초소 각 1동)을 2003년 9월에 완공.

기계, 비료 등 영농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 평남지역 수재민 돕기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 2007년에는 평양 발효콩 공장 준공식에 참여했는가 하면, 2008년 1월에는 북한 대동강 어린이 빵공장 건립을 위해 지원하기도 했다.

전라북도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대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군의 보조금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도 3억, 14개 시·군에서 각각 5천만 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 농기계수리공장 건설과 경운기, 콤팩트 등 농기계 지원을 위해 약 15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 2004년 3월에는 전라북도 부지사가 북한을 방문, 북한의 민화협과 협의하고, 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다.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남북협력 사업은 제천시의 삼일포 과수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3월 충청북도 제천시와 북한 고성군이 과수사업을 위한 종자교환 및 기술교환을 시작, 2006년 1,600그루의 사과나무에서 사과 1톤, 800그루의 복숭아나무에서 1.5톤의 복숭아를 생산했다. 현재 과수원의 규모를 10만평 규모로 확장하고 생산된 과수를 금강산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2006년 인삼을 생산가공하는 합영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금산지역 인삼재배 농가와 인삼가공업자들이 설립한 「통일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북한 광명성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07년 6월 합영회사의 이름을 「통일고려인삼」으로 확정하고,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평양 나들목 인근에 준공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충청남도가 추진하면서도 민간사업자의 협력이 뒷받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부산광역시는 2000년 10월 제81차 전국체육대회 금강산 채화를 통해 남북교류를 시작, 2002년 「통일아시아드」에 북한 선수단 참가²¹⁾ 및 부산시장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북한교류협력단」이 북한을 방문(2002.8.26~30), 지자체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 본 방북에서 부산지역 산업생산의 특성을 살린 신발과 섬유, 수리조선, 수산, 항만건설 및 운영분야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협력의정서를 교환한 바 있다. 2004년에는 북한 룡천 참사에 따른 구호물자 제공, 2006년 2월에는 북한 만경대 소년학생공전 학생작품 70여 점이 함께 전시하는 ‘남북학생교류전시회’를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다. 2007년 4월에는 부산 의료인이 주축이 된 국제의료봉사단체인 YMCA 「그린닥터스」가 개성공업지구내 개성협력병원으로 개원했다. 그 밖에도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내 항생제 공장건립을 위해 6억5천만 원을 지원, 준공식에 참가(2007.8.3)한 바 있다. 2007년 7월에는 부산시 남북협력조례를 공포

21) 당시 북한 응원단의 숙소이자 수송수단이었던 만경봉호가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정박했고, 북한을 응원한 서포터즈 아리랑의 인원이 1천명을 넘었다.

하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상공회의소장을 비롯한 언론, 종교, 교육, 금융, 체육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장 29인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발족, 체계적인 대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2.3. 대북 농업협력의 특징과 의미

대북 농업협력은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 규모도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의 농업분야 대북 사업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은 대부분 북측에서 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업분야의 협력을 시작으로 대북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농수산 분야의 기자재 제공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당면한 심각한 식량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농업협력사업이 지원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농업협력사업은 북한 농촌분야 종합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 농업협력사업은 추진과 관련된 기반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기본적으로 벼농사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생활 및 주거환경사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벼농사와 관련해서는 남한의 기술이 전수됨으로써 농산물 생산량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육모하우스 설치, 농업용 지하수 개발, 농로 및 마을 진출입 도로개보수, 도정공장 및 창고, 농기계수리센터 건립 등이 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농업 관련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탁아소, 진료소 건립, 주택 및 학교 개보수 자재 지원, 의약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분야의 사업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양묘장 조성과 같은 사업도 북한 지역의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고 수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이상과 같은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북 농업협력사업 규모는 매우 영세하다. 대체로 각 지자체의 대북 농업사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은 적게는 몇 천만 원 많아도 몇 십억 원을 지나지 않는다. 대북 농업협력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2년 양강도 지역 인도물자지원에 10억 원을 사용했고, 「룡천역폭발사고」에 13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2005년 벼농사사업과 식품가공공장 설비지원에는 21억 원, 2006년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와 관련된 사업에는 43억 원 정도를 사용했다. 농업협력이 인프라 시설을 포함한 종합개발차원의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대북 농업협력은 투입한 노력만큼 성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대북 벼농사 사업은 그것을 추진하여 불과 1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북 농업협력은 바로 이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은 남한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남한으로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농업협력사업을 통해 곡물의 생산량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곧바로 얻어낼 수 있다면, 향후 보다 이 부분에 집중하여 농업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북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농업분야의 기술을 남한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을 수 있으며, 벼농사 등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대남한 인식이 변화하고, 북한 스스로가 가진 영농구조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이점을 창출하고 있다.

3.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지자체의 대북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과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 가능하다.

먼저 농업분야협력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농업협력사업의 추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농업이 당면한 현실적인 면과 구조적인 면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경쟁적 차원에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목이 집중될 경우, 여타 지자체들도 이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대북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자체 대북사업의 성사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사업의 실천보다는 북한 농촌지역이나 협동농장과와의 자매결연부터 추진하려는 경향을 내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의 하나라고 하겠다.²²⁾

22) 김학성·최진욱,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1), p. 79 및 p. 87.

셋째, 각 지자체는 개별 대북 접촉 창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접촉선을 확보하지 못해, 대북 사업 기업이나 민간단체(굿네이버스, 우리민족서로돕기 등)에 요청하거나 중국을 통해 중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는 지자체간 교류협력이 정부 당국자를 접촉창구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북한이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서도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하급기관이 중앙기관에 예속되어 통일적인 지도를 받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²³⁾ 이에 따라 남한의 지자체가 대북 농업협력을 위해 북한의 지자체와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지극히 적고 협력 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도 많지 않게 된다. 농업협력이 토지와 지역을 매개로 하고 있는 이상, 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실질적 의미에서의 농업협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넷째, 지자체 대북 사업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의 추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업신청단계에서부터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중앙정부의 ‘교류협력기금 신청 가능성’을 들어 사업예산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는 경향도 엿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의 민간사회단체 또는 독지가 등 지역주민들로부터의 모금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북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기에는 규모면에서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다섯째, 지자체 대북 사업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농업협력을 비롯, 실제 사업승인을 받은 대부분의 사업이 무산되는 데에는 북한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자세가 주원인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외적인 폐쇄성과 경직성이 완화될 수 있는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대내개혁과 개방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농업분야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여섯째, 북한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남한 지자체의 의도를 심분 활용, 지원성 대가를無理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도 지자체 대북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실무접촉이 필요해 방북하려는 경우에도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추진 이전부터 이에 대한 의욕을 감퇴시키기에 충분하다.

23) 김학성·최진욱, 앞의 책, pp. 94~95.

4. 대북 농업협력 방향과 활성화 과제

4.1. 대북 농업협력의 기본방향

지자체 차원의 대북 농업협력은 정부차원의 이념이나 체제를 극복, 남북주민간의 동질성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북한 사회의 다원화를 촉진, 북한 내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의 대북 농업협력은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농업구조, 특히 협동농장의 구조와 운영체제를 변화시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대북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이 당면한 식량난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2. 대북 농업협력 활성화 과제

가. 벼농사 사업의 강화

벼농사 사업의 강화는 북한이 당장 당면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기간에 추진 가능하다. 벼농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비교적 소규모의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나, 효과가 큰 사업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①이모작 재배를 위해 농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거나, ②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매몰 농경지 복구를 위한 장비 및 물자대여, 양수장 복구, 간척지 복구 및 제방보강사업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③씨감자 조직배양시설 및 증식장치시설, 검증장비, 시약, 저온저장시설 건립을 비롯하여 ④곡물 종자보관, 정선시설 및 육묘장 건립, ⑤복합 미생물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기술제공, 생물농약 생산 및 농기계수리, 정비시설 확충, ⑥축산물 가공시설, 사료공장, 초지조성을 위한 풀 종자 및 각종 투입물 제공, ⑦양어장 건설 및 운영, ⑧경사지 복구를 위한 물자, 장비, 조립을 위한 양묘장 복구,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한 장비 및 약품을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 농장지대 조성

남북한이 공동으로 농장지대를 건설, 운영하는 농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성되는 농장지대에는 남한의 대기업을 포함, 해외로부터의 농업투자를 유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생산자와 협력하여 남한이 영농비 일체를 부담하되, 그 결과 생산된 농작물을 남한에 들여오거나 북한 식량난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적절히 분배·소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합영농장 운영

남북한이 합영농장을 건설하여 공동운영하는 방향으로 대북 농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합영농장은 농자재와 농산물, 농업생산기술과 전문가, 자본 등이 교류되는 농업분야의 종합적인 협력사업으로 단순한 경제사업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영농장은 상호 화해협력과 신뢰관계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은 물론, 남북교류 확대의 교두보로도 작용할 수 있다. 북한 또한 합영농장을 통해 새로운 농업 기술과 품종,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농업개혁과 농업구조개혁에 좋은 사전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합영농장을 통해 북한과 시범 계약생산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지역의 생산여건을 감안, 해마다 계약재배 품목과 수량을 결정한 후 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한에게는 농산물 수급안정, 북한에게는 외화획득의 기회가 부여된다. 남북한간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면 농업관련 기술, 품종 및 인적 교류효과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농업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 협동농장의 구조 개편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농업 내외부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농업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협동농장의 구조 개편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북한 전역에 걸쳐 단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농업기술발전 및 이전, 인센티브제 확대·강화 등과 같은 농업관리방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관리방식의 개혁이다. 비록 체제전환 차원은 아니지만 농업개혁의 문제로서 협동농장의 운영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북한 농업이 당면한 문제는 투자부족과 유인 결여에 따른 생산부진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협동농장의 개편은 농업경영구조의 개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개혁을 통해

농장원의 생산의욕을 북돋우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협동농장 개편은 그것이 스스로를 겨냥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결정은 신속하게 내리되, 추진은 비교적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 농업협력이 남북간에 긴밀하게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협동농장 개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중앙 정부의 권한을 협동농장으로 이양, 농민의 소득이 노동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동농장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유효한 조치로는 ①중앙계획기관이 협동농장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협동농장 스스로 생산수요와 수익성을 감안하여 생산품목을 정하고 생산량의 구성 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②자재공급에 대한 계획기관의 배분계획을 철폐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으며, ③협동농장이 다른 협동농장 또는 농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방법을 통해 자재의 품질과 가격을 고려하여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④농기업 근로자의 고용, 승진, 해고에 관한 모든 권한을 협동농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⑤협동농장이 국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임금이나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협동농장 개편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서 협동농장 생산물에 대해 점진적인 가격 자유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생산 증가분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개편을 시도한 후, 이를 전 과정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산할당량을 초과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국가기관에 판매할 때는 매매 쌍방의 합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 인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 및 서비스, 주요 농산물의 매입가격, 주요 원자재 및 원료, 전력, 주요 소비재가격, 교통요금 등 서비스 가격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일정기간 관리하다가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생산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가격 자유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4.3. 대북 농업협력 활성화 전략

대북 농업협력 활성화는 남한의 대북 정책, 북한의 대남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와 같은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북간의 농업협력이 활성화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농업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농업협력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점 또는 돌파구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농업협력을 위한 대내외 환경이 긍정적 방향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요구되는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농업분야의 남북협력은 북한 주민에게 있어 절실한 문제이자, 북한 당국이 타 사업에 비해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사업이다. 따라서 벼농사의 확대를 통해 남북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심기나 벼 베기 등 농번기 때 대규모의 남한 인력이 북한으로 가서 일손을 도우고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하려는 욕심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남북한 관계개선 상황에 맞춰 점진적·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다. 초기단계에서는 벼농사사업에 주력하되, 지자체의 능력과 특성에 맞춰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부터 추진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대북 농업협력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합영농장의 개설이나 협동농장의 구조개편에 주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가 요구된다. 먼저,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대북 사업의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지방간의 연결체제 확립에 중앙정부가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북 농업협력사업 및 협력대상기관의 선정, 대북 접촉 창구 및 추진과정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 상호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 신속하게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협력 사업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바,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요구된다. 특별교부세를 통한 출연금 확충 및 이의 운용수익금을 활용하거나, 대북 농업 관련 사업투자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지자체 차원의 대북 농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지자체가 일반적 대북 사업에 포함하여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북 농업협력의 중요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분야의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절차를 마련해 놓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업협력사업의 범위, 추진절차, 전담부서의 설치, 재정보호, 사업보고 및 평가 관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거나, 대북 농업협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조직이 구축되면 대북 농업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 계획수립과 관련기관의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관장할 필요가 있다. 담당부서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맡게 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규모나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 과 단위 또는 '사업단위팀' 규모로 출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전담기구의 편제는 해당업무의 성격과 기구규모를 고려하되, 기능적 유사성이 있는 기존기구 내지 새로운 기구로 확대·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체계적인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간 상호연락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 필요한 정보획득과 업무연락 및 협의를 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기구간 네트워크를 형성, 대북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형태다. FAO나 WFP와 같은 농업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연계하여 다국적인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대북 농업분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²⁴⁾

5. 결론 및 정책시향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지자체 차원의 대북 협력사업은 앞으로 남북관계 전개양상에 달려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 전망과 남한 정부가 표방하는 대북 정책의 실용과 생산성에 입각한 상생·공영의 사업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대북 농업협력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앞으로 이상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의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과 인력의 정비, 재정적 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대북 정보획득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체계적인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북한과의 대북 농업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자체간 경쟁에 떠밀려 서둘러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 무리한 웃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며, 중간브로커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직면할 수도 있다. 사전에 미리 미리 사업의 목적과 조건, 대상기관 등을 선별하고 시간과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지자체의 재정자립능력을 제고하고 중앙으로부터의 예산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대북 농업협력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능력이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북 접촉시 많은 어려움이 제기된다는 점을 염두에

24) 함건식,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01-PR-01 (2002. 1), pp. 73~74.

둘 필요가 있다.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한 접촉이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북한과의 직접 통신이 불가능해, 접촉이나 협상을 위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신뢰성 있는 북한 내 사업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책임 있고 지위가 높은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사업 추진의 원만을 기할 수 있다. 신뢰성 있는 북한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거친 후, 본 사업에 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²⁵⁾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방북을 할 경우, 처음에는 중요한 합의 없이 답사 차원에서 추진하고, 제2의 방북, 제3의 방북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남한 지자체의 능력과 부담 정도를 저울질 할 수 있어 좋다. 북한이 남한 정부 제출용 계약서 외 별도 사항을 담은 이면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면계약은 대부분 무상지원에 대한 약속과 이에 대한 대가로 방북을 허용하거나, 사업 추진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기 쉬우며, 북한의 요구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한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5) 김영윤, 「남북경협 실패사례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4-08,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13.

동 향 분 석

1. 농업정책
2. 벼농사
3. 밭농사
4. 감자농사
5. 축 산
6. 농업기반
7. 산 림
8. 기타 작물
9. 기타 보도 동향

동향분석 요약

올해 공동농사에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체로 농사짓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농업의 주요 정책방침으로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을 내세우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선식 정치사업을 조직하도록 하고 있음.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면한 중요 사안임.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관개시설, 농기계 설비, 영농자재, 노동력 확보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또한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해 씨레치기를 확실히 하고 있음.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두벌농사 적지 선정과 품종배치, 종자확보사업에 힘을 기울여 밀, 보리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따라 콩농사를 짓고 있으며 콩농사 면적을 늘리기 위해 콩재배기술, 방법 등을 전파하고 있음. 또한 식량문제를 자체로 풀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강냉이심기가 추진되어 전국적으로 강냉이 심기에 돌입하였음. 인민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함을 강조하며 올해 감자생산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준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대로 종합적인 기계화 수단을 이용하여 감자심기 속도를 높이고 있음.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풀먹는 집짐승 수를 늘려야 한다는 당의 축산 정책에 따라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가 실시되고 있음. 특히 수익성이 대단히 높은 토끼와 농사에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부림소 관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평안남도 잠진-대보물길 1단계 공사가 끝나고 통수가 시작되었으며, 미루벌 물길공사 지원을 통하여 여러 개의 물길굴을 완공하였음. 토지정리사업을 통해 파종면적을 늘리고 있으며 큰물피해를 막고 강하천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위해 이용하기 위하여 강하천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물보장 사업이 추진되어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음.

전국 각지에서 나무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음. 또한 나무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바람피해, 병해충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산림조성 못지않게 산림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산림보호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과일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과일나무밭 면적을 늘리고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많이 심기 위한 작업이 실시되고 있음. 각지에서는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기후풍토에 맞는 과일품종을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더 많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 비배관리 기술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농업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내부예비의 동원을 통해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이용률과 가동률을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농기계수리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물활성퇴비, 흙보산비료의 높은 생산을 보장하고 있음. 각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장마를 통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1. 농업정책

-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체로 농사짓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농업의 주요 정책방침으로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을 내세우고 있음.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고 화선식 정치사업을 조직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정책

-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 힘있게 전개(로동신문 5.3)
 - 김정일은 “농촌에서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 밑에 지원노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자체로 짓는 운동을 적극 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평안북도 농촌에서는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농사에 대한 농장원의 주인다운 자각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에서도 자체로 농사를 짓는 농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 황해북도, 황해남도에서는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 자체로 농사를 짓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연안군 읍협동농장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고 있음.
- 모든 힘을 집중하여 올해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자(로동신문 5.6)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면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전국의 농근맹조직과 농업근로자에게 호소하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업근로자 모임이 5월 5일 현장에서 진행됨.
 - 모임에는 강창욱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용선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고인옥 황해북도 당위원회 비서, 미곡협동농장 근로자들이 참가함.

- 보고자, 토론자들은 일꾼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받들고 농장의 지대적 특성과 토양 조건에 맞는 다수확품종을 선택하고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며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야 함을 주장함.
- 또한 농장에서 모내기계획을 날짜별, 포전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함.
-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고 사회주의 경쟁요강이 발표됨.

○ 작전과 지휘를 현장에서(로동신문 5.18)

- 농업성에서는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당면한 모내기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모내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풀어주는 한편 선진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지난 기간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적은 영농물자와 노동력으로 모내기를 제철에 해낸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면서 대중을 고무시키고 있음.
- 또한 성에서는 소식재배방법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 있음. 그리하여 서해별방지대 농촌에서는 물론 전국의 많은 농촌에서 소식재배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음.
- 서해곡창별에 나간 성일꾼들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모내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또한 부림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실제로 성과가 나도록(민주조선 5.18)

- 김정일은 “농사는 철두철미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바로 농업생산을 끊임 없이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라고 말함.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농사차비 기간에 기술일꾼들과 농장원들에게 올해에 받아들이는 품종과 영농방법의 특성과 지켜야 할 기술적인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인식시키고 필요한 물질적 준비도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하고 있음.
- 또한 현지에서 작업반기술원의 협의회를 자주 조직하여 모든 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주체농법의 요구를 들어주고(민주조선 5.22)

- 김정일은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꾼은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과학 기술적으로 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자기 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들어주고 나가야 한다”고 말함.
- 농업성에서는 당면한 모내기예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씨레치기를 비롯한 선행공정들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확고히 앞세워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각지 농촌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성에서는 농업생산의 생명수인 물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있음. 또한 아래 단위 농업지도 기관에서 올해에 받아들이는 선진적인 영농방법이 성과가 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지도를 참신하게 해나가고 있음.
- 성에서는 아래 단위 농업지도기관에서 여러 가지 논벼재배방법의 요구대로 모내기를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농업근로자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한데에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능력 있는 일꾼을 현지에 내려보내어 당면한 영농사업에 대한 지도를 실속 있게 하고 있음.

○ 농업생산을 함께 책임지는 주인된 입장에서(로동신문 5.25)

- 김정일은 “우리는 농촌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함.
-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다고 지적함.
- 전국 각지의 농촌지원자들은 당의 호소를 인식하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노력적으로 농촌을 힘껏 지원하고 있음. 해당 지역의 일꾼들은 협동농장과외 긴밀한 연계 하에 현지에서 영농공정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인원보장과 수송, 침식 조건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음.
- 전력공업성, 금속공업부문, 철도운수부문, 기계공업부문 등의 각 부문에서도 각지 농촌에서의 영농전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민주조선 5.27)

- 김정일은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비롯한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업부문 일꾼들은 기술적 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장악지도 하며 농촌에서 영농조직사업과 노력, 설비자재, 재정관리를 개선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함.
-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목표 하에 협동농장에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따라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많은 노동력과 영농물자, 자재를 절약할 수 있는 선진 영농기술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음.
- 또한 정당성과 우월성이 높이 발양된 분조관리제를 옹계 실시하는 사업에도 응당 관심을 돌리기로 하는 동시에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질 비료생산에 박차를 가 하여 땅의 지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 논벼재배형식에 맞게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아랫단위 일꾼들과 농장원들을 착실하게 이끄는 한편 모내기 전반을 장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기동적으로 세우고 있음.

□ 농업관리

○ 농업근로자의 본분을 자각하고(민주조선 5.2)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자면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말함.
- 증산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논갈이와 모판관리, 강냉이심기, 앞그루작물 비배관리 등 당면한 농사일에 대한 경제조직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실천적 모범을 보이며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풍정협동농장에서는 논갈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압, 락생협동농장에서는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청산, 적송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심기를 다그치고 있으며 신흥, 광제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심기와 앞그루작물비배관리를 다그치고 있음.

○ 농사의 주인된 자각 안고 펼쳐나(민주조선 5.7)

- 피현군 충렬협동농장의 일꾼들은 모내기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제3작업반의 농업근로자들은 튼튼하고 실한 모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계화작업반에서는 트랙터 수리정비를 맡김히 끝내고 농기계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음.
- 올 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투쟁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5.8)
 - 선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영농실천과정을 통하여 우월성이 입증된 새로운 벼모기르기 방법을 협동농장에 널리 알리고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있음.
 - 또한 협동농장의 모판관리공들은 자신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따라 튼튼한 벼모를 키워 내는가, 못내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벼모관리에 온갖 열성을 다하고 있음.
 - 온정, 삼봉협동농장의 모판관리공들은 날씨 조건에 맞게 모판 안의 온도를 정확히 보장하고 바람 쏘이기도 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벼모를 키워내고 있음.
 - 군에서는 협동농장 기사장, 기술부원들이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며 모판관리공에 대한 노력일 평가를 실속 있게 하고 있음.
- 분조관리제의 위력을 떨치게 한 참신한 방법론(로동신문 5.21)
 - 김정일은 “농민을 발동하고 그들의 노력적 열성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사상사업, 정치사업이다. 농민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생산에 자각적으로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함.
 - 당조직과 당일꾼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가 정확히 실시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당적지도를 방법론 있게 조직진행할 때 영농실천에서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음.
- 전투조직을 빈틈없이(로동신문 5.22)
 -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모내기전투에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에서 모내기 일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음.
 - 또한 논써레치기로부터 모판관리, 모뜨기, 모운반, 모내기에 이르기까지 노력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있음.
 - 모내기에서는 제6, 7, 2, 3 작업반이 앞서나가고 있음. 농장에서는 트랙터 운전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논판 정리를 잘하도록 하고 있음.

○ 포전정치사업으로 들끓는 협동벌(로동신문 5.23)

- 김정일은 “대중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함.
- 황해남도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맞게 조직부와 선진 선동부를 비롯한 부서에서 협동작전을 하면서 포전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모내기전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포전선전선동사업을 잘하고 있는 신천군 당위원회에서 보여주 기 사업을 진행하고 시, 군당위원회가 그 경험을 본받게 함. 그리하여 안악, 재령, 강령군 안의 협동벌에서 경제선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중요영농작업을 맡은 농장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로동신문 6.1)

- 김정일은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농민들의 애국적 헌신성과 노력적 열성을 불러 일으켜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말함.
- 안주시와 문덕군의 당조직에서는 올해에 중요 영농작업을 맡은 사람들과의 사업을 심 화시켜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안주시 당위원회에서는 중요영농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 한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기간 중요영농작업을 성실히 해온 사람들의 경험과 긍정적 소행 자료를 널리 소개하고 있음.
- 문덕군당위원회에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힘을 합쳐 중요영농작업을 하는 사람 들을 내세우고 그들이 올해의 영농실천에서 계속 헌신적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있음.

○ 농장벌을 들끓게 하는 힘 있는 포전집중 정치사업(로동신문 6.3)

- 김정일은 “대중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함.
- 은률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꾼들은 포전방송기재의 대수를 늘리고 그 출력을 높이 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들이 만든 포전방송기재는 구조가 간편하고 이용이 편리하여 농장원들이 있는 곳이라면 논두렁과 구석진 포전에까지 들어가 정치사업을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좋음.

○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켜(로동신문 6.3)

- 김정일은 “일꾼들은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타산을 면밀하게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사업을 힘있고 믿음성 있게 조직전개해야 한다”고 말함.
- 원산시 죽당리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 불리한 조건을 이겨 내면서 당면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음. 특히 트랙터 운전사와 부림소 관리공, 모판관리공 등 중요한 영농공정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농장원들과의 사업을 잘 조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얼마전 모내기가 시작되자 리당위원회 일꾼들은 포전방송기재를 끌고 포전에 나가 화선식 정치사업을 기백있게 벌리고 있음. 불리한 조건일수록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할 때 성과는 언제나 확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

○ 농장포전을 꿰게 하는 화선식 정치사업(로동신문 6.8)

- 김정일은 “오늘의 정치사업은 화선선전, 화선선동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함.
- 황해남도 은률군과 연당군당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에 나가 농업근로자, 지원자들을 당면한 모내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안악군, 삼천군, 배천군, 신천군, 장연군당위원회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이 주인다운 입장을 가지고 농사일에 모든 힘을 다 바치도록 하고 있음.
- 평안북도의 구성시, 정주시, 신의주시, 구장군, 태천군당위원회에서는 당면한 영농전투에 앞서 작업반마다 포전방송기재를 갖추도록 하며 일꾼들로 하여금 모내기와 김매기 실적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평양시 만경대구역당위원회에서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실정에 맞게 잘 조직하여 이미 모내기를 끝내고 농업근로자들이 김매기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음.

○ 분조관리제를 옳게 실시하여(민주조선 6.13)

- 김일성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협동농장의 생산과 관리를 끊임 없이 개선하며 농장원들 속에서 집단주의 정신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정평군 조양협동농장에서는 농장원의 능력과 체질에 맞게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분조의 관리운영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이 발휘되게 하도록 이들을 이끌고 있음.
- 김매기 실적도 분조를 단위로 총화하고 앞선 분조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음.

□ 과학영농

○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로동신문 4.21)

- 농장일꾼들은 자체의 힘으로 모든 영농공정을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논벼농사에서 선진영농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앞선 벼모기르기 방법을 받아들여 지난해보다 모판면적을 훨씬 더 줄임으로써 씨뿌리기에서만도 많은 노력과 영농자재를 절약하였음.
- 농장에서는 일꾼, 농장원에 대한 과학기술지식 보급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과학농사도 지도방법이 좋아야 성과가 난다(민주조선 5.3)

- 김정일은 “농업에서 혁명을 일으키자면 농업지도기관과 농업부문 일꾼이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함.
- 군 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일정한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사업을 잘 추진하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동신문 5.20)

- 김정일은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농법이 제일 좋은 농법이다”라고 말함.
-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종자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 후에 실리 있는 재배 방법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영농기술을 완성시켜야 함.
- 과학농사에 만족이란 있을 수 없음. 현실조건에 맞게 새것을 지향하면서 영농기술을 부단히 완성시켜 나가야 함. 또한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앞선 재배방법과 영농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 과학농사의 주인답게(민주조선 5.22)

- 김정일은 “농업생산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이며 당의 농업방침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농업근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함.
- 문덕군 립석협동농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모내기를 하기 위하여 선진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스스로 부족한 노동력과 영농물자, 자재를 해결하고

있음. 동시에 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여러가지 형식의 논벼재배방식을 받아들여 많은 노동력과 영농물자, 자재를 절약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보여주기사업을 통하여 농장원들에게 스스로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고 모내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씨레치기를 확고히 앞세우며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음.

○ 기술적 지도에 큰 힘을(민주조선 5.22)

- 김정일은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꾼들은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자기 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말함.
- 숙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내기를 비롯한 올해 봄철영농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데서 찾고 농장의 모상태, 물보장 조건, 논갈이 정형 등 모내기 준비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음.
- 일꾼들은 올해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는데서 큰 몫을 맡고 있는 농장 초급일꾼들의 역할을 보다 높이는데 모를 박고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음.
- 백암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에 나가있는 위원회 일꾼들은 토양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정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을 방법론 있게 내밀고 있음.

○ 기술적 지도를 실속 있게(민주조선 5.28)

- 김정일은 “농사를 철두철미하게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바로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라고 말함.
- 연산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튼튼한 벼모를 내기 위해 모판관리문제를 중시하고 기술적 지도를 실속있게 하고 있음. 또한 대평협동농장에서 시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읍협농장에서는 논벼증수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벼모를 잘 기르는데 있다는 것을 모판관리공에게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이 벼모의 생육단계와 날씨조건에 맞게 모판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음.

- 대산, 공포, 상곡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에 나간 위원회일꾼들도 모판마다 실한 벼모가 자라도록 바람쏘이기를 비롯한 모든 일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음.

○ 과학기술중시에 비결의 하나가 있다(민주조선 5.31)

- 김정일은 “농촌에서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 밑에 지원노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자체로 짓는 운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고 말함.
- 한해 농사과정에서 봄철영농작업에 특별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는 농장일꾼들은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철씨불입 시기 부족한 노동력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장일꾼들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동시에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운영하여 농장원들에게 새로운 논벼 재배방법의 우월성과 그 실천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새로운 논벼재배방법을 받아들인 결과 종자도 종전에 비하여 절반 밖에 들지 않았고 모판관리와 모뜨기에서만도 수천공수의 노동력예비를 찾을 수 있게 되었음.

□ 농촌지원사업

○ 농촌지원사업을 더욱 짜고들자(민주조선 5.16)

- 농촌지원사업에서는 그 어떤 부문이나 단위,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음.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떨쳐일어나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 식량문제를 자체로 원만히 풀어나가야 함.
- 올해에 임업성, 보건성, 기계공업성, 중앙은행, 국가품질감독국을 비롯한 많은 성, 중앙기관에서는 영농물자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 봄철영농전투를 성과적으로 이루도록 하는데 기여를 함.
- 농촌지원사업은 단순히 농촌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중소농기구, 거름 등을 마련하여 보내주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올해에 농사를 더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정치적 사업임.

-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는 일꾼과 노동자들에게 농촌지원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더욱 깊이 있게 해결해주어 농촌지원열의가 모내기철을 계기로 더욱 뜨겁게 분출되도록 해야 함.

○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힘 있게 지원하자(로동신문 5.20)

- 김정일은 “우리는 농촌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함.
- 농사는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현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음.
- 모내기와 콩심기,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와 김매기, 앞그루작물 가을걷이와 뒤그루 작물심기가 동시에 입체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에는 그 어느때 보다도 노동력과 기계수단이 많이 필요함.
- 이 시기에 맞추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껏 도와주자!>, 이것이 바로 당이 내세우고 있는 구호임.
- 전력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부문은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해야 함. 기관, 기업소, 가정에서는 대용비료와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함. 모든 기관, 기업소 특히 비생산단위에서는 노동력 조직사업을 조직하고 예비를 최대한으로 찾아내어 농촌지원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함.
- 기관, 기업소, 당, 행정 책임일꾼들은 <나를 따르라 앞으로!>의 구령에 맞추어 이신 작척의 모범으로 농촌을 지원해야 함.

○ 농촌을 지원하는 것은 일꾼과 근로자의 본분(민주조선 5.22)

- 김정일은 “농촌지원은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기본원칙 중 하나다”라고 말함.
-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농촌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며 국가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임. 올해에도 당은 전체 일꾼, 근로자들을 농촌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운동에 참여시키고 있음.
- 모든 농촌지원자들은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의무이며 본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농촌지원사업에 떨쳐나서 올해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함.

○ 더 많은 지원노력을 농촌에(민주조선 5.30)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라도 노동력과 물자를 아낌없이 선차적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함.
- 신원군인민위원회에서는 농촌지원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모내기가 시작된 지금 농촌지원노력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력 예비를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음.
- 또한 해당 단위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고정노동력과 일일동원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지원사업을 힘있게(민주조선 6.4)

- 김정일은 “모든 사람이 농사에 관심을 돌리고 농촌을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말함.
- 은파군에서는 군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군안의 모든 단위에서 조금의 노동력이라도 더 농촌에 보내어 당면한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군급기관에서는 영농공정에 따르는 모든 농사일을 하나하나 착실히 도와주고 있음.
- 전산, 신촌지구의 농촌에 나간 은파광산, 군식료공장을 비롯한 군 안의 공장, 기업소, 군량정사업소, 군상업관리소, 군직매점 등의 일꾼, 근로자들은 당면한 모내기실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원(로동신문 6.7)

- 김정일은 “우리는 농촌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함.
- 건설건재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일꾼과 정부원들은 협동농장에 나가 화선식 정치사업을 벌려 모내기전투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또한 성, 중앙기관에서는 모내기를 비롯한 영농전투에 절실히 필요한 설비, 자재를 적극 지원하여 농장일꾼과 농장원의 사기를 한층 북돋고 있음.
- 화학공업성과 경공업성에서 또한 성의있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수산성, 기계공업성, 기상수문국, 국가가격제정국에서도 협동농장에 나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

○ 대홍단군을 힘있게 지원(로동신문 6.23)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짓자면 온 나라가 총동원되어 농촌을 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일고급당학교에서는 지난 시기 감자종자저장고, 농업과학기술 지식선전실, 농기계보관고를 훌륭히 완성한데 이어 올해에는 알곡창고, 종합적인 축산물 생산기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음.
- 략원지도국에서는 군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농기계보관고, 알곡 창고 등 여러동의 작업반생산 건물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또한 고려봉사지도국에서는 작업반을 더 잘 꾸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중앙검찰소에서는 필요한 자재가 제때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무역은행에서는 수송기재를 만가동시키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경공업성, 대외건설지도국에서는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으며, 체신성, 대외문화연락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축산물생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 벼농사

-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중요 사안임.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관개시설, 농기계 설비, 영농자재, 노동력 확보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또한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해 기계의 만가동을 통하여 씨레치기를 확실히 하고 있음.

□ 벼 모판관리

○ 벼모판 관리를 알심있게(민주조선 4.30)

- 김정일은 “벼농사에서는 모를 튼튼히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함.
- 황해남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벼모 기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해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하여금 모판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책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벼모 기르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농업근로자에게 알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내려 보내어 모판 안의 온도, 물보장, 모의 영양관리를 비롯한 모판 관리 내용을 모판 관리공에게 인식시키고 있음.
- 청단군, 배천군의 협동농장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많이 이용하여 벼모를 잘 기르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해주시, 송화군, 웅진군 협동농장에서는 모판 관리의 모든 공정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벼모를 충하 없이 실하게 길러내고 있음.

○ 주인된 자각안고 모판관리를 알뜰히(로동신문 5.6)

- 김정일은 “농사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인 체계와 방법을 가지고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말함.

- 경성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에서 생육기일이 짧고 지대적 특성에 맞는 종자로 씨뿌리기를 하고 벼모기르기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염분협동농장의 기술일꾼과 모판관리공은 매일 4회 이상 모판 안의 온도를 재어보며 철저한 대책을 세워 벼모가 자라는데 필요한 온도를 보장하고 있음. 또한 모판관리공들은 벼모 생육상태에 맞게 보충비료도 뿌리고 있음.
- 박충협동농장에서는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한 조건에 맞게 박막관리와 나래 덮어주기를 제때에 하면서 모판관리를 주인답게 실시하고 있음.

○ 모판관리를 책임적으로(민주조선 5.15)

- 문천시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모판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 하고 있음.
- 협동농장에서는 모판관리공을 기술수준과 책임성이 높은 실농꾼들로 꾸리고 과학 기술 보급사업, 경험교환 등을 자주 조직하여 그들이 모기르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잘 알고 구현하도록 하고 있음.
- 가평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에서는 덧비료로 줄 흙보산비료와 구들재 등을 충분히 마련해 놓았으며 모판관리공이 자신의 일을 책임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있음.
- 남창, 부방, 고암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 모판관리공들은 날씨조건과 벼모의 생육단계에 맞게 모판의 온습도를 철저히 규정대로 보장해나가고 있음.

○ 튼튼한 벼모를 중단 없이(민주조선 5.18)

- 올해 농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실한 벼모를 내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이를 위해 모판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음.
- 농장에서는 모판관리공들이 단계별로 낼 벼모들에 대한 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있음.
- 또한 모판관리공들을 위한 협의회와 기술전습을 모판장을 단위로 기동성 있게 조직하고 모판관리공들에게 작업반과 분조의 모내기 일정계획, 앞으로 예견되는 날씨도 알려주고 있음.

○ 그 은정에 쌀로써 보답하리(로동신문 5.19)

- 김정일은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 토지정리의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말함.
- 증산군에서는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종자처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논벼수직파면적을 늘리는데서 찾고 모내기전투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음.
- 무본협동농장에서는 한해 농사의 성과는 모를 잘기르는가 못기르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일 인식하고 모판관리에 온 열의를 다하고 있음.

○ 모판관리를 알뜰하고 간지게(민주조선 5.21)

- 한 해 농사를 잘 짓는데서 실한 벼모를 키워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염주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하여 튼튼한 벼모를 키워내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모판관리공에게 벼모의 생육단계에 맞게 모판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으며, 협동농장에 책임성과 기술수준이 높고 경험 있는 농장원을 모판관리공으로 배치하고 있음.
- 내중, 룡산, 도봉, 룡북협동농장의 모판관리공들은 마지막 모가 논에 나갈 때까지의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모판관리에 모든 열정을 바치고 있음. 이들은 벼모의 생물학적 특성과 일기 조건에 맞게 모판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알뜰하게 하고 있음.

○ 줄대 같이 실한 벼모들(로동신문 5.21)

- 김정일은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기어 이 풀겠다는 혁명적 각오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함.
- 명간군에서는 벼모판 관리를 간지게 하여 튼튼한 벼모를 키워내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대용비료를 이용하여 벼모를 실하게 키워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신양협동농장과 함진협동농장에서는 벼모의 크기에 따라 물대기와 물온도 등 기술적 문제를 잘 알려주고 일꾼들이 모판관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음. 극동협동농장에서는 경험 있고 책임성 높은 농장원을 모판 관리공으로 배치하여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모판관리를 책임적으로(로동신문 5.25)

- 문덕군 어룡협동농장에서는 경험이 많고 책임성이 높은 농장원들을 모판관리공으로 배치하여 경험토론회와 보여주기사업 등을 조직하여 모판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추진하고 있음.
- 농장 일꾼들은 모판관리공들을 자주 만나 벼모의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음.
- 또한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하나같이 실한 모를 키워내기 위해 책임감을 더욱 높이고 있음.

○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민주조선 5.25)

- 김정일은 “벼농사에서는 모를 튼튼히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함.
- 강원도 농업지도기관에서는 농장원들에게 논벼농사를 잘 짓기 위한 중요 방법 중의 하나가 벼모를 튼튼히 길러내는데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며 모판관리공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원산시, 안변군, 통천군 협동농장에서는 모판관리공에게 앞선 모기르기 방법의 우월성과 기술적 요구를 알려주고 있으며, 작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 이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있음.
- 평강, 철원, 세포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군에서도 벼모의 생육단계와 날씨조건에 맞게 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모판관리를 주인답게(민주조선 6.1)

- 벽성군 도현협동농장에서는 실한 벼모를 길러내기 위하여 모판관리를 잘하고 있음.
- 이곳 농장의 일꾼들은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열쇠는 모기르기를 잘하는데 있다고 보고 모판관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음.
- 작업반, 분조에서 책임성이 높고 경험이 많은 농장원을 모판관리공으로 선발배치한 농장에서는 이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벼모판관리에서는 제 5, 6작업반이 모범을 보이고 있음.

□ 씨뿌리기

○ 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민주조선 4.18)

- 단천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씨뿌리기를 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꾼들은 이를 위하여 기술적 지도를 착실하게 받고 있음.
- 령산협동농장 일꾼들은 한해농사의 성과는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 하에 모판결구기, 모판고루기, 씨뿌리기 등을 열심히 하고 있음.
- 룡덕협동농장에서는 고장의 기후풍토조건에 맞고 소출이 높은 종자를 준비하여 종자처리를 착실하게 하고 있음.
- 장내, 복평, 양평협동농장 등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씨뿌리기 속도와 함께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씨뿌리기 본격적인 단계(로동신문 4.18)

- 황해남도, 평양시,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서해별방지대 농촌에서는 씨뿌리기의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하였음.
- 연안, 배천, 청단군의 협동농장에서는 그전 시기보다 영농자재와 물자를 적게 쓰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농사방법을 받아들여 씨뿌리기 성과를 올리고 있음.
- 평양시에서는 일꾼들이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앞선 씨뿌리기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음.

○ 벼랑상모판 씨뿌리기로 들끓는다(민주조선 4.30)

- 김정일은 “농촌경리부문에서 지대별, 필지별 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제철에 씨를 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숙천군에서는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이면서 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며 벼랑상모판 씨뿌리기를 착실하게 하고 있음.
- 농장원들은 단계별 목표와 날짜별 계획을 정확히 세워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를 듬뿍 내어 모판을 잘 걸군 다음 평당 씨앗량을 정확히 보장하고 있음.
- 칠리 농장에서는 실한 싹이 튼 종자를 정성 담아 뿌리고 있으며 광천, 검흥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농장에서도 씨뿌리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 앞선 벼모기르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로동신문 5.2)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풍요한 가을은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음.
- 재령, 신천, 안악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에서 지난 시기 영농실천을 통하여 벼모를 잘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자각하고 벼모를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기르기 위한 기술적 지도를 잘 해나가고 있음. 또한 일꾼들은 모판의 온도, 습도를 보장하며 벼모의 영양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연악군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농업근로자를 모판관리공으로 배치하여 온도관리와 물관리를 잘하게 하는 한편 좋은 벼모기르기 경험을 일반화 하고 있음.
- 강령, 웅진, 봉천군에서는 대용비료주기와 바람쏘이기 작업 등을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여 벼모들을 충하없이 실하게 키우고 있음.

○ 씨레치기를 일정계획대로(로동신문 5.26)

- 김정일은 “농업생산은 시기성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농사에서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함.
- 평원군 대정농장에서는 모내기 일정계획에 따라 씨레치기 작업조직을 조직하고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모내는 기계의 능률을 높여 모내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벼모기르기

○ 벼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5.17)

- 김정일은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다”고 말함.
- 김책시 당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이 앞선 모내기방법을 받아들이는 조건에 맞게 모판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실한 모를 길러내는데 힘을 넣고 있음.
- 협동농장에 내려간 시일꾼들은 벼랭상모판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면서 모든 모판관리공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모판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일꾼들에게 앞선 모기르기 방법에 대한 보여주기 사업을 실속 있게 하여 벼모기르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모판관리공에게 모판관리 일지를 정리하는 방법과 시간에 따라 온도재는 방법 등 세부적인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음.

○ 실한 벼모를 길러(로동신문 5.18)

- 김정일은 “벼농사에서는 모를 튼튼히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함.
- 배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군 안의 전반적인 협동농장에서 농사조건에 맞는 영농방법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데 맞게 아래에 내려가 기술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음.
- 벼모기르기에서는 수원농장, 금성협동농장 등이 앞장 서고 있음. 이 농장에서는 벼모가 자란 상태와 생리적 특성에 맞게 온습도 조절과 바람쏘이기, 대용비료주기 등을 기술적 요구대로 해나가면서 모판관리를 꼼꼼히 해나가고 있음. 그리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튼튼한 벼모를 키워내고 있음.
- 줄대 같이 실한 벼모를 키워내는가 못내는가 하는 것이 자기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이 농장의 모판관리공들은 모판관리일지를 만들어 놓고 모판관리정형을 날짜별, 시간별로 기록해가면서 모판관리를 꼼꼼히 해나가고 있음.

○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로동신문 5.27)

- 김정일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으면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함.
- 안변군 비산협동농장에서는 알곡증수의 예비의 하나가 벼모를 튼튼히 키워내는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판관리공과의 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또한 여러 앞선 벼모기르기 방법을 모판관리공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앞선 작업반 모판관리공들의 긍정적 자세를 소개하며 모든 모판관리공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그리하여 군적으로 모내기에서 앞서나가고 있음.

○ 실한 벼모를 중단 없이(민주조선 6.5)

- 정평군의 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를 힘있게 추진하면서 실한 벼모를 중단 없이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 협동농장 기술일꾼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날씨조건과 벼모의 생육상태에 맞게 모판을 관리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제때에 알려주고 있음.
- 룡성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불리한 날씨가 지속되는데 맞게 여러가지 물대기 방법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모판의 온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정확히 보장하고 있음.
- 조양, 창신협동농장에서는 벼모의 영양관리에 힘을 넣어 벼모의 생육단계에 맞게 자체로 마련한 유기질비료를 모판마다 충분히 주고 있음.

□ 논갈이 및 씨레치기

○ 논발갈이를 전투적으로(로동신문 4.21)

- 립천협동농장에서는 보름 안에 논발갈이를 모두 끝낼 목표 하에 농장원들이 매일 작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기름이 부족한 조건에 맞게 논발갈이를 다그치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부림소를 많이 이용하는데서 찾고 농장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농장의 일꾼들은 논발갈이 계획을 날짜별, 포전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작업반과 분조들에서 실속 있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논갈이 빠른 속도로 추진(로동신문 4.29)

- 숙천군 광천농장에서는 논갈이 일정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게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부림소와 트랙터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제11작업반에서는 트랙터 보장대책을 세우고 트랙터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17작업반에서는 부림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논갈이를 다그치고 있음.
- 기계화작업반에서는 트랙터 운전수가 논갈이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동 수리를 조직하여 트랙터 사용 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주고 있음.

○ 논발갈이를 마감단계에서 추진(민주조선 5.10)

- 김정일은 “터우기 농사일은 시기를 다루는 일이므로 제철에 끝내야지 그렇지 못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함.

-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논밭갈이를 제철에 끝내기 위해서 갈이수단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논밭갈이를 철저히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고 있음.
- 논갈이에서는 룡천군이 앞장서고 있으며 염주군, 운전군에서도 논밭갈이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떨쳐나선 피현군, 철산군 안의 농업근로자들은 부림소를 효과있게 이용하여 갈이실적을 높이고 있음.

○ 모내기 성과를 담보하는 씨레치기(로동신문 5.13)

- 제1작업반에서는 씨레치기를 질적으로 앞세우는데 모내기의 성과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작업반 논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씨레치기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음.
- 또한 씨레치는 시기에 트랙터가 부하를 많이 받는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예비 부품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음.

○ 씨레치기에 큰 힘을(로동신문 5.21)

- 곡산군 덕흥협동농장에서는 씨레치기를 확고히 하여 모내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덕흥협동농장에서는 물보장 대책을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포전에 물을 충분히 대고 씨레치기를 하고 있으며 농장 일꾼은 트랙터 운전수와와 사업을 통해 씨레치기에서 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음.
- 제3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논물을 알맞게 대고 씨레치기에서 필요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모내기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씨레치기를 앞세우며(민주조선 5.24)

- 안변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선행공정인 씨레치기를 확고히 앞세우며 모내기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날짜별, 포전별 모내기계획에 맞물려 씨레치기를 일정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
- 군 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와 함께 부림소를 잘 배합하여 씨레치기를 다그치고 있음.
- 모내기에서 씨레치기의 속도와 질보장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미리부터 트랙터의 수리정비와 부림소의 영양관리에 힘을 쏟아 씨레치기 첫 시작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정성을 다해 실한 모를(로동신문 5.26)

- 김정일은 “벼농사에서는 모를 튼튼히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함.
- 대동군에서는 모판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편 모범적인 벼모르기의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하여 벼모를 실하게 키워내도록 하고 있음.
- 연곡협동에서는 씨뿌린 날짜와 벼품종의 특성, 날씨조건을 따져가면서 영양관리와 물 관리, 온도관리를 잘하여 모를 튼실하게 키워내고 있음.
- 팔청협동농장에서는 실정에 맞게 대용비료를 이용하여 벼모를 잘 키워내고 있음.

□ 모내기

○ 모내기 준비를 빈틈없이(민주조선 5.7)

- 김정일은 “농사일은 시기를 다루는 일이므로 제철에 끝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함.
-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내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대한 조직사업과 기술지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모기르기와 논갈이, 물보장과 농기계 보장 등 모내기 준비 전반을 다 같이 하고 있음. 또한 필요한 기술과 자재 보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
- 열두삼천농장을 비롯한 숙천군 안의 농장과 립석협동농장을 비롯한 문덕군 안의 협동농장, 삼봉협동농장을 비롯한 평원군 안의 협동농장 등 별안의 농촌에서는 모를 잘 기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모내기 준비를 하고 있음.

○ 영광의 땅에서 모내기 시작(로동신문 5.11)

-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는 5월 10일 모내기를 시작함.
- 농업근로자들은 올해의 불리한 봄철 날씨 조건에서도 벼랭상 모판만들기와 씨뿌리기 등 모든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도록 조직동원하고 있음.
- 어려운 조건에 맞게 대용비료를 적극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질 좋은 흙보산 비료를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제 2, 3, 4 작업반의 농장원들은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벼모를 하나같이 싹하게 키워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른 작업반, 분조에서도 모내는 기계를 비롯한 농기계의 수리정비를 미리 잘해놓음으로써 올해 모내기를 제철에 끝낼 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고 있음.

○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로동신문 5.12)

- 김정일은 “지금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간절한 사업은 없다”고 말함.
- 세계적으로 예비식량이 줄어들고 식량가격이 급격히 올라 많은 나라들이 식량위기를 겪고 있음. 따라서 전당, 전국, 전민이 올해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경리부문 당조직과 지도일꾼이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함.
- 모내기는 짧은 기간에 수행해야 하는 영농전투인 만큼 관개시설, 농기계 설비, 영농자재, 노동력을 확실히 보장해야 함.
- 씨레치기는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한 전제조건임.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기계의 만가동을 통해 일정계획에 따라 씨레치기를 확실히 해야 함.
- 농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 자신이므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 함.

○ 앞선 벼모르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로동신문 5.12)

- 김정일은 “농촌경리부문에서는 해마다 영농준비를 제때에 철저히 하고 씨뿌리기로 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하며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때 공정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함.
- 함경남도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벼모를 튼튼히 키워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지대적 특성과 자연기후 조건에 맞게 벼모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기르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음.
- 함주군 동봉, 추상, 수흥협동농장에서는 모상태를 수시로 관찰하고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해당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가고 있음.

- 금야별 안의 일꾼들은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모판관리에 온 정성을 쏟고 있음.

○ 모내기가 시작되었다(로동신문 5.12)

- 황해남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앞선 벼재배방법을 받아들인데 알맞은 모기르기 방법, 모내기의 적기와 질보장 등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오국협동농장의 뒤를 이어 안악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씨레치기와 모뜨기 등 선행작업을 적극 앞세우며 모내기를 다그치고 있음.
- 연안, 배천, 청단군을 비롯한 연백별 안의 농장에서도 모내기에 지장 없이 모를 튼튼히 길러내고 있음.

○ 적기에 와다닥 끝낼 목표로(로동신문 5.15)

- 안악군에서는 봄날씨와 벼모가 자란 상태에 맞게 군안의 두별농사포전을 제외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짧은 기간 안에 끝낼 목표를 세움.
- 군일꾼들은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모내기에 총동원, 총집중 시키고 모내기 성과보장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오국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와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모내기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농장 일꾼들은 작업반별로 모가 자란 상태를 따져가며 기계수단과 부림소를 논갈이와 씨레치기에 집중, 분산배치함으로써 모내기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엽곶, 로암, 관록협동농장의 기계화초병은 앞선 논벼재배방법을 받아들인데 맞게 씨레치기를 질적으로 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 모내기 전투장에 보답의 열정 차넘친다(로동신문 5.15)

- 김정일은 “농민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것과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생산에 자각적으로 적극 떨쳐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일꾼들은 자신이 미곡리의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모내기 시작부터 성과를 올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모내기전투에 들어서기 전에 트랙터, 모내는기계의 수리정비를 끝내고 토양별 특성에 맞게 씨레치기를 모내기에 적극 앞세우고 있음. 또한 새 품종의 종자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맞게 벼모를 줄대같이 싹하게 키워내도록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농산 제 1, 2, 3작업반의 농장원들은 작업반 포전들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씨레치기를 일주일 이상 확고히 앞세우고 모내는 기계와 모뜨는 기계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자(민주조선 5.15)
- 김정일은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 알곡수확고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모내기는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임. 따라서 수확고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적기에 모를 내야 논벼의 생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고 다음 영농공정도 처지지 않게 하여 전반적인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음.
 -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다그쳐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당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며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처하여 식량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기 위한 매우 책임적인 사업임.
 - 모내기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야 하며, 적기에 보장하는 한편 벼모기르기, 논물대기, 씨레치기를 비롯한 선행공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또한 모내기에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해야 하며 농기계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함.
 - 농업부문 일꾼들은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새기고 모내기를 자체의 힘으로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알곡증산으로 내 조국을 받들어갈 뜨거운 마음안고(민주조선 5.15)
- 황해남도에서는 모내기 준비를 빈틈없이 한데 기초하여 모내기에 들어간 첫날부터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특히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는 영농물자와 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는 과학적 영농방법이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신천, 재령군의 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 계획을 날짜별, 포전별로 정확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해주시 석천협동농장, 연안군 읍협동농장, 청단군 청정농장을 비롯한 많은 협동농장 모판에서는 실한 벼모들이 자라나고 있음.

○ 모내기로 들끓는 협동별(민주조선 5.17)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먹을 것이 넉넉해야 인민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함.
- 평안북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한해 농사를 짓는데서 모내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모내기를 짧은 기간에 와다닥 끝내기 위한 준비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음.
- 우선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데 응당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부족한 것이 많은 어려운 조건에 맞게 흙보산비료와 생물활성퇴비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또한 모든 영농작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한 기술 강습을 진행하고 트랙터와 모내는 기계의 수리정비를 모내기 전에 말끔히 끝내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논갈이를 질적으로 하며 벼냉상모판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적극 뒷받침해주고 있음. 그리하여 도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모내기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지고 있음.

○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민주조선 5.20)

- 삼천군에서는 모내기 선행공정을 앞세우는데 관심을 돌리며 이를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트랙터 가동상태를 매일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도 제때에 풀어주는 동시에 모내기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정확히 지키도록 이끌어주고 있음.
- 또한 모내는기계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운전공들은 모내는 기계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민주조선 5.21)

- 안주시 시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는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들은 모내기의 성과여부가

자신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에 노동력과 기계설비를 총집중하고 있음. 그리고 포전에서 실천적 모범을 보이며 한 대의 모를 내도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남흥협동농장에서는 날짜별, 포전별 일정계획에 따라 트랙터와 부림소를 이용하여 씨레치기를 확고히 앞세우고 있음.
- 운송협동농장에서는 알곡생산을 훨씬 늘릴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모내기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힘을 쏟고 있음.

○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로동신문 5.21)

- 룡천군에서는 자체의 노력으로 군적인 모내기를 지난해보다 열흘이나 앞당겨 끝낼 목표 하에 먼 포전과 구석포전부터 모내기를 하도록 하는 등 전투조직을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있음.
- 군책임 일꾼은 우선 분조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노력일 평가를 바로하여 농장원들이 주인다운 입장에서 농사일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트랙터와 모내는 기계의 이용률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지난해보다 논갈이를 수습일이나 앞당겨 끝낸 군에서는 논물대기, 논두렁 짓기, 씨레치기 등 선행공정을 앞세우고 있음.
- 산두협동농장에서는 모판관리에 힘을 넣어 모를 실하게 키워내고 있으며 쌍학, 덕흥, 전일협동농장에서는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여 매일 많은 면적의 논에 모를 내고 있음.

○ 모내기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로동신문 5.22)

- 평양 시당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 일꾼이 튼튼한 모를 길러 제철에 질적으로 일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논물관리와 벼모영양관리를 하는데 있어 제기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농장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앞선 논벼 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 조건에 맞게 농장일꾼들이 영농조직사업을 더욱 빈틈없이 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하고 있음.

- 시 주변 농촌에서는 강냉이 심기를 제때에 끝낸데 이어 모내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학산 협동농장을 비롯한 형제산구역 안의 근로자들은 모내는 기계와 모뜨는 기계를 비롯한 기계수단을 질적으로 정비하여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음.
- 자체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해마다 알곡생산에서 앞장서고 있는 리현협동농장을 비롯한 사동구역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논갈이와 씨레치기, 수평고루기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

○ 모내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민주조선 5.23)

- 김정일은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 알곡 수확고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정주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보여주기 사업을 통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데 이어 모내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모가 나게 하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내밀고 있음.
- 일꾼들은 협동농장에서 모든 노력과 운반수단을 모내기에 총집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아랫단위의 일꾼들과 농장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음.
- 일해, 오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뜻 깊은 올해 농사의 돌파구를 성과적으로 열기 위한 모내기를 박력 있게 내밀고 있음.

○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낼 열의로(로동신문 5.24)

- 황해북도 당위원회에서는 농업근로자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각급 당조직을 발동하여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리고 있음.
- 이와 함께 올해에 앞선 논벼재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데 맞게 모기르기와 씨레치기, 모내기를 비롯한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기술적 지도에 큰 힘을 넣고 있음. 특히 품들여 준비한 보여주기 사업을 지구별로 조직진행하여 논벼재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잘 알고 실천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사리원시, 은파군 안의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는데서 모기르기를 앞세우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맞게 각 농장에 내려가 모판 관리공의 기술기능수준을 한 계단 높여주고 조건보장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모내기로 들끓는 사회주의 협동벌(민주조선 5.24)

- 김정일은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와다닥 끝내야 한다”고 말함.
- 평안남도 열두삼천 농장에서는 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씨레치기를 확고히 앞세우는 한편 모내는 기계운전공과 모공급수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모내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 영광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에서는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보장하면서도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 동사, 립석, 남이협동농장을 비롯한 문덕군 안의 농장에서는 모내기 일정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모내는 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모내기를 다그치고 있음.

○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민주조선 5.25)

- 김정일은 “모내기는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이다”라고 말함.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에서 획기적 전환을 이룩할 높은 목표 하에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제조직과 지도를 추진하고 있음.
- 광산군 관상협동농장에서는 군적인 보여주기를 실속있게 진행하며 모내기 일정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로하협동농장에서는 영농물자와 자재가 부족한 조건에 맞게 능률적인 씨레치기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부림소도 적극 이용하여 씨레치기를 확고히 앞세워나가고 있음.

○ 속도와 질을 다같이(민주조선 5.25)

- 봉산군 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기 위하여 모내기전투조직을 조직하고 속도와 질을 보장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음.
- 청계협동농장에서는 논갈이와 씨레치기를 앞세우고 매일 많은 면적의 포전에 모를 내면서도 그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음. 또한 모내는기계를 수리정비하여 만가동 시킴으로써 날짜별, 포전별로 세운 모내기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 가촌, 토성, 송산협동농장에서는 모뜨기와 모운반을 앞세우고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모내기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역량을 모내기에 집중시켜(로동신문 5.28)

- 강남군 당위원회에서는 당면한 모내기를 적기에 보장하는 것을 논벼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내세우고 모내기 전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군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노동력이 적게 들면서도 알곡소출을 높일 수 있는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 맞게 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잘 이끌어주고 있음.
- 경영위원회에서는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여 앞선 논벼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 특성에 맞게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음.
- 모내기 실적이 오르고 있는 조건에 맞게 군당위원회에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양수동력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음.

○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민주조선 5.29)

- 곡산군 협동농장의 일꾼들은 모내기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는데서 찾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품종별로 모내기 적기를 바로 정하는 문제, 비료가 부족한 조건에서 대용비료를 이용하여 실한 벼모를 중단 없이 보장하는 문제, 노동력 동원과 노동력 배치 문제,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는 문제 등 모내기의 어느 한 고리도 놓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씨레치기를 모내기에 한주일 이상 앞서 끝내기 위해 트랙터와 부림소를 집중하도록 하고 기름공급과 물보장 대책을 기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논두렁을 밟으면서 모내기가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덕흥, 신흥협동농장에서는 대용비료를 이용하여 실한 모를 중단 없이 길러내면서 농기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부림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특히 토지정리된 포전의 씨레치기를 한주일 이상 앞서도록 하여 양금이 충분히 앓은 다음 모내기를 질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모내기전투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6.2)

- 김정일은 “농업생산은 시기성을 요구하는 것인만큼 농사에서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함.
- 웅진군에서는 알곡증수의 예비를 모든 영농사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하는데서 찾고 한해농사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모내기전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인데 맞게 모내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또한 모내는 기계와 트랙터의 수리정비를 실시하여 만가동, 만부하를 보강하고 있음.
- 또한 씨레치기와 비료치기를 기술 규정대로 꼼꼼히 하고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여 모내기에서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이고 있음.

○ 불멸의 업적이 깃든 농장에서 모내기를 끝냈다(로동신문 6.4)

- 만경대구역 만경대 농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완료하였음.
- 농장 일꾼들은 모내기 성과가 확대되는데 맞추어 모내기의 모든 공정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음. 논두렁짓기, 모운반을 비롯한 작업공정을 맡은 농업근로자들도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음.
- 모내는기계 운전자들과 모공급수들은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고 모를 깊지도 얕지도 않게 내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음. 모 관관리공과 모뜨기, 모운반을 맡은 농업근로자들도 모내는 기계에 벼모를 중단없이 보장하여 자신들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음.

○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로동신문 6.4)

- 은과군에서는 모내기에 따르는 매 영농공정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노력하고 있음.
- 군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모내기를 적기에 끝낼 수 있도록 모기르기부터 논갈이, 씨레치기 등 영농공정별 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조직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적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군에서는 지난해 농사경험에 비추어 올해에 군안의 전반적인 협동농장이 새로운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모내기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또한 보여주기사업을 실시하여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모기르기로부터 여러가지 영농방법에 따르는 물대기, 썬레치기, 밀비료치기 등 매 공정의 기술적 요구에 맞게 모내기를 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모판관리를 잘해온 레로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를 기본적으로 끝낸데 이어 강안, 양동협동농장에서는 불리한 날씨에도 실한 모를 키워내어 모내기를 마지막 고비에서 다그치고 있음.

○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민주조선 6.5)

- 박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내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서자 모내기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속도와 함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문제를 중시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각 협동농장에서의 모내기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해당 일꾼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제기되는 문제를 수시로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또한 해당 단위의 역할을 높여 농기계부속품을 비롯한 영농물자와 자재를 충분히 생산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작업반, 분조에서는 노동력조직사업을 합리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노동력일 평가사업을 잘하여 농장원의 생산의욕을 적극 추동하고 있음.

○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민주조선 6.6)

-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해나가도록 기술적 지도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일꾼들을 농촌에 내보내어 한해 농사의 중요한 영농공정인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리원시 안의 정방, 대룡 등 시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에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총동원, 총집중시키고 매일 높이 세운 계획일정대로 모를 내도록 조직사업과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농장에서는 모내기 성과가 확대될수록 모판관리에 힘을 넣어 모내는 전 기간 마지막 모까지 실한 모를 낼 수 있도록 모판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청계, 가촌, 지탑 등 봉산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와 모내는기계 등 농기계

의 가동률과 이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음.

- 황주군, 은파군 안의 농촌에서도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모내기에 모든 노동력을 총집중하고 있음.

○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민주조선 6.6)

- 안변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의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모내기 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기초 위에 계획된 기간 안에 모내기를 전부 끝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올해에 받아들이는 과학적 영농방법이 성과를 내게 하는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마지막까지 실한 벼모를 내며 모를 낸 포전에 대한 물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주고 있음.

○ 전국적으로 벼모내기 적기에 결속(민주조선 6.18)

- 전국적으로 벼모내기를 적기에 끝마쳤음.
- 모내기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이라는 것을 명심한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벼모를 잘 키워내기 위한 일에 힘을 넣으면서 농기계의 수리정비를 말끔히 하는 등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모내기 전투에 들어감.
- 만경대구역 만경대농장, 사리원시 미곡, 재령군 삼지강, 강서군 청산,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등에서 앞섰으며, 특히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에서는 지난해의 성과에 토대하여 모내기를 5월 말 이전에 끝냈음.
- 염두삼천리별, 온천별, 룡천별, 운전별, 재령별 등 서해별방지대 농촌에서는 논물대기와 씨레치기, 모뜨기를 선행하고 노동력과 농기계수단을 집중하여 날마다 많은 면적에 벼모를 냈음.
- 평양별, 풍덕별, 황주군등별의 농업근로자도 모관관리를 잘하여 실한 벼모를 포전에 낼 수 있게 하고 모내는기계 운전공과 모공급수의 역할을 높여 모내기 적기를 보장하였음.
- 벼모내기를 적기에 끝낸 각지 협동별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양양된 열의 속에 영농전투가 더욱 힘 있게 전개되고 있음.

□ 김매기

○ 모내기 때의 기세로(민주조선 6.8)

- 김정일은 “농장에서는 노동력과 영농수단을 총동원하여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함.
- 어랑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위해 집중시켰던 노동력과 수단을 그대로 김매기에 돌리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김매기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운데 기초하여 이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앞선 단위의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기간 강냉이 농사를 잘 지어 군적으로 1위를 양보하고 있지 않은 이업협동농장에 이번에도 김매기에서 앞서고 있음.
- 부림소관리를 맡은 농장원들은 그들이 김매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는 높은 책임감 하에 부림소에 대한 영양관리를 잘하면서 후치질을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김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6.12)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특히 김매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함.
- 단천시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많은 면적에 강냉이를 심어 강냉이 밭김매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음.
- 정동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밭 김매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림소를 동원하여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 있음.

○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로동신문 6.15)

- 김매기를 잘해야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고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음. 한해 농사의 성과여부는 김매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좌우됨.
- 김매기전투에 농촌경리부문 일꾼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함. 또한 작업반장, 분조장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작업조직을 구체적으로 하며 분조관리제의 요구대로 매일 총화평가사업을 잘하여 농장원의 열의를 북돋아 주어야 함.

-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농촌지원단위에서는 모내기 때의 기세를 늦추지 말고 김매기 전투에 노동력 지원을 더 많이 내보내어 논밭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충천한 기세로 김매기를 다그친다(민주조선 6.21)

- 김정일은 “김매기를 잘하여야 농작물의 성과를 촉진시킬 수 있고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함.
- 성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김매기를 잘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강냉이밭 김매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수행해나가고 있음.
- 백원협동농장에서는 기계와 축력을 배합하여 후치질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김매기를 해나가고 있음. 금평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밭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작업조직을 짜고 이를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음.

○ 농작물 가꾸기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로동신문 6.22)

- 김정일은 “알곡수확고를 높이자면 김을 제철에 잘 매야 한다. 알곡수확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평안북도 도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에서 농작물 가꾸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도안의 협동농장에서는 김매기 계획을 포전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김매기를 힘차게 수행하고 있음.
-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낸 신암, 장산, 산두협동농장을 비롯한 룡천군 협동농장에서는 김매기를 다그치고 있음. 운하, 보석협동농장을 비롯한 운전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노동력 조직을 통하여 김매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를 짧은 기간에 끝낸 녕변군, 태천군, 의주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포전별, 날짜별로 김매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모든 노동력을 집중하고 있음.

○ 애국의 마음 협동벌마다에(민주조선 6.22)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먹을 것이 넉넉해야 인민에게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줄 수 있으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함.

- 황해북도에서는 농작물 비배관리로 들끓고 있음. 모두 한포기의 곡식이라도 정성을 다해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일꾼들은 당면한 논밭김매기와 논물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받고 있음. 또한 유기질비료를 효과 있게 이용하여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황주군에서는 영농물자와 자재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협동농장마다에 유기질복합 알비료 생산기지를 잘 꾸려놓고 거기에서 생산된 알비료를 논밭에 주어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있음.
- 련산군과 토산군, 금천군에서는 각종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농작물비배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음.

○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민주조선 6.24)

- 강원도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김매기 일정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김매기에 집중시켜 협동농장을 지원하고 있음.
- 오현, 학봉, 장동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 밭김을 4회 이상 돌려맬 목표 하에 노력하고 있으며 원산시, 안변군, 통천군에서는 기계와 축력을 배합하여 매일 김매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 평강, 고산, 판교군의 협동농장에서는 승벽내기로 김매기를 다그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영농작업이 겹치는 실정에 맞게 노동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강냉이밭 면적이 많은 세포, 법동군에서는 고산지대의 특성에 맞게 부림소의 이용률을 높여 후치질을 확고히 앞세우고 있음.

○ 모든 논밭을 알뜰히(민주조선 6.25)

- 김정일은 “모내기 전투를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김매기 전투를 계속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함.
- 중강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풀이 돌아나기 전에 김을 돌려매도록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일꾼들은 김매기가 모내기와 씨불임 못지않게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음.
- 논김매기에서는 읍, 중덕, 중산협동농장이 앞서고 있으며 밭김매기에서는 장성, 상장협동농장이 앞서고 있음.

○ 네벌 김매기 마지막 단계(로동신문 7.3)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하에 농장에서는 세벌김매기를 끝낸 데 이어 네벌김매기를 마지막 단계에서 힘 있게 추진하고 있음.
- 김매기에서는 제 6, 7작업반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또한 제 2, 3작업반에서도 높은 목표 하에 기세를 올리고 있음.
- 네벌 김매기가 마지막 단계에서 힘 있게 진행될수록 농장에서는 장마철 피해방지 대책을 예견성 있게 따라세우고 있음.

3. 밭농사

-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두벌농사 적지 선정과 품종배치, 종자확보사업에 힘을 기울여 밀, 보리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따라 콩농사를 짓고 있으며 콩농사 면적을 늘리기 위해 콩재배기술, 방법 등을 전파하고 있음. 또한 식량문제를 자체로 풀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강냉이심기가 추진되어 전국적으로 강냉이 심기에 돌입하였음. 부침땅의 이용률과 지력을 높여주며, 식용 기름과 꿀까지 생산해내는 유채 농사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모작동향

- 앞그루작물 수확을 제철에(로동신문 6.9)
 - 김정일은 “두벌농사는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는 주체적인 집약농법이다”라고 말함.
 - 앞그루작물 가을걷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해야 애써 지어놓은 밀, 보리, 감자를 허실없이 거두어들일 수 있음. 또한 뒤그루작물 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하기 위해서도 앞그루작물 가을걷이를 빨리 끝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농업부문 일꾼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야 함. 전기, 연유, 농기계 부속품 등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함.
 - 또한 낱알을 제때에 건조시키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함. 갓 수확한 밀, 보리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잘 말리지 않으면 썩이 나오거나 부패할 수 있음. 따라서 거두어들인 낱알이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적기에 거두어들이고 질적으로 심자(민주조선 6.17)
 - 요즘 앞그루작물 수확과 뒤그루작물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바람이 불고 있음. 앞그루작물을 제때에 거두어 들이고 뒤그루작물을 질적으로 심는 것은

농업 생산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임.

- 불리한 일기조건과 부족한 영농자재 그리고 제한된 짧은 기간의 제약 조건 속에서 두벌농사를 제때에 하기 위해 우선 트랙터를 비롯한 기계수단의 가동률을 높여야 함. 또한 부림소를 비롯한 다른 수단들도 효과있게 이용해야 함.
- 각급 농업지도기관에서는 두벌농사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동시에 영농공정수행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속 있게 해나가야 함.

○ 빠르게 해제긴다(민주조선 6.17)

- 김정일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함.
- 앞그루작물 가을걷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해야 애써 지어놓은 낱알을 허실없이 거두어 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뒤그루작물 심기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할 수 있음.
- 청단군 농장에서는 앞그루작물 가을걷이를 짧은 기간에 완수할 목표 하에 포전별, 낱알별 일정계획을 세우고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 또한 작업반별, 분조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앞그루작물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 운곡, 금학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실천을 통하여 당의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 앞그루작물 가을걷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앞그루작물 수확으로 들끓는다(민주조선 6.20)

- 황해남도 안의 농촌에서 앞그루작물 가을걷이가 시작되었음.
- 황해남도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도안의 농촌에서는 앞그루작물 농사작전을 통이 크게 펼치고 모든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수행하도록 경제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음.
- 시, 군의 협동농장에서는 두벌농사 적지 선정과 품종배치, 종자확보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앞그루작물 농사포전에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낸 다음 최적기를 놓치지 않고 씨뿌리기를 진행함. 한편 지역적 특성과 일기 조건에 맞게 앞그루작물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수행함.

- 특히 재령벌과 연백벌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를 최적기에 다그쳐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당면한 밀, 보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시작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청단군과 연단군에서는 앞그루로 심은 감자캐기에 속도를 가하고 있음.

□ 콩농사

○ 콩밭 지력높이기를 힘있게(민주조선 4.27)

- 금강군 협동농장에서는 콩 재배면적을 늘리는 동시에 콩밭 지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소곤, 신원 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콩밭에 정보당 30여 톤의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미 계획한 거름 전량을 생산한 협동농장에서는 운반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실어내기가 마감단계에 이르고 있음.

○ 알알이 정성답아(민주조선 5.17)

- 김정일은 “모든 도, 시, 군에서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콩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함.
-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농업지도기관에서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넉넉히 마련하고 콩밭의 지력도 높인 조건에 맞게 당면한 씨불임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음.
- 일꾼들은 봄철농사일로 들끓는 협동농장에 내려가 대중 속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한편 영농물자와 자재보장, 기술적 지도를 앞세우고 있음.
- 지난해에 콩농사의 덕을 크게 본 장강군, 자성군, 화평군, 우시군, 초산군, 위원군, 중강군의 협동농장에서는 올해 콩농사를 더 많이 할 목표를 세우고 콩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음.
- 서양협동농장을 비롯한 동신군 안의 일꾼들은 콩 종자처리를 잘하고 밭갈이를 적극 앞세운데 기초하여 콩씨불임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하고 있음.

○ 콩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5.24)

- 김정일은 “우리가 콩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면 가까운 앞날에 콩더미 위에 올라앉을 수 있다”고 말함.
- 당의 콩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콩농사 준비를 알심있게 해온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콩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날마다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은산군에서는 콩밭 정보당 질 좋은 거름은 30톤, 소석회와 재, 구운 흙 등은 각각 1톤씩 내면서 콩밭갈이를 끝낸 군에서는 콩심기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부여주기 사업을 품을 들여 진행함.
- 무산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부침땅의 지력과 관수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면서 콩심기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음.

○ 콩농사를 착실히(민주조선 5.30)

- 당의 콩농사 방침에 맞추어 금강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콩농사를 잘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음.
- 이와 더불어 기후 풍토 조건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마련하고 지력 높이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때가 되자 일제히 씨불임에 들어가 실적을 높이고 있음.
- 현리, 신원, 속사협동농장에서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고 땅 다루기를 앞세우면서 콩심기를 다그치고 있음. 순갑, 소곤 등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는 적지로 선정된 포전에 유기질 비료와 소석회를 충분히 내고 날짜별, 포전별 계획대로 콩심기를 실천하고 있음.
- 또한 수습정보의 밭에 콩을 심는데 이어 두벌농사뒤그루 콩심기 준비를 바짝 다그치고 있음.

○ 빈땅을 찾아 많은 콩을(로동신문 6.1)

- 수풍발전소에서 당면한 전력생산과 함께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빈땅을 찾아 콩을 많이 심어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발전소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단위에서 콩농사를 잘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인식시키고 자체의 힘으로 콩농사를 잘 짓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있음.

또한 모든 종업원들이 콩농사와 관련된 과학기술지식을 원만히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강습과 경험발표를 자주 진행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발전소에서는 주변의 빈땅을 찾아 많은 콩을 심는 성과를 거둠.

○ 콩농사에서 전환을 이룩할 결의 밑에(로동신문 6.3)

- 김정일은 “콩은 우리 인민과 군인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작물의 하나이다”라고 말함.
- 평원군당위원회에서는 콩농사를 잘하는 것을 현시기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풀기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당의 콩농사방침 관철에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에 지난해보다 1.7배나 더 많은 면적에 콩을 심을 높은 목표를 세우고 원그루 콩과 두벌농사 뒤그루콩을 제철에 질적으로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군 안의 협동농장과 기관, 기업소에서는 빈땅과 밭 주변을 비롯하여 콩을 심을 수 있는 땅을 모조리 찾아 포전 정리와 땅갈기, 물도랑치기 등 준비를 원만히 하고 콩심기에 들어갔음.
- 올해 콩심기를 먼저 끝낸 신송, 화진협동농장에서는 예찰예보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자체로 대용농약을 생산하여 병해충 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콩심기를 제철에 끝냈다(로동신문 6.7)

- 김정일은 “콩농사는 우리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다”고 말함.
- 북창군의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콩밭 정보당 30여 톤의 질 좋은 거름과 5톤 이상의 흙보산비료를 비롯하여 소식회와 재, 구운흙을 충분히 내고 깊이를 보장하면서 콩밭갈이를 한데 이어 콩심기에 들어섰음.
- 한편 군에서는 연류협동농장에서 보여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콩심기에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려주는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담당 일꾼들을 협동농장에 내려보내어 콩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신평, 소창, 읍협동농장에서는 콩심기를 이미 완료하였음. 룡산, 대평협동농장에서는 토양의 습도에 맞게 콩심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콩농사에 계속 큰 힘을(로동신문 6.12)

- 김정일은 “콩은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작물의 하나이다”라고 말함.
- 단천시 안에서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콩밭 면적이 늘어난 데 맞게 과학적인 콩농사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실정에 맞게 병해충의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수 있도록 함.
- 시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농사경험을 살려 협동농장에서 콩밭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협동농장에서는 기술일꾼들이 콩밭 김매기와 후속 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실속 있게 하고 있음.

○ 콩밭을 꽃밭처럼(민주조선 6.24)

- 김정일은 “모든 도, 시, 군에서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콩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함.
- 자성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와 콩심기, 모내기를 끝내고 그 기세를 이어 콩밭 김매기를 하고 있음. 콩밭김매기에서는 류삼, 윤봉, 관평, 삼거협동농장이 앞서고 있음.
- 또한 귀인협동농장을 비롯한 군 안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는 앞선 재배방법을 받아들인데 맞게 콩밭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부림소를 이용하여 콩밭 후치질을 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밀, 보리

○ 밀, 보리 비배관리를 착실히(민주조선 5.2)

- 은파군 신촌협동농장에서는 밀, 보리 밟아주기, 비료주기, 냉습피해 방지대책들을 세우며 밀, 보리 비배관리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밀, 보리 비배관리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제 3, 5작업반 경험을 일반화시키며 당면한 영농공정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있음.

□ 강냉이

○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를 다그친다(민주조선 5.16)

- 김정일은 “우리는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자체로 풀어야 한다”고 말함.
- 당조직의 지도 하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기본면적에 대한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를 끝낼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적 지도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였음.
- 일꾼들은 농촌에서 같이 수단을 총동원하여 밭갈이와 이랑짓기를 비롯한 선행공정을 앞세우면서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실하게 키우고 있음.
-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에서는 제2작업반이 앞장서고 있음. 이곳 작업반에서는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강냉이심기가 일정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제4작업반에서도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 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음.

○ 전국적으로 강냉이 심기가 끝났다(민주조선 6.1)

- 전국적으로 기본면적의 강냉이 심기가 전부 끝남.
- 알곡증산에서 파종적기를 보장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강서군에서는 거름퍼기와 이랑짓기를 비롯한 작업공정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강냉이 심기를 제일 먼저 끝냄.
- 숙천군, 문덕군 안의 농장에서도 종자준비와 논밭 지력높이기 등을 빈틈없이 하였으며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계획대로 일을 마무리하였음.
- 날짜별, 포전별 계획을 면밀하게 세운데 맞게 역량을 집중하여 날마다 많은 면적에 강냉이를 심은 해주시, 안악, 룡천, 염주, 평강, 금강군을 비롯한 황해남도과 평안북도, 강원도 안의 시, 군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음.
- 강냉이 심기를 끝낸 각지 농업근로자들은 당면한 벼모내기와 김매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강냉이밭 김매기에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6.20)

- 김정일은 “김을 제철에 매지 않고서는 알곡수확고를 높일 수 없다”라고 말함.
- 덕천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에 나가 농작물의 생리적 특성과 김이 든 상태에 맞게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역량을 총집중하여 계획대로 수

행해 나가고 있음. 그리고 김매기에 나서는 기술적 문제를 제때에 알려주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무창협동농장에서는 후치질을 확고히 앞세우고 강냉이밭 김매기를 빠르게 해나가고 있음. 구장협동농장 또한 포기마다에서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

○ 주인다운 입장에서(민주조선 6.24)

- 신평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밭 김매기를 다그치고 있음.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는 일꾼들을 협동농장에 내려보내 풀이 돌아나기 전에 김을 매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강냉이밭 김매기에서는 추란전, 계수협동농장이 앞서나가고 있음. 대지, 미송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농장원들로 하여금 포전에 풀 하나라도 돌아날세라 꼼꼼하게 일을 수행하며 강냉이밭을 꽃밭처럼 가꾸도록 하고 있음.
- 군 안의 농장원들은 풀이 아니라 흙을 매면서 강냉이 포기과 포기 사이를 말끔히 긁어주어 한대의 풀도 돌아나지 않도록 김매기를 주인다운 입장에서 해나가고 있음.

○ 강냉이밭 김매기에서 혁신(로동신문 7.7)

- 회령시 창효협동농장에서는 김매기 일정계획을 날짜별, 포전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날계획은 그날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강냉이밭 김매기에서는 제 4, 2, 3작업반이 앞장서고 있음.
- 농장에서는 강냉이밭 후치질을 하는데 책임감이 높은 농장원을 배치하고 열흘에 한번씩 후치질을 질적으로 하면서도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유채

○ 앞그루 작물로 유채를(로동신문 6.12)

- 강령군, 운전군에서는 유채기름 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논앞그루로 심은 유채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물도랑을 깊숙이 파고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가을에 심은 유채들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성과를 거두었음.

- 유채농사는 부침땅의 이용률과 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게다가 먹는 기름과 꿀까지 생산할 수 있게 하므로 일석이조임.

□ 땅콩

○ 땅콩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6.12)

- 김정일은 “좋은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 기름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말함.
- 삼석구역 호남협동농장에서는 지난해부터 땅콩농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
- 땅콩에는 기름함유량이 45-50%나 되며 단백질과 여러 가지 비타민이 들어 있음. 또한 정보당 2-3톤의 땅콩만 생산하여도 많은 기름을 짤 수 있어 매우 유용함,
- 삼석구역 호남협동농장에서는 정보당 30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실어내어 받을 걸 구고 다수확품종의 땅콩을 심어 땅콩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4. 감자농사

- 인민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함을 강조하며 올해 감자생산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준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 하에 포전별로 품종을 배치하고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음.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대로 종합적인 기계화 수단을 이용하여 감자심기 속도를 높이고 있음.

□ 감자농사 정책

- 당의 감자농사 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민주조선 4.29)
 - 김정일은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 방침이다”라고 말함.
 - 농업 생산의 다각화, 전문화는 당이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농업정책의 하나임. 식량문제를 풀려면 고산지대에서 농업생산 구조를 개조하여 감자를 많이 심어야 함. 그동안 고산지대 농촌에서는 종자문제 해결과 선진적인 재배방법 도입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의 다각화, 전문화에서 큰 진전을 이룩함.
 - 감자농사를 위하여 좋은 품종을 심는데 힘을 기울여야 함. 또한 아무리 좋은 종자라고 하더라도 지력이 높지 못하면 웅당한 소출을 거둘 수 없으므로 물거름, 흙보, 산비료, 생물활성퇴비를 비롯한 유기질 비료를 보장해야 함. 동시에 기계화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당의 감자농사 혁명방침 관철의 주인은 다름 아닌 농업근로자임. 농업근로자들은 현대적인 과학농법인 대홍단식 감자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감자연구소를 비롯한 농업과학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의 역할을 높여야 함.
 - 관련된 공장, 기업소에서는 영농물자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야 하며 성, 중앙기관에서는 근로자들을 적극 도와야 함.

○ 당의 감자농사 혁명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로동신문, 민주조선 5.3)

- 올해 감자농사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하는 대흥단군 농업근로자 모임이 5월 2일 열림. 강창욱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안문학 량강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인사들이 모임에 참가함.
- 보고자, 토론자들은 올해 감자농사를 잘하기 위하여 당의 종자혁명 방침을 틀어쥐고 다수확 감자품종을 얻어내는 것과 함께 채종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종자보관과 싹틔우기, 통알감자심기, 김매기 등 모든 영농공정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야 할 것에 대해 언급함.
- 더불어 농근맹 조직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농장, 작업반, 분조 사이 사회주의 경쟁을 전개하여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함.

○ 과학농법의 요구대로(민주조선 5.4)

- 김정일은 “감자농사를 잘하자면 영농사업을 철저히 과학화하여야 한다”고 말함.
- 현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며 모든 영농공정이 기술공정임. 감자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방도 중의 하나 또한 바로 과학기술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임. 이를 바탕으로 농장에서는 감자심기 때부터 과학농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있음.
-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포전별로 품종을 배치하고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음. 또한 농기계 가동률 높이는 동시에 싹이 잘 틈 종자를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종자문제해결을 우리 식으로(로동신문 5.5)

- 김정일은 “감자농사를 잘하자면 종자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함.
- 육종연구소에서는 감자역병을 막고 수확고가 높은 감자종자를 생산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채종연구소에서는 무비루스잔알감자를 생산하기 위한 식물체 배양연구와 채종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재배연구소에서는 과학적인 재배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연구소에서는 해당기관과의 연계 하에 더 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헌신성을 높이 발휘(로동신문 5.15)

- 김정일은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 방침이다”라고 말함.
- 삼지연군 보서농장 일꾼들은 지난 시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노력일수를 정확히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형조건으로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지 못하자 대신 부림소 이용률을 높이고 있음.

○ 감자농사를 함께 책임진 입장에서(로동신문 5.16)

- 최근 성, 중앙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이 대홍단군, 삼지연군, 백암군의 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함.
- 인민보안성의 일꾼들은 대홍단군 창평농장 제 2작업반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수많은 영농자재와 14종의 1만여 점의 생활필수품을 제공함.
- 이 밖에도 중앙검찰소, 경공업성, 조선로동당출판사, 체신성, 농업성, 채취공업성, 국가관광지도국, 고려봉사지도국, 은하지도국, 대외문화연락위원회, 금강지도국, 연유지도국, 금성청년출판사를 비롯한 모든 성, 중앙기관에서 양강도 일대의 농장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당의 감자농사 혁명방침 관철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 있음.

□ 감자농사 준비

○ 감자심기가 시작되었다(민주조선 4.22)

- 대홍단군에서 감자심기가 시작됨.
- 대홍단군에서는 이미 준비한 다수확품종의 종자처리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하고 지력높이기와 농기계 준비를 지속하며 씨불임철을 맞이함. 또한 감자농사 시작부터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신흥농장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다른 농장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일꾼들은 농장에서 올해의 날씨 특성에 맞게 감자심기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농기계의 가동률, 이용률을 높이는데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청평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이 땅다루기를 확고히 앞세우고 평당 포기수와 종자 묻히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감자심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 량강도 안의 감자산지에서 감자심기 시작(로동신문 4.23)
 - 도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량강도의 감자산지에서는 화선식정치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감자심기에 돌입하였음.
 - 군에서는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대로 종합적인 기계화수단을 이용하여 감자심기 속도를 높이고 있음.
 - 삼지연군에서는 농장마다 해발고가 다른 조건에 맞게 감자심기를 착실히 하고 있으며, 운반수단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감자종자를 제때에 포전에 운반하고 있음.
 - 군농기계작업소와 농장의 기계화작업반에서는 더 많은 농기계부속품을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감자종자 싹틔우기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로동신문 5.5)
 - 서두농장에서는 감자종자싹틔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종자싹틔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온도, 습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조마다 포전관리원을 배치하고 감자종자가 포전에 나갈 때까지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적 요구를 일꾼들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작업반 기술자들은 실내와 야외감자 종자싹틔우기장에서 포전관리원들과 함께 싹틔우기장의 온도, 습도보장을 책임지고 있음.
- 감자생산을 더욱 늘릴 목표를 내세우고(민주조선 5.11)
 - 김정일은 “양강도나 함경북도와 같은 고산지대에서는 감자생산을 높이는 것이 곧 알곡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된다”라고 말함.
 - 무산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의 모든 초급일꾼들이 올해의 감자농사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데 큰 힘을 넣고 있음.
 - 군안의 협동농장 초급일꾼들은 당면한 감자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독소, 오봉협동농장의 초급일꾼들은 농장원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감자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5.12)

- 운흥군에서는 대흥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대로 감자종자 싹틔우기를 실속있게 한 것에 기초하여 기계화 수단과 부림소 이용율을 높여 감자심기 속도를 높이고 있음.
- 대오천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초급일꾼들이 감자심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앞장서 풀어나가고 있음.
- 동포, 심포협동농장에서는 지대별, 포전별,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감자를 질적으로 심고 있음.
- 룡포 협동농장에서는 포전마다 해발고도 차이가 심한 조건에서 감이 드는 족족 감자심기를 착실히 하고 있음.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일념안고(민주조선 5.14)

- 양강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농촌에서 감자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지에 내려가 있는 일꾼들은 감자심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주고 있으며, 영농작업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대흥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대로 감자농사를 짓고, 종자처리에서 앞선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예견되는 날씨를 제때에 알려주어 그에 맞게 감자심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룡서군에서는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감자심기를 추진하고 있음. 보천군에서는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성과를 내는 기계화 수단(민주조선 5.14)

- 김정일은 “대흥단군에서 감자농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함.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감자농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이에따라 대홍단군은 어느 농장에서는 여러가지 농기계를 갖추어 감자심기에서 수확에 이르는 모든 작업을 기계로 하고 있음.

○ 연일 높은 실적을(민주조선 5.14)

- 삼지연군에서는 감자심기에서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감자농사를 짓고 있음.
- 보서, 홍계수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에서는 모든 노동력과 기계수단이 감자심기에 총 동원되고 있음. 또한 기상기후조건과 품종의 생물학적 특성을 따져가며 감자심기를 진행하고 있음.

○ 싹틔우기를 실정에 맞게(로동신문 5.15)

- 백암군은 온도 차이가 심하여 감자종자를 싹틔우는데 불리함.
- 그러나 광주리식 싹틔우기 방법을 받아들여 낮에는 감자종자를 광주리에 담아 밖에 내놓고 밤에는 감자종자 저장고에 들어가는 식으로 하여 싹을 틔울 수 있었음.
- 광주리식 싹틔우기 방법은 광주리에 담은 감자종자를 그대로 운반하기 때문에 싹이 떨어지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음.
- 백암군 덕립협동농장 일꾼들은 감자종자 싹틔우기에 필요한 광주리를 농장 자체로 만드는 한편 부족한 광주리를 군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전부 확보하였음.
- 농장기술일꾼들은 싹틔우기에 가장 알맞는 온도, 습도, 빛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감자심기 마감단계(로동신문 5.17)

- 김정일은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이다”라고 말함.
- 장진군, 부전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감자심기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전개되고 있음.
- 장진군의 일꾼들은 감자포전마다 흙보산비료와 질 좋은 거름을 듬뿍 실어낸 기세로 감자심기 성과를 거두었음.
- 백암협동농장에서는 한평의 감자를 심어도 설친데가 없도록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있음. 안기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와 부림소를 총동원하여 낮밤 구별 없이 힘찬 전투를 벌려 밭갈이와 이랑짓기를 앞세워 감자심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감자밭 비배관리를 실속있게(민주조선 6.7)

- 운산군에서는 앞그루감자밭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가고 있음. 당조직의 지도 하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앞그루 감자농사를 잘하기 위한 당정책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기술지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에서는 지난 시기 감자밭 비배관리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좌리협동농장에서는 자기고장의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종자를 마련하고 물거름을 비롯한 질 좋은 거름을 충분히 낸 다음 감자밭 김매기와 후치질을 질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덧비료주기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행하고 있음.

○ 감자캐기 준비를 빈틈없이(로동신문 6.9)

- 김정일은 “두벌농사는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는 것 만큼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함.
- 개천시에서는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받들고 올해에도 앞그루감자농사를 잘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수백 정보의 면적에 앞그루감자를 심고 정성껏 가꾼 개천시에서는 감자를 한 알도 허실 없이 캐내기 위하여 그 준비사업을 미리부터 실속 있게 하고 있음.
- 짧은 기간에 많은 면적의 앞그루감자캐기와 뒤그루작물심기를 끝내야 하는 조건에 맞게 일꾼들은 시안의 모든 역량을 감자캐기와 뒤그루모내기, 콩심기에 집중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여 추진하고 있음.
- 시에서는 캐낸 감자를 제때에 담아 나를 수 있게 감자포장용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음. 또한 트랙터와 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에 대한 수리정비도 끝냈음. 또한 캐낸 감자를 제때에 가공처리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예견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

○ 당면한 감자밭 가꾸기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6.30)

- 신덕농장에서는 감자밭 가꾸기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날 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 농장일꾼들은 작업반에 나가 작업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음. 또한 1g의 비료를 주고 한대의 김을 매도 알심 있게 일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감자밭 가꾸기에서 트랙터 운전수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음. 또한 농기계의 만가동을 위하여 트랙터의 가동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 있음.

○ 더 많은 감자를 생산할 일념안고(민주조선 7.19)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대로 감자밭 비배관리를 잘하도록 하기위한 기술지도를 착실하게 하고 있음. 감자생산을 늘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요구를 풀어주는 한편 그 집행정형을 장악하여 필요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장마철에 들어서기 전에 모든 감자밭에서는 3회 후치질과 김매기를 끝내고 역병피해를 막기 위한 데 힘을 쏟고 있음. 자체로 만든 효능 높은 예방약을 감자포기에 충분히 뿌려주고 있으며 역병 감시초소를 늘리고 감시조직을 조직하여 감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연사군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고산지대 농촌에서는 감자밭 비배관리를 착실히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원천을 동원하여 흙보산비료 생산을 다그치며 감자의 생육상태에 맞게 비료를 듬뿍 실어내고 있음.

5. 축 산

-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풀먹는 집짐승 수를 늘려야 한다는 당의 축산정책에 따라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가 실시되고 있으며 우량품종 생산,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기르기 쉽고, 원가도 적게 들며 수익성이 대단히 높은 토끼 기르기가 군중적 운동으로 실시되고 있음. 더불어 농사에서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거름을 많이 받아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부림소관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축산동향

○ 수의방역사업을 착실히(민주조선 4.23)

- 축산물 생산을 늘리는데서 수의방역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강원도 수의방역소에서는 수의위생방역월간에 해야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집행하고 있음.
- 시, 군수의방역소에서는 일꾼들에게 기술 강습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을 현지에 내려보내 봄철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도수의방역소 일꾼들은 집짐승을 기르는 단위에서 겨울 동안 생긴 흔적들을 말끔히 없애 축산물 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또한 집짐승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조류독감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철새감시초소에서는 철새의 서식장소를 미리 파악하고 유동 정형을 제때에 통보하는 사업을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음.

○ 조류독감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로동신문 5.4)

- 평양가금지도국에서는 조류독감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분공을 주어 모든 일꾼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 강습을 실시하여 조류독감에 대한 상식, 기술적 내용을 알리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지도국수의방역소에서는 시안의 모든 가금공장에 내려가 철새에 대한 감시, 통보사업, 가금류가 철새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만경대 닭공장에서는 조류독감 예방접종과 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포 닭공장에서는 통제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질병감시에 대한 통보체계를 세우고 있음.
- 시 안의 다른 닭공장, 오리공장에서도 닭, 오리를 다른 호동으로 옮길 때마다 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사업과 먹이소독을 하여 조류독감을 철저히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집짐승 기르기를 균중적으로(민주조선 5.29)

- 김정일은 “인민들이 고기를 넉넉히 먹을 때까지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내밀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라고 말함.
- 송원군에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우량 품종의 집짐승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풀먹는 집짐승의 사양관리방법을 널리 알리고 있음.
- 송관협동농장에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신양, 송천협동농장에서는 염소와 양, 토끼는 물론 소기르기에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전창, 월현, 회양협동농장에서도 염소, 양,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이 늘어나는 실정에 맞게 풀판 면적을 늘리고 방목을 짜고 들고 있음. 또한 젓가공기지를 꾸리는 한편 먹이가공설비를 갖추어 축산작업의 기계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있음.

○ 방목조직을 짜고들어(민주조선 5.30)

- 장강군 무덕협동농장에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길러 고기와 젓을 더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관리분조에서는 방목을 방목지별로 순차적으로 하여 집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고 방목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영양가 높은 덧먹이를 주어 풀먹는 집짐승의 비육상태가 좋아지게 하고 있음.
- 또한 풀판을 엮바꾸어 가면서 먹이보장조직을 하는 한편 새끼뺨 집짐승과 새끼뺨은 집짐승에 대한 방목과 관리에 특별한 힘을 쏟고 있음.

○ 풀먹는 집짐승기르기 활발(로동신문 6.5)

- 황해북도에서는 풀먹는 집짐승기르기 운동을 활발히 벌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토끼와 염소마리수가 각각 1.3배, 1.2배 늘어났음.
- 연탄군에서는 종자토끼의 사양관리와 수의방역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새끼 토끼마리수를 훨씬 늘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토끼를 기르고 있음.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시, 군의 협동농장에서는 토끼기르기의 중요성을 인민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장뿐만 아니라 농촌 세대에서도 많은 토끼를 기르고 있음.
- 염소사양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황주군에서는 젓가공품을 많이 생산하여 군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더 많은 젓과 고기를(민주조선 6.21)

- 송평분장에서는 우유생산과 고기생산에서 더 높은 성과를 이룩해 나가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조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우량품종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음.
- 분장에서는 1-2년 안에 분장의 모든 염소를 우량품종으로 개량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예방약도 정기적으로 먹이거나 주사하여 염소의 질병을 미리 막고 있음.
- 이와함께 염소우리에 대한 청소와 소독을 규정대로 하고 염소들의 위생관리를 잘 하여 질병을 미리 막고 모든 염소를 튼튼히 키워내고 있음.

○ 더 많은 젓과 고기를(민주조선 6.28)

-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는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정평군 장천협동농장의 일꾼들이 염소 기르기를 실시하고 있음.
- 일꾼들은 염소의 사양관리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려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젓과 고기생산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음. 또한 생활조건 보장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수의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한 마리의 소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계절적 조건에 맞게 방목을 위주로 하면서 염소의 영양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음.

○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근기 있게 벌려나가자(민주조선 6.29)

- 함경북도 안의 농촌에서는 종자문제 해결에 큰 힘을 넣고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명간군 하평협동농장에서는 풀먹는 집짐승 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축작업반의 역할을 높이는데 관심을 돌리고 있음. 이에 따라 농장의 종축작업반에서는 우량 품종의 토끼, 염소를 비롯한 새끼집 짐승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진시 청암구역 사구협동농장에서도 좋은 품종의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기 위해 종축사업에 힘쓰고 있음. 농장의 종축작업반원들은 계절적 조건에 맞게 우량 종의 집짐승과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어랑군 수남협동농장, 경원군 봉산협동농장, 명간군 근동협동농장, 회령시 계상협동농장 등 도안의 많은 협동농장에서도 우량품종의 집짐승을 많이 기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자체로 여러 가지 약을 만들어(로동신문 7.10)

- 김정일은 “축산업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수의방역사업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수의방역사업에서 기본은 예방임. 염소를 무리로 기르는 조건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 이에따라 방역대에서는 수의방역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매개 염소우리에 대한 관리와 호동, 야외놀이장, 울타리에 이르기까지 소독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또한 새끼낳이철에는 덧먹이를 주고 염소의 젖몸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새끼생산과 젖 생산을 높여가고 있음.
- 방역대에서는 약생산을 늘리는 사업에 힘을 쏟는 일환으로 더 많은 약재를 생산하기 위한 약초캐기에 집중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방목지 안의 적합한 땅을 찾아 가는 곳마다에 약초밭을 조성하고 많이 쓰이는 약초를 재배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염소

○ 종합적인 염소젖 가공기지(민주조선 6.21)

- 청진염소목장에서는 젖가공실에 염소젖가공설비를 갖추어놓고 염소젖을 종합적으로 가공하고 있음. 여기서 생산하는 신젖과 치즈, 버터는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아 청진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음.
- 젖가공품은 영양가가 높을뿐 아니라 보관하기도 좋고 운반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함.
- 생산된 젖가공품은 갱도식으로 특색 있게 건설된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시내로 운반됨.
- 염소목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대량으로 생산되는 우유를 제때에 처리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더욱 대형화, 현대화하여 더 많은 젖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음.

□ 토끼

○ 토끼 기르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로동신문 4.24)

- 돼지, 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집짐승은 기르는데 땀감이나 난알먹이가 많이 들기 때문에 토끼 기르기가 장려되고 있음.
- 토끼 기르기에서는 새끼토끼부터 중토끼로 키우는 시기가 매우 중요함. 이 과정에서 각 가정에서는 수의방역 기관과 연계를 맺고 토끼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음. 토끼를 기르는데 있어서 토끼우리를 지어주고 먹이를 주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 항상 관심을 갖고 토끼의 상태를 살피는 동시에 수의방역 대책을 세워야 함.

○ 토끼기르기를 군중적으로(로동신문 5.24)

- 김정일은 “토끼기르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함.
- 김책시 경영위원회 일꾼들은 토끼를 많이 기르는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적극 선전하는 한편 총화사업을 강화하여 시 안의 농촌세대들에서 토끼를 많이 기르도록 하고 있음.
- 토끼기르기에서는 상평축산전문 협동농장, 방학, 수동, 동흥, 원평 협동농장이 앞서나가고 있음.

- 시험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는 토끼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보여주기 사업과 기술학습을 자주 조직하고 있음. 또한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도 관심을 돌리고 있음.

○ 토끼기르기를 군중적으로 벌려(로동신문 5.30)

- 평안북도 안의 협동농장에서 토끼기르기를 군중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는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 속에 평안북도의 토끼마리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로 늘어남.
- 정주시, 운전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우리를 새로 건설하고 먹이보장,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우량품종의 토끼를 잘 길러내고 있음.
- 삭주군, 태천군, 박천군, 벽동군 안의 농업근로자들 또한 올해 더 많은 토끼를 길러낼 목표 하에 종축체계를 바로세우고 새끼토끼생산을 늘리면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토끼기르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는 구성시, 광산군, 염주군, 천마군 안의 농촌에서는 먹이기지를 잘 꾸리고 집단사육과 분산사육을 결합하여 가정세대에서도 많은 토끼를 기르고 있음.

○ 토끼기르기를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로동신문 6.1)

- 김정일은 “토끼기르는 운동을 널리 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먹이조건이 좋은 계절적 특성을 잘 이용하여 토끼기르기 운동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고 있음.
- 평안북도, 함경남도농근맹위원회에서는 토끼기르기에서 종자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종자토끼생산과 공급체계를 바로세워 생산성이 높고 병에 대한 건담성이 강한 우량품종의 토끼를 많이 생산하고 앞선 사양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개성시 농근맹위원회에서는 한해에 1,100여 마리의 토끼를 기른 신영희 가정의 경험을 널리 소개하며 시적으로 토끼 기르는 농장원 세대를 늘리고 있음.

○ 사양관리에 큰 힘을(민주조선 6.22)

- 맹산군 인흥협동농장 종축작업반에서는 토끼를 많이 기르는데 대한 당의 정책을 받아들여 토끼를 많이 기르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먹이문제와 수의방역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토끼에게 영양가 높은 먹이를 주고 먹이보장을 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수의방역사업도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음. 작업반에서는 자체로 고려약을 만들어 토끼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음.

○ 토끼를 많이 기른다(민주조선 6.29)

- 평원군 삼원협동농장에서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토끼 기르기에 힘을 넣어 마리수를 늘리고 있음.
- 농장에서는 모든 작업반과 농가에서 토끼우리를 잘 건설하고 우량품종의 종자를 확보하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자체로 먹이원천을 적극 탐구하고 품종별 특성에 맞게 토끼 사육관리를 잘하고 있음. 그리고 많은 새끼토끼를 받아내어 농장원 세대들에 나누어주고 있음.
- 토끼기르기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농장에서는 계절별에 따라 수의방역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음.

□ 닭

○ 공업적 방법으로 대용먹이를 생산(민주조선 4.23)

- 김정일은 “닭공장에서 먹이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함.
- 전문가들은 닭의 배설물로 만든 대용먹이를 닭에게 먹이면 소화흡수율이 높고 다른 첨가제들을 따로 먹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공장에서는 닭의 배설물을 이용한 대용먹이 생산 작업들을 표준조건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설비들을 설계, 제작함.
- 서포닭공장의 새로 꾸려진 생산공정에서는 하루에 여러 톤의 대용먹이가 생산되고 있음. 여기서 생산된 대용먹이는 질이 매우 좋아 닭알생산계획을 110% 이상 넘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알곡먹이도 절약할 수 있게 함.
- 대용먹이 생산공정은 제작원리가 간단하고 지방에 흔한 자재를 이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닭공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음.

□ 오리

○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로동신문 4.24)

- 강계오리공장에서는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꾼들이 먹이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생산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먹이 원천을 마련해 놓음.
- 공장 일꾼들은 이미 마련된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에서 갖는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장에서는 먹이가공 설비를 개조하는 동시에 먹이 공급기를 제작하여 먹이운반과 공급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 부림소

○ 부림소를 많이 길러(로동신문 4.17)

- 덕성군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논밭 정보당 부림소 마리수를 더 늘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일꾼들이 협동농장에 내려가 부림소 관리에서 제기 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있으며 소 품평회와 기술 강습, 경험 토론회 등을 자주 조직하여 농장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직동협동농장은 이신작척의 모범으로 논밭 정보당 부림소 마리수에서 다른 단위보다 앞서고 있음.

○ 부림소를 잘 관리하여 적극 이용(로동신문 4.23)

- 평안북도 도당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의 협의회를 통하여 부림소를 농사에 적극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광산군당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 작업반에 밀폐식 소우리를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부족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천마군당위원회에서는 소의 영양 상태에 맞는 먹이를 보장하는 등 과학기술적으로 부림소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각지 시, 군에서는 소 품평회를 조직하여 부림소 관리를 잘하는 농장일꾼과 관리공을 격려하고 이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부림소관리에 힘을 넣어(민주조선 4.23)

- 철산군 리화협동농장에서는 부림소 품평회를 조직하여 부림소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이 부림소 관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은 조건에서도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부림소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부림소를 많이 길러(로동신문 5.9)

- 금강군 신원협동농장에서는 집집마다 소 기르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리당비서,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사일꾼들이 소기르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달 소품평회를 진행하고 있음.
- 부림소를 많이 기쁨으로써 농장에서는 모든 농사일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었음.

○ 부림소관리에 힘을 넣어(로동신문 6.3)

- 연안군 도남협동농장에서 부림소관리를 잘하여 농사일에 적극 이용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부림소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부림소관리공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부림소관리에 대중을 적극 참가시키는 한편 선진적인 경험을 널리 소개해주어 농장원들이 부림소 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음.

○ 부림소 관리를 잘하자(로동신문 6.10)

- 부림소관리를 잘하는 것은 농촌에서 축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긴장한 노력문제를 해결하고 거름을 많이 받아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축산과 농사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잘 지어야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음. 논밭에 필요한 비료를 제때에 운반하기 위해서는 부림소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농촌에서 소를 많이 기르며 부림소관리에서 성과를 이룩하는가 못하는가는 전적으로 농업부문 일꾼에게 달려 있음. 해당일꾼들은 이신작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축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함.

○ 소마리수를 더욱 늘여(로동신문 6.10)

- 구장군에서는 부림소 마리수를 늘이는 것을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여기고 송아지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 군일꾼들은 부림소 마리수를 늘리는 것을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내세우고 부림소 관리와 송아지 생산 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부림소 마리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부림소관리에 힘을 넣어(민주조선 6.17)

- 온성군 세션협동농장에서는 부림소를 잘 이용하여 많은 일을 해내고 있음.
- 모든 작업반에서는 부림소를 책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축산작업반에서 소의 새끼 낳기률을 높이고 후보소를 잘 키워 작업반에게 보내주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음.
- 농장에서는 수의방역소와의 연계 하에 매 작업반의 부림소에 대한 예방접종날짜를 바로 정해놓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음.

□ 종합축사

○ 축산기지 건설을 다그친다(민주조선 6.1)

- 성천강구역 인민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건설지휘부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건설에서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 건설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동시에 자재보장대책을 적극 세워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건설에서 공법상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이에따라 공사가 시작된지 불과 몇 달 동안에 첫단계로 정한 수백㎡에 달하는 돼지축장과 투끼우리, 먹이가공실이 훌륭히 건설되는 성과가 이룩됨.

- 위원회에서는 이 성과에 토대하여 다음단계로 정한 돼지비육사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음.

○ 구봉령에 축산기지가 일어선다(로동신문 7.2)

- 2,000여 정보의 부지에 건설되는 강계목장은 1,000여 정보에 달하는 풀판을 조성하여 집짐승 기르기에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산기지임.
- 구봉령의 백두골, 새골, 령골, 물방아골을 비롯하여 전망이 좋은 골짜기에 각종 집짐승우리와 먹이창고, 먹이가공공장, 종업원을 위한 살림집을 갖춘 분장이 들어서고 있음. 또한 고기 및 젓 가공장, 먹이 가공장, 먹이창고, 클로렐라 배양장 또한 들어서고 있음.
- 목장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 각종 집짐승우리, 먹이가공기지, 살림집의 내부공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지대정리, 동력선 공사를 마감단계에 들어서게 하고 있음.
- 목장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서는데 맞게 도안의 공장, 기업소에서는 목장의 먹이가공기지에서 이용할 분쇄기, 제분기, 성형기를 제작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6. 농업기반

- 평안남도 잠진-대보물길 1단계 공사가 끝나고 통수가 시작되었으며, 미루벌 물길 공사 지원을 통하여 여러 개의 물길굴을 완공하였음. 토지정리사업을 통해 씨불임(파종)면적을 늘려서 강냉이 영양단지모, 들깨, 콩모를 옮겨 심고 있음. 큰물피해를 막고 강하천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위해 이용하기 위하여 강하천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각 도에서는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산림조성, 도로건설, 도로보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물보장 사업이 추진되어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음.

□ 물길공사

- 미루벌 물길공사를 적극 지원(민주조선 4.27)

- 얼마 전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각 시 군당위원회와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책임일꾼들이 전동기, 양수기, 레루, 비닐박막, 용접봉 등 설비, 자재와 부식물, 문화생활 용품을 10여대의 화물 자동차에 싣고 현장에 찾아와 건설자에게 넘겨줌.
- 안주시, 성천군, 평성시를 비롯한 다른 시, 군의 일꾼과 근로자도 미루벌을 현대적인 알곡기지로 꾸리는데 이바지할 마음으로 물길공사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펼치고 있음.
- 개천시대대, 신양군대대를 비롯한 평안남도려단 건설자 가정에서도 지원물자를 공장으로 계속 보내고 있음.

- 1,400여 정보의 논에 단물이 흘러든다(로동신문 5.28)

- 김정일은 “우리는 자연을 개조하여 하나의 창조물을 건설하여 오늘뿐 아니라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함.
- 평안남도에서 잠진-대보물길 1단계 공사를 기본적으로 완공하고 첫 통수를 보장하였음.

그리하여 여러 협동농장의 1,400여 정보에 달하는 논에 자연흐름식 관개가 실현됨으로써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됨.

- 도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진행되는 잠진-대보물길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강서군을 비롯한 여러 군안의 수천정보의 논과 밭에 자연흐름식으로 관개용수를 보장할 수 있게 됨.

○ 하루 수백정미의 관개용수 공급(민주조선 6.7)

- 김정일은 “농사는 곧 물이고 물은 농사다. 식물을 다루는 농사는 물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함.
- 평안남도과 평안북도, 개천-태성호, 백마-철산 물길관리소 일꾼과 근로자들은 대규모자연흐름식 관개 체계가 보다 큰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평안남도에서는 개천-태성호 물길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잠진-대보지선 물길 1단계 공사를 기본적으로 완공하고 첫 통수를 보장하였음. 그리하여 강서군 덕흥, 삼묘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에서 물을 풍족히 쓰면서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지역의 양수장에서 쓰던 많은 양수설비와 전기를 절약하게 되었음.
- 평안남도 염주군의 일꾼들도 백마-철산물길을 이용하기 위한 지선물길과 여러 대상의 구조물공사를 짧은 기간에 진행함으로써 수백 정보의 논에 물을 넉넉히 대고 있음.
- 평원지구, 기양지구 관개관리소를 비롯한 개천-태성호 물길 관리소 안의 일꾼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관개시설의 보수정비사업을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에 질적으로 준비해 놓았음.
- 백마-철산물길관리소에서도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에 따라 벼모내기 마감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협동농장에 물공급을 정상화하고 있음.

○ 물길굴 뚫기에서 연일 혁신(민주조선 6.8)

- 김정일은 “미루벌에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함.
- 려단일꾼과 건설자들은 지난 기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이미 1천 수백 m의 작업갱을 건설한 것을 비롯하여 수천 m에 달하는 구간에서 굴뚝기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이러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물길굴을 짧은 기간에 완공할 목표 하에 그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 혁신은 물길굴 콘크리트치기에서도 일어나고 있음. 고원군대대 건설자들은 과제를 앞

당겨 수행한 기세를 타고 다른 단위를 도와 콘크리트치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신포시대대, 홍원군대대의 건설자들도 휘틀준비와 건설자재확보를 보장하여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자연흐름식 수도와 훌륭히 실현(로동신문 7.13)

- 벽성군에서 자연흐름식 수도화공사를 완공함. 그리하여 읍지구의 수천세대 주민에게 수질이 좋은 먹는 물을 원만히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공사기간 동안 군의 일꾼들은 주민들 속에 들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가 내부에 비 탐구동원사업에 힘을 집중하였음. 온 군의 관심과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자연흐름식 수도화공사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어 전력을 쓰지 않고도 모든 살림집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토지정리

○ 토지정리된 땅에 첫 모를(민주조선 5.29)

- 토지정리된 호암협동농장에서 모내기가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음.
- 이곳 농장에서는 토지 정리된 땅에서 첫해부터 높은 알곡소출을 낼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또한 트랙터와 부림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씨레치기를 한주일 이상 앞세워 흙 양금이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모내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제3작업반원들은 포전별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모판관리에 계속 힘을 넣어 실한 벼모를 길러내고 있으며 제5작업반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170여 정보의 씨불임면적을 더 늘리다(민주조선 6.8)

- 김정일은 “농민들은 지금 있는 토지를 한치도 묵이지 말고 다 경작해야 한다”고 말함.
- 룡천군에서는 길썩고 밭쳐둑, 공공건물 주변 등 사람의 눈길이 적게 미치던 땅을 이용하여 씨불임면적을 170여 정보 정도 더 늘림.

- 쌍룡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씨불임면적을 늘리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빈땅을 모조리 찾아 곡식을 심을 준비를 빈틈없이 항 강냉이 영양단지모와 들깨, 콩모 옮겨심기를 빠르게 끝냈음.
- 씨불임면적을 늘리기 위한 사업은 장산협동농장에서도 추진되고 있음. 이곳 농장에서는 이미 준비해놓은 유기질거름을 충분히 내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씨불임을 제때에 하고 있음.

□ 국토관리사업

- 강하천관리사업을 실속 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민주조선 4.20)
 - 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맞이하여 나라 곳곳에서 치산치수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강하천관리사업이란 강하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큰물 피해를 막고 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강하천을 정리하고 보호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감독, 통제를 하는 사업을 말함.
 - 강하천정리를 잘해야 큰물피해를 막고 강하천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하천의 면모를 규모 있고 알뜰하게 꾸밀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강바닥파기, 물길바로잡기, 동뚝쌓기, 강하천보호, 강기슭보호시설물 건설, 사방야계공사를 잘해야 함.
- 단계별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로동신문 4.23)
 - 강원도에서는 올해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있음.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산림조성과 도로, 강하천정리 등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11,120정보의 산림을 새로 조성하기 위하여 각 시, 군에서는 혼성림, 땔나무림, 기름나무림, 제지림의 건설 및 나무심기와 나무모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도로관리사업에서는 지난해 큰물 피해로 파괴되었던 135,800m의 도로와 80개의 다리, 수통, 옹벽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문천시와 천내, 이천, 철원, 세포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는 도로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평양-원산 관광도로, 원산-고성도로에 대한 보수사업도 진행되고 있음. 또한 원산시, 문천시, 천내군에서는 도로포장공사가 실시되고 있음.

- 안변, 고산, 고성군을 비롯한 군에서는 중소하천바닥파기와 제방돌입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강하천들을 번듯하게(민주조선 5.2)

- 김정일은 “강하천 관리사업을 잘해야 큰물피해를 미리 막고 토지와 도시, 마을, 공장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부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함.
- 신원군에서는 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재령강과 백활천, 당동천을 비롯하여 군안의 모든 강하천을 짧은 기간에 규모 있게 정리할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운양리와 월당, 수원리에서 진행되는 하천정리사업에 참가한 군안의 일꾼들은 자신들이 맡은 백활천과 당동천의 2,000m 구간에서 물줄기를 곧추 펴면서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수백㎡의 면적에 장석까지 입혀 한천을 정리하여 수많은 토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령강 정리를 맡은 군급기관에서는 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연 2,500m의 구간에서 물줄기를 곧추 펴고 강바닥을 파내며 수천 ㎡의 막돌과 장석을 입혀야 하는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있음.

○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고 풍치수려하게 꾸릴 한마음 안고(민주조선 5.3)

- 전국 각지에서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개천시에서는 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앞당겨 끝냈으며 나무모 키우기를 전망성 있게 내밀어온 벽성군, 신천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수백 정보의 면적에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음.
- 사리원시에서는 도로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은 것을 비롯하여 거리, 마을, 유원지 등을 더 잘꾸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리원군에서는 군중적 사업으로 강바닥파기와 제방보수를 진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 함경북도에서는 수십km의 도로구간에 석축공사를 끝냈으며 자강도, 양강도에서는 도시, 마을의 모습이 날로 변모하고 있음.

○ 봄철 국토관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민주조선 5.4)

- 초산군에서는 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 도로건설 등 국토관리계획을 세우고 군안의 모든 일꾼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들은 수십 리 구간의 높아진 강바닥을 파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강바닥을 번듯하게 정리하는 동시에 제방도 쌓아 강하천을 정리하고 있음.
- 군에서는 또한 봄철나무심기를 다그쳐 수백 정보에 잣나무, 이팝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도록 하고 있음.

○ 강하천정리를 힘있게(민주조선 5.4)

- 양덕군에서는 2년째 연이어 들이닥친 폭우와 큰물 피해로 인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강안복구와 정리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군에서는 이미 수십리 구간의 강바닥을 파내고 물줄기 바로잡기와 동뚝쌓기, 돌과 잔디 심기를 통하여 강하천 정리를 실시하고 있음.
- 군안의 일꾼, 근로자는 강안돌쌓기를 비롯하여 강안정리사업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음.

○ 하천제방공사를 질적으로(민주조선 5.14)

- 김정일은 “강하천 관리사업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강하천 정리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태탄군인민위원회에서는 올해 국토관리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올릴 목표 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시공일꾼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정리해야 할 구간을 재확인하고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있음.
- 이를 기초로 군안의 기관, 기업소 등 모든 단위에서 일을 정확히 분담하여 바닥파기와 제방쌓기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대동강 강안정리 2단계공사를 힘 있게 추진(민주조선 5.15)

- 공사지휘부에서는 역량을 집중하여 대동강 강안정리 2단계 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음.
- 자재보장사업에 선차적임 힘을 넣어 시멘트를 비롯한 자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도 계획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대동강 강안정리 2단계 공사장마다에서 혁신이 일어나 대동강 강안이 날이 갈수록 훌륭히 변모되고 있음.

○ 강하천 정리사업 힘 있게 전개(민주조선 5.28)

- 각지에서 강하천 정리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대동강호안공사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도의 강하천들이 더욱 변모되고 있음.
- 북천군에서는 철길주변의 강하천을 정리하였으며 영광군에서는 성천강제방공사를 완전히 끝냈음. 려원군에서는 청산천을 비롯한 하천에 대한 제방공사를 실시하여 수천 세대의 살림집과 수십정보의 농경지를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 국토관리사업을 잘하고 있는 송화군, 안악군 등 황해남도 안의 군에서는 중소하천에 대한 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하여 하천의 면모를 일신시킴.
- 순천시, 은산군에서는 노동력과 각종 기계,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여러 하천의 제방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큰물피해를 받지 않고 농사를 보다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함.

□ 저수지

○ 자체의 힘으로 저수지 건설(로동신문 4.28)

- 봉천군에서는 1년도 못되는 기간에 저수지 건설을 완공하여 주담, 가동, 웅촌 협동농장의 방대한 면적의 논밭에 자연흐름식으로 생명수를 보장하고 있음.
- 이 저수지 건설은 38,000m³의 흙과 1,800m³의 암반을 처리해야 하고 많은 면적에 장석쌓기를 해야 하는 동시에 방대한 양의 콘크리트 치기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였음.
-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이 없음을 인식한 기관, 기업소 일꾼, 근로자가 저수지 건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기 때문에 이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었음.

○ 관개용 저수지를 새로 건설(로동신문 6.28)

- 강동군 룡흥리에 한개의 협동농장의 논과 밭을 충분히 적실 수 있는 관개용 저수지가 새로 건설되었음. 이로써 20여리 밖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4대의 양수기가 필요없게 된 것은 물론 15-20분이면 룡흥협동농장의 드넓은 논과 밭에 물이 흘러들 수 있게 되었음.

□ 물보장사업

○ 물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로동신문 5.17)

- 김정일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함.
- 숙천군 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군 안의 모든 물길과 구조물, 양수동력설비를 전부 보수할 목표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평남 관개물길정리공사를 맡은 군 안의 농업근로자들은 10여 km에 달하는 물길바닥을 말끔히 청소하고 넓은 면적의 제방에 돌을 입혀 제방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물통과능력을 높이는 성과를 이룩함.
- 또한 홍요, 신평, 금평, 련화, 약전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수십 km 구간의 물길을 정리하여 그 어떤 큰물에도 끄덕없게 해놓았음.
- 백암지구 물길공사를 담당한 농업근로자,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도 짧은 기간에 많은 작업량을 소화하여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음.

○ 물공급사업을 책임적으로(민주조선 5.23)

- 김일성은 “물관리사업을 잘해야 한다. 물관리는 농촌경리의 생산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함.
- 평남관개관리소에서는 연풍호의 물이 평남관개물길을 따라 거침없이 흘러 열두삼천리별의 논을 고루 적시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음.
- 물공급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수리작업반원들은 알곡생산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난관을 극복하며 필요한 부속품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고 있음.
- 관리소에서는 이와 더불어 양수장의 가동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면서 해당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물공급사업을 해나가고 있음.

7. 산 림

-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 하에 수백 정보의 산림을 새로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전국 각지에서 나무심기 운동을 벌리고 있음. 또한 나무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바람피해, 병해충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산림조성 못지않게 산림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산림보호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방야계공사와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산림조성

○ 수만 정보의 수유나무림 조성(로동신문 4.23)

- 최근 몇 년간 각지에 수만정보의 수유나무림이 조성되었음.
- 서흥군에서는 수유나무 심기를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세웠으며 이에 따라 군에서는 해마다 나무모 생산을 늘리는데 힘썼으며 노동자, 사무원, 학생들은 수유나무를 심는데 온 노력을 기울였음.
- 은파, 연탄, 린산, 봉산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에서도 수유나무모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일고 있음.
- 황해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도, 시, 군들에서도 수유나무를 전문으로 심고 관리하는 사업소를 조직하는 등 수유나무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봄철 나무심기에 힘을 넣어(로동신문 4.29)

- 초산군에서는 군산림경영소의 양묘장과 협동농장 산리용반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도록 하고 모든 공장, 기업소, 농촌에서 나무심기를 하도록 격려하고 있음.
- 군급기관과 공장, 기업소의 노동자들은 은행나무, 전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기 시작하여 열흘 동안에만도 수많은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둬.

- 초산직물공장, 초산창호지 공장에서는 봄철나무심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양토, 련풍협동농장에서는 산리용반의 양묘장에서 키워낸 나무모를 주변산에 질적으로 심고 있음.

○ 1만 1,600여 정보의 산림을 새로 조성(민주조선 5.15)

- 평안북도에서는 봄철 나무심기 기간에 11,600여 정보의 산림을 새로 조성함.
- 도 당위원회에서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대중 속이 깊이 새기는 한편 봄철나무심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나무모생산과 보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조림구역 선정, 나무심기,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음.
- 나무심기에는 박천군, 향산군, 태천군, 구장군이 앞장서고 있음.

○ 나무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민주조선 6.11)

- 김정일은 “산림을 잘 조성하고 보호관리해야 산림자원을 끊임없이 늘려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 수 있으며 토지를 보호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말함.
- 산림조성사업은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림보호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나무심기와 그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야 함.
- 나무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나무모를 심을 때 필요한 과학기술적 요구를 잘 지켜야 하며, 나무모를 심은 다음에는 성장에 지장을 주는 주변의 떨기나무와 풀을 적당히 베주어야 함. 또한 바람피해와 병해충 피해방지대책도 잘 세워야 함.

○ 산마다 푸른 숲 우거지게(민주조선 7.2)

- 김정일은 “산림을 잘 조성하고 보호관리해야 산림자원을 끊임없이 늘려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 수 있으며 토지를 보호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말함.
- 우시군인민위원회에서는 올해 군안의 중요산림지구에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 올해 봄철나무 심기 기간에만도 읍지구와 북상리, 부흥리지구에서 1,000여 정보의 면적에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둠.

- 위원회에서는 새로 조성한 임지에 대한 단계별 김매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군 안의 공장, 기업소에서 맡은 임지에 대한 김매기와 나무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올해에 들어와 읍지구에 20여 정보의 나무모 생산기지를 새로 꾸린데 맞게 현재 자라고 있는 잣나무, 이깔나무, 분홍꽃 아카시아 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에 대한 거름주기와 관리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산림보호

○ 산불막이 대책을 빈틈없이(민주조선 4.22)

- 성간군에서는 산불을 미리 막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산불막이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산림 감독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고 있음.
- 산림감독원은 자기가 담당한 지역에서 산불이 날 수 있는 곳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산불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외중지구, 백암지구, 무선지구, 무채지구의 산림감독원들이 산불감시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안의 주민들 또한 산불을 막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로동신문 5.21)

- 올해 봄철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에 12만여 정보의 면적이 수억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었음.
-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밑천임. 울창한 산림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리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음. 또한 다 자란 나무는 목재로서의 가치를 제외하고서도 대기오염을 막아주고 토지를 보호해주며 물을 저축하고 식료품, 의약품원료를 제공해주는 등 많은 이득을 가져다줌.
- 오늘날 세계적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해마다 수백만 ha의 산림이 남벌과 산불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파괴되고 있음. 나무는 농작물과 달라 보호사업을 소홀히 하여 산림이 한번 피해를 입으면 수십 년이 걸려야 복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산림보호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 있게 벌려야 함.

○ 산림보호사업을 군중적으로(로동신문 5.21)

- 김정일은 “산림을 잘 보호하는 것은 산림조성사업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함.
- 연탄군에서는 산이 많은 군의 실정에 맞게 산림보호 관리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산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모든 일꾼과 근로자, 학생들이 산림보호 관리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음.
- 창매, 신흥, 오봉지구에서는 나무 심는 것과 동시에 산림보호 관리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창매, 신흥, 오봉지구에서는 한그루의 나무도 병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산림감독원들은 산림보호 관리사업이 산림조성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매일 높고 낮은 산봉우리와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산불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산림보호사업을 군중적으로 활발히(민주조선 5.23)

- 김정일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과 함께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함.
- 신천군 인민위원회에서는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새로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해마다 많은 면적의 산림이 조성되는데 맞게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사업을 군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새로 심은 나무에 대한 물주기와 잡풀 뽑기를 비롯한 나무관리사업 정형에 대한 장악과 총화평가사업도 적극 따라세워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또한 근로자들에게 산림보호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켜 산림보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 또한 무더기비와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할 수 있게 사방야계 공사와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사업도 계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음.

○ 산림보호는 숭고한 애국사업(로동신문 6.2)

-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밑천임. 그런만큼 산림자원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짐.

- 산림보호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인민이 산림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교양사업을 실시해야 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산림보호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실시해야 함.
- 또한 산림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야 함. 산림지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범, 주민들이 산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규범, 나무를 베어 쓸 때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잘 지켜야 함.
- 주민들의 땀감문제를 풀어주는 것 또한 산림보호사업을 잘해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와 산림경영부문에서는 땀나무림 조성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도록 해야 함.

○ 산림보호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로동신문 6.28)

- 새로 심은 나무를 잘 보호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은 후 3-5년 동안 김매기 작업을 해야 함. 나무를 심은 첫해에는 나무 주변의 흙을 회로 잘 매주며 그 다음 해에는 풀이나 잡관목을 뽑아주는 방법으로 김매기를 해야 함.
- 산림을 보호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을 미리 막는 것임. 산에 갈 때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하며 산속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함.
- 또한 산림병해충 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산림병해충 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함. 식물성 농약, 약 뿌리기 설비를 최대한 보장, 이용하여 병해충 피해를 막아내야 함.

□ 통나무생산

○ 통나무 나르기에서 혁신(민주조선 5.25)

- 김정일은 “임업부문에서는 때물이 원천을 충분히 마련하며 물길을 정리하고 물동을 든든하게 만들며 때물이의 기간을 늘리고 그 회귀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함.
- 룡림임산사업소에서는 연간 통나무 운반계획의 80% 이상을 수행할 목표 하에 더 많은 때를 띄우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사업소의 일꾼들은 남흥, 도양, 전천에 이르는 물길에 건설해 놓은 물둥과 시설에 대한 보수사업을 진행하여 큰물에 의한 피해를 막고 물낭비를 없애며 항상 빠른 물세를 얻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남흥작업반과 도양작업반에서는 부족한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는 한편 앞선 방법을 받아들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8. 기타 작물

- 과일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과일나무밭 면적을 늘리고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많이 심기 위한 작업이 실시되고 있음. 각지에서는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기후풍토에 맞는 과일품종을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더 많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 비배관리 기술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약초채취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빈 땅을 찾아 약초를 구색에 맞게 심기 위해 분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초밭에 관리공을 배치하여 비배관리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음.

□ 과수

- 키낮은 사과나무를 많이 심고 과일생산을 늘리자(로동신문, 민주조선 4.30)
 - 과수연합총회사 산하 과수농장 간의 사회주의 경쟁을 벌리기 위한 모임이 4월 29일 룡전과수농장에서 진행됨. 이 모임에는 태종수 내각부총리, 강창욱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성일 함경남도 당위원회 비서 및 관련부문 인사들이 참가함.
 - 보고자,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 근로자가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천 정보의 키낮은 사과나무밭 면적을 조성하고 과일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분조, 작업반, 농장간 경쟁을 통하여 과일나무 가지자르기와 열매 숙아주기를 생태학적 특성과 영양상태,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하고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워 과일나무에 물거름을 더 많이 줄 것을 강조함.
 - 더불어 과일농사를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하여 과일나무밭을 규모있게 정리하고 과학연구성과를 생산에 제때 받아들일 것을 권고함. 또한 과수원에 과학적인 과수체계를 도입하고 병해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언급함.
- 120여 정보의 과수원을 새로 조성(로동신문 5.23)
 - 지난 해에 수백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한 강원도 과수연합회사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짧은 기간에 키낮은 사과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120여

정보의 과수원을 새로 조성함으로써 가까운 연간에 과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음.

- 당조직의 지도 밑에 연합회사에서는 이미 마련하여 놓은 과수원을 잘 관리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을 선택하여 과수면적을 더욱 늘리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원산과수농장에서는 과수원 조성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운데 맞게 유기질 비료생산, 실어내기, 구덩이 파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과일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금강과수농장에서는 고산지대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과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불타는 열의를 안고 펼쳐나 많은 면적의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고 있음.

○ 수 천 정보의 과일나무밭 새로 조성(로동신문 5.27)

- 과수연합총회사에서는 과일나무밭 면적을 늘리기 위한 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과일나무모 생산자들은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비배관리를 성실하게 하여 실하게 키워낸 수많은 과일나무모를 과수농장에 보냄.
- 고산과수농장에서는 지난 기간에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에 키낮은 사과나무 발면적을 훨씬 늘림.
- 평양, 온천, 황주 과수농장에서는 새 품종의 특성에 맞게 토양소독과 거름내기를 앞세우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올해 사과나무 심기계획을 성과적으로 끝냄.
- 각지 과수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과일과 늦과일을 배합하여 여러 수종의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과일나무밭 면적이 전국적으로 수백정보 더 늘어남.

○ 과일나무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5.28)

- 황해남도 과수연합총회사 안악과수농장 로암2작업반원들은 올해 높이 세운 과일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할 의지 하에 과일나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포전에 많은 거름을 낸 작업반에서는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일정계획대로 영농공정을 힘 있게 진척시키고 있음. 또한 약파르기와 약뿌리기 등 과일나무 비배관리에서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병해충 예찰사업에 큰 힘을 넣어 과일나무가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모든 과수원을 청춘과원으로(로동신문 5.30)

- 김정일은 “과수업부문에서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과수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함.
- 과수원은 후대에게 넘겨줄 귀중한 재부이며 과수원을 가꾸는 사업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므로 나라의 모든 과수원을 청춘과원으로 만들도록 해야 함.
- 우선 과일나무 수종 및 품종배치를 잘해야 함.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매 지방의 지대적 특성에 맞게 키낮은 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수종과 품종을 배치해야 함.
- 또한 오래된 과일나무를 계획적으로 갱신하고 빈그루를 제때에 보충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과일나무의 나이와 세력상태, 나무모 준비정도,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보장조건 등을 잘 고려해야 함.

○ 키낮은 사과나무밭 면적을 늘린다(로동신문 5.31)

- 김정일은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과일품종을 선택하여 과수원을 조성해야 과일생산을 빨리 늘릴 수 있다”고 말함.
- 과수연합총회사에서는 키낮은 사과나무밭 조성계획을 단계별, 년도별로 높이 세우고 우량품종의 키낮은 사과나무모 생산에 선차적인 힘을 쏟고 있음.
- 각지의 과수묘목농장에서는 키낮은사과나무모 생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는 것과 동시에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모 생산을 부쩍 높이고 있음.
- 봉산, 황주, 온천, 덕성, 삼천과수농장에서 또한 키낮은 사과나무밭 면적을 늘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축산의 덕을 보는 과일농사(로동신문 6.5)

- 김정일은 “축산을 잘하여 과일나무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말함.
- 부평지구에 자리잡은 제3 작업반에서는 해마다 100여 마리의 돼지와 1,000여 마리의 토끼를 생산하여 배설물을 물거름장에 모았다가 포전으로 실어내고 있음. 이렇게 생산한 거름은 과일밭에 정보당 60톤 이상 뿌려지고 있음.
- 작업반원들은 과일농사를 잘하여 인민들에게 사철 과일을 보내줄 수 있도록 자체의 힘으로 물거름 탱크를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 과일나무 가꾸기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6.11)

- 김정일은 “과일나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함.
- 과일나무 영양관리에서 과수밭의 지력을 높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각지 과수농장 일꾼들은 흙보산비료 생산계획을 2배 이상으로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음.
- 또한 자체로 만든 효능 높은 생물농약과 보다 합리적이며 실리적인 약뿌리기 방법의 도입을 통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룡전, 안악, 사리원, 허천 과수농장에서는 여름가지 자르기와 열매 숙아주기를 나무의 생태학적 특성과 영양 상태에 맞게 실속 있게 하고 있음.

○ 과일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민주조선 6.28)

- 황주과수농장에서는 과일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다수확품종의 올과일나무에서 더 많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 비배관리 기술 규정의 요구를 준수하고 있음.
- 일꾼들은 과일나무의 수세에 맞게 덧거름을 충분히 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모든 원천을 동원하여 생산한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과일나무에 충분히 주고 있음.

○ 수백만 개의 사과열매에 종이봉지를(민주조선 7.12)

- 김정일은 “과일나무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함.
-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과일마다에 종이봉지를 정성껏 씌움으로써 과일나무 비배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보다 높이고 생산되는 과일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음.
- 하나의 가지에 달린 열매라고 해도 종이에 씌운 것과 씌우지 않은 것 사이에는 색과 맛 등에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음. 뿐만 아니라 열매에 종이봉지를 씌우면 과일나무 비배관리에 이용되는 농약이 씌우지 않았을 때보다 30-40% 정도 절약됨.
- 고산과수농장에서는 수백만 개의 종이봉지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씌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분장에서는 자재확보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부족한 양을 제때에 보충해주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이와 함께 과일나무 비배관리

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겹쳐서 진행되는데 맞게 작업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모든 일을 적기에 질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버섯

○ 버섯재배기술을 높이기 위해(민주조선 5.11)

- 함경북도인민위원회에서는 버섯재배기술 보급사업소를 건설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건물 건설이 끝난 것에 맞추어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상업관리국에서는 제품창고를 완비하고 냉동기와 재배실 덕대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구계획국, 과학기술국을 비롯한 여러 국, 처에서도 사업소를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도 버섯재배기술 보급사업소에는 버섯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가고 있음.

○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더 많이(민주조선 5.21)

- 북창버섯공장에서는 버섯생산 공정을 새롭게 꾸리고 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생산을 늘릴 대담한 목표를 세웠음. 이에 맞춰 이미 있던 협소한 건물의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시켜 능률적인 버섯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장에서는 배양공, 재배공의 기술 기능 수준을 한층 높이고, 버섯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기술지도를 심화시켜 버섯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공장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 덕을 보는 버섯생산기지(로동신문 6.9)

- 김정일은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북창버섯공장에서는 기존의 건물을 개건하고 버섯생산공정을 새롭게 꾸릴 뿐만 아니라 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버섯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짧은 기간 안에 배합실과 멸균실, 종균배양실과 재배실을 장만하였으며 작업반원들이 설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산능력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버섯생산을 지대적 특성에 맞게(로동신문 6.16)

- 신평군에서는 큰 버섯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김정일은 “버섯은 온도와 습도를 잘 보장하고 공기 갈이를 잘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재배할 수 있다”고 말함.
- 버섯공장 건설을 막상 시작하고 보니 부족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군당책임일꾼을 비롯한 군의 일군들이 화선식 정치사업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버섯공장 안에는 소독실, 접종실, 종균 배양실, 여러 칸의 버섯 재배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버섯공장에서는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쌀겨를 전혀 쓰지 않고 강냉이 짚과 강냉이 송치, 콩짚, 집집송배설물 등 원가가 적게 드는 지방원료를 사용하여 버섯을 재배할 수 있음.

□ 약초

○ 더 많은 약초를 심고 가꾸자(로동신문 4.22)

- 김정일은 “약초를 널리 재배하는 것과 함께 약초 채취 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적극 벌려 약초자원 보호사업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함.
- 4, 5월은 약초재배 월간으로 지금 일꾼, 근로자들은 한포기의 약초, 한그루의 약나무라도 더 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약초는 알곡작물과 달리 그 종류가 매우 많음. 기후조건과 토양성분에 따라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몇 개의 전문약초 생산단위나 해당부문의 힘만으로는 약초재배를 원만히 할 수 없음. 따라서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재배해야 함.
- 공장, 기업소, 학교, 인민반에서는 빈 땅을 모조리 찾아내어 효능 높은 약초와 약나무들을 많이 심어야 하며, 약초채취사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함. 그래야 소출을 늘리고 약효능도 높일 수 있음.

○ 약초채취와 재배사업을 군중적으로 힘있게(민주조선 5.11)

- 김정일은 “약초를 널리 재배하는 것과 함께 약초 채취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적극 벌려야 하며 동시에 약초자원 보호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함.
- 정평군 인민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약초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보건 부문을 비롯한 군 안의 해당 단위에 약초 생산과제를 명확히 제시하였음.
- 인민위원회 일꾼들은 현지에 내려가 제기된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고 있음. 특히 룰성리 인민병원에 내려간 일꾼들은 병원 종업원들과 함께 감초, 도라지, 울무, 단너삼을 비롯한 약초를 채취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더 많은 약초, 약나무 심기에도 착수하여 군안의 학교, 협동농장에서는 약초, 약나무모를 심기 시작하였음.

○ 약초심기와 비배관리에 큰 힘을(민주조선 5.27)

- 김정일은 “이르는 곳마다에 고려약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단너삼, 만삼, 두충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초를 많이 심어 고려약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함.
- 회령시인민위원회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고려약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습정보의 면적에 대한 약초심기를 적기를 놓치지 않고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약초를 구색에 맞게 심기 위해 분업한 것에 기초하여 보건일꾼들이 봄철약초재배 월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의약품관리소에서는 봄철약초 재배월간에 수많은 면적에 약용나무와 결명자, 도라지, 당귀 등 많은 약초를 심어 치료예방사업에 필요한 고려약을 자체로 보장할 것을 결심하고 종업원들이 약초를 심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음.
- 시 안의 보건기관에서는 약초밭에 물도랑을 깊숙이 파고 책임 있는 관리공을 배치하는 등 비배관리를 착실히 하여 심어놓은 약초들이 잘 자라도록 하고 있음.

9. 기타 보도 동향

- 농업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내부예비의 동원을 통해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이용률과 가동률을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농기계수리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침땅의 지력이 높아야 함. 이를 위해 각 협동농장들에서 단계별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실시하여 생물활성퇴비, 휴보산비료의 높은 생산을 보장하고 있음. 각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장마를 통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농기계

- 농기계 생산과 수리정비를 자체의 힘으로(민주조선 4.20)
 - 금야군 농기계 작업소에서는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에 의거하여 수십 종, 수천 개의 부속품을 생산 및 재생하여 240여대의 트랙터를 수리정비하였으며, 능률 높은 농기계를 생산하였음.
 - 이를 위해 노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파주철을 비롯한 부속품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자체로 마련하기 위하여 고군분투 하였음.
- 질 좋은 트랙터를 생산(민주조선 4.24)
 - 최근 신의주트랙터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질이 높은 것으로 호평받고 있음.
 - 신의주 공장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트랙터 생산공정을 새롭게 세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으며, 도농촌경리위원회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생산공정을 보충완비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음.
 - 공장의 일꾼, 노동자들은 짧은 기간에 강선처리기와 2단식 가루기, 성형기들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트랙터 생산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에 기초하여 공장에서는 모든 설비를 만가동하여 농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규격의 트랙터를 생산해내고 있음.

○ 자체의 힘과 기술로(민주조선 5.1)

- 해산 탐사기계수리공장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 하에 공장의 설비개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장에서는 생산설비를 개조하여 시험생산에서 성공한데 이어 프레스, 선반, 못기계를 비롯한 공장의 기존 생산공장을 실용성 있게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해나가고 있음.
- 또한 철판가공설비, 판생산설비, 용접봉생산설비, 철판못생산기계를 능률적으로 개조하여 맡겨진 탐사기계수리를 제때에 하면서 부속품, 기공구생산을 늘리도록 하고 있음.

○ 성과를 내는 농기계 이동수리(로동신문 5.5)

- 김정일은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이용률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리정비사업도 잘해야 한다”고 말함.
- 군농기계 작업소에서는 농기계를 제때에 수리해주기 위하여 이동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미리 준비해놓고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또한 이동수리를 기동적으로 진행하여 트랙터를 제때에 수리하여 농사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모내는기계를 만가동시켜(로동신문 5.22)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리려면 담당자들인 농업부문 일꾼과 농장원이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에서는 대용연료로 모내는기계를 만가동시켜 해마다 3톤 이상의 기름을 절약하면서도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이루고 있음.
- 농장일꾼들은 모내기 성과가 오를수록 모내는기계 운전공들을 자주 만나 제기되는 문제를 알아보며 모내기 전투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음.

○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여(로동신문 5.25)

- 김정일은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와다닥 끝내야 한다”고 말함.
- 안변군에서는 논벼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튼튼하고 실한 모를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트랙터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포전별, 날짜별 계획대로 씨레치기를 해나가고 있음.
- 비산협동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을 모판관리공으로 배치하여 벼모를 실하게 키운데 맞게 역량을 총집중하여 모내기시작부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신화, 상음협동농장에서는 마른논 씨레치기를 비롯한 합리적인 씨레치기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모내는 기계의 수리정비를 기동적으로 진행하여 모내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 성과를 내는 현장수리(로동신문 5.29)

- 김정일은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이용률과 가동률을 높이자면 그에 대한 수리정비 사업도 잘해야 한다”고 말함.
- 연안군 오현협동농장에서는 현장수리조를 조직하여 고장난 모내기기계를 현장에서 즉시 고쳐주어 모내기를 일정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유능한 기능공을 더 보충해주기도 하고 전체적 의견을 모아 도와주기도 하는 등 여러 면에서 도와주고 있음. 이와 더불어 작업반에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필요한 부속품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현장수리는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농장의 모내기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음.

○ 성과를 내는 농기계(민주조선 6.4)

-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앞장선 운하협동농장이 올해 모내기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운하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에 동원되는 농기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많은 면적에 모를 내고 있음.
- 작업반원들은 집체적 지혜와 힘을 모아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필요한 부속품을 해결하고 있음.

○ 능률 높은 탈곡기 생산을 힘 있게(로동신문 6.9)

- 김정일은 “기술혁신을 하여 좋은 기계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함.
- 락랑구역 농기구공장에서는 앞그루작물 가을걷이에 맞추어 능률이 높은 탈곡기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장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앞그루작물을 빨리 거두어들이는 것과 함께 낱알털기를 제때에 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공장의 일꾼들은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있음.
- 또한 해당 기관과의 긴밀한 관련 하에 부족한 자재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일꾼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유희자재를 모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비료

○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에서 생산 시작(로동신문 4.28)

- 황해북도 안의 많은 시, 군에서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을 세우고 생산을 시작하였음. 수안군과 름산군, 곡산군, 황주군, 송림시와 장풍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에서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유기질 복합 비료공장을 세우고 생산에 들어감.
- 황해북도에서는 토양의 침식과 환경오염을 막고 부식질 함량을 높여주는 것과 더불어 안전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유기질 복합비료의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여 이를 추진해나가고 있음.
- 수안군, 름산군에서는 군의 역량을 집중하여 공장건물 건설과 생산설비 제작 설치를 짧은 기간에 완수하였으며 곡산군에서는 자체의 토양조건에 맞는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준비를 완료하고 생산을 시작함. 황주군에서는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설비를 만들어 각 협동농장에 보내어 농촌에서 자체로 비료를 생산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로동신문 5.11)

- 평안북도에서는 자체로 농사짓기 위하여 농촌 당조직이 적극 발동하여 예년에 없이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논밭에 실어내게 하고 있음. 또한 모든 협동농장에서 정보당 5톤 이상씩 낼 수 있는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마련하도록 함.
- 이것에 그치지 않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 해에 유기질비료를 논밭에 많이 내어

덕을 본 곡산군 월옥, 정주시 성남협동농장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음. 동시에 농업근로자를 조직 동원하여 실정에 맞게 니탄도 캐고 부식토도 마련하여 흙보산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제때에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운하협동농장에서는 정보당 질 좋은 거름 20톤 이상, 흙보산비료 19톤 이상을 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모든 협동농장에서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논밭에 실어내고 있음.

○ 성과를 내는 흙보산비료 생산기지(로동신문 5.25)

- 김정일은 “농업부문 일꾼과 농장원들은 농사를 잘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기어이 풀겠다는 각오와 주인다운 자각을 지니고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함.
- 회령시 금생협동농장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이지만 흙보산비료 생산기지를 꾸려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음.
- 금생협동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를 일정한 형태로 빗을 수 있는 기계장치를 창안하여 농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음.

○ 감자산지에 더 많은 유기질 비료를(로동신문 6.7)

- 김정일은 “감자농사를 잘하자면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밭에 내야 한다”고 말함.
- 량강도에서는 올해에 감자농사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감자심기가 끝난 조건에 맞게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내기 위해노력하고 있음.
- 도에서는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제시 10돌을 기념하여 올해 감자농사에서 유기질비료생산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해설하며 일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음. 시, 군의 당, 행정, 근로단체 일꾼과 직외 강연강사, 기관, 공장, 기업소, 인민반에서 또한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선동사업을 벌리고 있음.
- 대흥단군에서는 모든 단위에 유기질비료 생산과제를 정확히 주고 빠른 기간에 집중적으로 끝내기 위해 노력하여 제일 먼저 계획된 전량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함.
- 혜산시에서 유기질비료생산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삼수군에서는 계획된 양의 유기질비료생산 마감단계에 들어서고 있음. 갑산군에서는 일꾼들이 현지에 나가 유기질비료 원천을 알아보고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거리가 먼 포전에 먼저 실어내고 있음.

○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로동신문 7.3)

- 평산군에서는 부족한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올해 농사를 성과 있게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농작물의 생육을 좋게 하는 대용비료를 자체로 만들어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군일꾼들은 협동농장작업반에서 석회료를 만들어 대용비료생산을 적극 돕고 있으며 군안의 공장, 기업소에서는 소석회를 많이 생산하여 협동농장에 보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이와 함께 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도 큰 힘을 넣어 군에서는 유기질복합비료 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 청수, 탄교협동농장에서는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많은 대용비료를 생산해내고 있음.

□ **살림집**

○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민주조선 5.1)

- 김정일은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문화적이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정평군에서는 읍지구에 소충살림집을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위원회 일꾼들은 건설 현장에 자주 나가 살림집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건설 전반에 대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블록 찍기, 목재 가공 등 선행 공정들을 앞세워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도록 하고 있음.

○ 온천 살림집이 더 건설된다(민주조선 5.11)

- 명천군 황진 온천지구를 온천치료기지로 만들기 위한 2단계 건설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 지난해 11월에 건축이 시작된 이곳은 25동의 살림집을 더 건설할 목표 하에 지난 3월 말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도에서는 온천살림집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건설지휘부를 조직하였으며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재를 보장하고 있음.

- 매 살림집에는 여러개의 방과 함께 치료실, 부엌, 세면장, 창고 등이 갖춰질 예정임.
- 치료실에는 항상 온천물이 나오는 목욕통이 설치되어 아무때나 온천치료를 마음껏 할 수 있음.

○ 흙보산비료 생산에 계속 큰 힘을(민주조선 5.17)

- 김정일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거름을 많이 내어 수확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추세다”라고 말함.
- 염주군 룡북협동농장에서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이용하여 올해 농사를 짓기로 하여 농사차비 때부터 질 좋은 유기질비료 생산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모든 작업반에서는 이미 마련해놓은 원료를 이용하여 흙보산 비료생산을 늘리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높아지는 흙보산비료더미(민주조선 5.24)

- 김정일은 “유기질비료 문제는 거름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풀 수도 있고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풀 수도 있다”고 말함.
- 지난 기간 농사를 통해 그 우월성이 확증된 흙보산비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농장일꾼과 농장원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흙보산비료 생산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꾼들은 흙보산비료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농장원들에게 잘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직하여 질이 높은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음.
- 농산 1, 3, 5 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 농장원들도 생산시설을 훌륭히 꾸려놓고 한줌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해도 질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장마철대비

○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빈틈없이(로동신문 6.28)

- 김정일은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함.
- 농작물을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전투임. 따라서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장마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함.

- 각지 농촌에서는 장마철에 빗물이 고이는 곳에 고인물 빼기 양수장을 배치하고 알맞은 능력의 양수기를 설치해야 함. 또한 농촌경리부문 일꾼들은 논밭은 물론 자기 지방의 강하천과 물길, 보, 동쪽 등을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장마철에 큰물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미리 장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

○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자(로동신문 6.29)

- 곡산군 룡현협동농장에서는 애써 키워놓은 곡식이 한포기라도 큰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데 큰 힘을 기울이고 있음. 일꾼들은 현지에 나가 큰물과 비바람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포전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해당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농장에서는 강냉이밭 둘레에 물도랑을 깊이 내주어 큰물이 나도 물이 빠질 수 있게 하는 한편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농장의 작업반에서 새끼줄과 말뚝을 예견성 있게 마련하여 한포기의 강냉이도 비바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있음.
- 또한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잘 세운 작업반, 분조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은 만년대계의 애국사업(민주조선 7.3)

-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은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큰물피해를 막자면 치산치수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함.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치산치수사업을 힘 있게 벌려 산에 나무가 무성하게 하고 강하천 정리와 사방야계공사를 잘해 놓게 되면 큰물에 의한 토지의 유실을 방지하고 국토를 보호할 수 있음.
- 또한 도시시설물에 대한 정비보수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하수도망과 우수망에 대한 정비보수사업을 잘해야 함. 또한 갑문과 저수지제방, 해안방조제와 같은 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사업을 진행해야 함.
- 큰물피해는 생산과 건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장마철 생산대책을 세우는 것은 큰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 요구사항임.

○ 한포기의 곡식도 큰물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게(로동신문 7.5)

- 온성군 룡남협동농장에서는 한포기의 농작물도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마철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농장에서는 수백 대의 말장과 3만 5천여 m의 새끼줄을 미리 준비해놓고 강냉이밭에 둘러치기 위한 사업을 앞장서서 하고 있음.
- 또한 강냉이 밭둘레에 물도랑을 깊숙이 파고 어떤 경우에도 즉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가마니를 많이 준비해놓고 있음. 더불어 고인물 빼기에 필요한 설비의 정비를 꼼꼼히 하고 있으며 하천바닥, 물길바닥 파기와 물길뚝 보강을 잘해나가고 있음.

○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빈틈없이(민주조선 7.11)

- 최근 이상기후현상으로 때없이 많은 비가 내려 농업생산과 인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장마철 피해를 철저히 막는데서 중요한 것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직접 떨쳐 나서는 것임. 스스로 농업생산 시설물, 한포기의 곡식도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함.
- 또한 노동력과 수단을 집중해야 함. 김매기를 비롯한 농작물 가꾸기를 일정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노동력과 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함.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대상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일자리를 크게 낼 수 있게 조직사업을 추진해야 함.
- 이와 함께 농작물 비배관리를 잘하여 벼와 강냉이 등 농작물이 비바람에 의해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함.

○ 그 어떤 큰물에도 끄덕 없게(로동신문 7.14)

- 대동강 큰물지휘부에서는 지난해 큰물피해로부터 평양과 대동강 일대의 넓은 지역을 지켜낸 경험을 살려 물관리 지휘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모든 발전소 언제와 갑문, 물빼기 설비와 시설을 정비보강함.
- 특히 대동강 상류에 위치한 물잡이 능력이 큰 발전소 저수지의 수위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조절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저수지와 갑문에서 큰물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력공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였음.
- 동시에 발전소 언제와 갑문의 수문관리를 맡은 단위에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그 어떤 정황에서도 수문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게 비상발동 발전기의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 **현지지도**

○ 김정일,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현지지도(로동신문 6.14)

- 김정일은 농장의 일꾼과 근로자가 관리운영과 노력조직을 조직하고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농사일을 꼼꼼하게 하여 근래에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일은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본 방도는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특히 종자혁명방침 관철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김정일, 평안북도 농업부문사업 현지지도(로동신문 7.10)

- 김정일은 평안북도의 올해 영농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은흥협동농장이 알곡생산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평안북도에서 자체의 힘으로 능력이 큰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훌륭히 건축한 것에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함.
- 이와 동시에 축산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돼지고기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함.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북중 교역 동향
 - 1. 북한의 수입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4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8년 4월 중 남북교역액은 14,424만 달러로 전년 동월 13,286만 달러에 비해 8.6% 증가하였음(전월 15,789만 달러 대비 8.6% 감소)
- 반입은 7,275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4,602만 달러에 비해 58.1% 증가하였음.(전월 7,931만 달러 대비 8.3%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2.1%, 농림수산물 23.8%, 광산물 11.3%, 철강·금속제품 10.6%, 전기전자제품 10.3% 등임.
- 반출은 7,149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684만 달러에 비해 17.7% 감소하였음(전월 7,858만 달러 대비 9.2% 감소)
 -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24.7%, 농림수산물 11.2%, 섬유류 14.9%, 기계류 17.5%, 전기·전자제품 12.9% 등임.

□ 4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8년 4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733만 달러로 전월 1,603만 달러 대비 8.1% 증가하고 4월 전체 반입액 7,275만 달러의 11.2%를 차지했음.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반입 농림수산물: 마늘·표고버섯 등 농산물이 47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6.6%),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1,25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7.2%)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8년 4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801만 달러로 전월 587만 달러 대비 36.5%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대두유 등 농산물이 66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9.3%), 닭고기 등 축산물이 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합판 등 임산물이 7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1%), 어패류 등 수산물이 4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7%)를 차지했음.

□ 5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8년 5월 중 남북교역액은 17,272만 달러로 전년 동월 15,192만 달러에 비해 13.7% 증가하였음(전월 14,424만 달러 대비 19.7% 증가)
- 반입은 7,72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339만 달러에 비해 21.8% 증가하였음(전월 7,275만 달러 대비 6.1%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24.9%, 농림수산물 20.0%, 광산물 10.6%, 철강·금속제품 18.7%, 전기전자제품 11.5% 등임.
- 반출은 9,55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853만 달러에 비해 7.9% 증가하였음(전월 7,149만 달러 대비 33.6%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제품 25.0%, 농림수산물 9.3%, 섬유류 17.2%, 기계류 17.3%, 전기·전자제품 12.0% 등임.

□ 5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8년 5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546만 달러로 전월 1,733만 달러 대비 10.8% 감소하고 5월 전체 반입액 7,721만 달러의 20.0%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기타채소 등 농산물이 43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5.6%),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2,000 달러(전체 반입액의 0.0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1,11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4.5%)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8년 5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886만 달러로 전월 801만 달러 대비 10.6%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박류 등 농산물이 69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7.2%), 닭고기 등 축산물이 1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합판 등 임산물이 14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5%), 어패류 등 수산물이 3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4%)를 차지했음.

□ 6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8년 6월 중 남북교역액은 14,653만 달러로 전년 동월 15,524만 달러에 비해 5.6% 감소하였음(전월 17,272만 달러 대비 15.2% 감소)
- 반입은 6,44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738만 달러에 비해 12.2% 증가하였음(전월 7,721만 달러 대비 16.6%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23.3%, 농림수산물 23.8%, 광산물 13.9%, 철강·금속제품 9.3%, 전기전자제품 13.8% 등임.
- 반출은 8,21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785만 달러에 비해 16.1% 감소하였음(전월 9,550만 달러 대비 14.0%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제품 16.6%, 농림수산물 9.7%, 섬유류 22.5%, 기계류 18.0%, 전기·전자제품 13.4% 등임.

□ 6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8년 6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531만 달러로 전월 1,546만 달러 대비 0.9% 감소하고 6월 전체 반입액 6,440만 달러의 23.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표고버섯 등 농산물이 49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7.7%), 로얄제리 등 축산물이 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1%),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8,000 달러(전체 반입액의 0.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1,03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6.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8년 6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796만 달러로 전월 886만 달러 대비 10.1%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67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8.2%), 분유 등 축산물이 2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합판 등 임산물이 3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5%), 어패류 등 수산물이 5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7%)를 차지했음.

표 1 2008년 4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2,161,439	4,796	6.6	농산물	3,648,669	6,674	9.3
기타곡류	20,800	12		쌀	16,545	31	
강낭콩	61,200	36		옥수수	122	22	
들깨	235,520	367		감자	68,734	154	
기타곡실류	21,495	66		밀가루	120,729	88	
무	47,580	79		사과	77	0	
마늘	592,070	1,391		배	15	0	
기타채소	227,428	297		맹고	343	16	
고사리	27,200	167		오렌지	8,000	46	
죽순	3,852	6		수박	2,020	26	
영지버섯	4,385	23		배추	17,457	27	
표고버섯	134,320	1,086		당근	190	1	
기타버섯류	35,637	251		토마토	160	1	
밤	133,264	123		양파	893	1	
호도	4,000	32		마늘	771,300	1,620	
기타견과류	99,900	59		기타채소	270	11	
식물성액즙	7,140	83		난초	3	0	
된장	86,036	54		기타화초	2,940	5	
훈차	310	1		기타버섯류	520	2	
제조담배	1,057	10		호도	1,479	7	
식물성한약재	198,814	549		기타산식물	61,856	358	
기타주류	5,991	23		대두유	916,000	1,621	
물	199,760	73		박류	1,000,000	578	
기타농산가공품	13,680	7		사료	203,882	148	
				간장	8,654	21	
				된장	42	0	
				거자	2	0	
				기타소스류	989	7	
				커피조제품	101,831	332	
				초코렛	942	55	
				제조담배	8,528	114	
				소주	2,110	5	
				맥주	18,544	18	
				포도주	59	0	
				위스키	3,119	81	
				기타주류	797	8	
				기타당류	25,700	90	
				물	907	3	
				과일주스	470	2	
				비스킷	5,800	11	
				곡류가공품	10,267	32	
				빵	48,460	114	
				면류	103,493	532	
				방파류	50	1	
				기타농산가공품	113,131	457	
				견	1,229	30	
				면	10	0	
축산물	-	-	-	축산물	44,435	97	0.1
				돼지고기	120	0	
				닭고기	20,250	30	
				소시지	798	1	
				우유	10,893	19	
				분유	9,527	43	
				기타낙농품	2,847	3	
임산물	8,143	16	0.01	임산물	630,278	756	1.1
기타목재생활용품	3,600	4		합판	408,123	259	
기타목재류	2,513	5		단판	1,556	14	
기타임산부산물	2,030	7		섬유판	3,790	7	
				건축용목제품	4,000	200	
				목재류	85,527	98	
				기타목재생활용품	11	0	
				기타목재류	45,821	34	
				수목류	80,600	142	
				종자류	850	1	
수산물	5,971,807	12,519	17.2	수산물	225,148	489	0.7
넙치	7,455	61		기타어류	1,656	8	
새우	348,387	2,580		문어	4,990	16	
기타게	64,848	269		낙지	19,968	27	
문어	145,506	282		기타조개	104,880	120	
낙지	60,000	165		김	20	0	
패조개	147,731	387		기타해조류	312	20	
기타조개	3,045,452	3,902		기타수산가공품	93,090	288	
기타연체동물	1,492,582	1,470		기타수산물	232	9	
기타해조류	10,400	16					
건조수산물	121,387	1,132					
기타수산가공품	498,497	1,953					
수산부산물	1,000	3					
기타수산물	28,562	300					
합 계		17,331	23.8	합 계		8,016	11.2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02호(2008.4.1~4.30).

표 2 2008년 5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862,003	4,308	5.6	농산물	4,497,834	6,918	7.2
강낭콩	36,280	24		쌀	15,249	32	
들깨	180,000	275		감자	83,207	197	
두	31,000	40		대두	2,500	5	
마늘	818,350	1,907		녹두	15	0	
기타채소	254,738	500		완두	1,045	2	
고사리	10,600	67		밀가루	291,786	307	
죽순	4,596	6		바나나	805	2	
영지버섯	180	1		오렌지	5,831	43	
표고버섯	77,088	633		수박	35	0	
기타버섯류	31,478	204		기타곡실류	45	2	
밤	55,904	52		당근	430	2	
기타견과류	8,160	5		토마토	1,262	65	
기타식물성유지	260	2		마늘	968,184	2,033	
제조담배	1,259	21		고추	100	1	
식물성한약재	125,946	430		기타채소	11,717	44	
소주	3,657	1		난초	8	0	
기타주류	17,947	27		카네이션	1	0	
물	168,400	30		기타화초	610	2	
음료베이스	23	10		밭	1,096	1	
비스킷	6	0		기타산식물	46,378	51	
면류	17,000	15		대두유	392,876	709	
기타농산가공품	19,132	60		박류	2,000,000	1,156	
				사료	127,495	166	
				간장	37,707	58	
				된장	2,696	6	
				겨자	4	0	
				기타소스류	5,535	14	
				커피조제품	54,354	367	
				초코렛	2,270	42	
				녹차	21,380	136	
				제조담배	13,690	248	
				식물성한약재	4,000	6	
				소주	9,750	15	
				맥주	7,415	7	
				위스키	899	43	
				기타주류	204	1	
				정당	3	0	
				물	1,587	6	
				과일주스	11,268	51	
				사탕	750	15	
				비스킷	11,888	71	
				곡류가공품	24,733	42	
				빵	44,621	162	
				면류	84,726	367	
				기타농산가공품	205,812	393	
				종자류	50	0	
				견	1,819	48	
축산물	-	-	-	축산물	60,539	120	0.1
				돼지고기	430	1	
				소시지	4,725	11	
				기타육류가공품	10	0	
				우유	41,076	57	
				분유	10,080	12	
				기타낙농품	2,861	4	
				모류	1,357	34	
임산물	383	2	0.002	임산물	1,439,281	1,433	1.5
합판	75	0		제재목	10,000	4	
목제장식품상자	8	1		합판	1,170,950	796	
기타목재류	300	0		단판	33,623	99	
				섬유판	2,200	1	
				건축용목제품	5,767	235	
				기타목재류	141,016	177	
				수목류	75,680	119	
				종자류	45	3	
수산물	4,748,884	11,159	14.5	수산물	389,620	397	0.4
넙치	8,415	70		기타어류	15,662	21	
기타어류	8,230	27		새우	9,500	99	
새우	145,126	1,179		김	405	1	
기타게	11,901	13		미역	358,128	238	
문어	56,441	143		기타해조류	660	25	
패조개	26,792	60		기타수산물가공품	5,265	13	
기타조개	1,951,928	2,222					
기타연체동물	1,726,587	1,858					
건조수산물	360,197	3,446					
기타수산물가공품	407,228	1,661					
기타수산물	46,040	481					
합 계		15,469	20.0	합 계		8,868	9.3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03호(2008.5.1~5.31).

표 3 2008년 6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2,813,920	4,928	7.7	농산물	3,808,912	6,722	8.2
대두	400,000	548		쌀	28,720	109	
녹두	398,000	420		감자	90,516	219	
들깨	60,000	91		밀가루	1,459,396	1,185	
마늘	692,960	1,615		오렌지	9,929	69	
기타채소	114,898	193		수박	64	0	
고사리	65,950	476		멜론	15	0	
죽순	7,200	11		무	74	0	
고비	2,560	26		당근	190	1	
표고버섯	96,488	848		양파	661	2	
기타버섯류	14,407	93		마늘	868,030	1,823	
밤	57,000	52		기타채소	10,310	23	
제조담배	1,275	30		기타화조	10,200	23	
식물성환약제	178,513	372		밤	200	0	
소주	24,365	28		기타산식물	7,100	10	
기타주류	2,264	1		대두유	751,680	1,447	
물	679,040	116		사료	180,052	156	
기타농산가공품	19,000	9		간장	13,287	42	
				된장	16	0	
				토마토케첩	1,774	4	
				저자	3	0	
				기타소스류	3,767	12	
				커피조제품	2,568	18	
				초코렛	270	7	
				제조담배	9,717	188	
				인삼류	210	41	
				식물성환약제	120	4	
				소주	4,280	6	
				맥주	13,694	14	
				포도주	60	3	
				위스키	2,154	136	
				기타주류	340	2	
				물	2,180	6	
				음료베이스	620	1	
				과일주스	300	5	
				기타음료	300	0	
				검	15	0	
				사탕	1,078	33	
				비스킷	9,902	18	
				곡류가공품	50,016	41	
				빵	38,127	93	
				면류	74,783	388	
				빙과류	943	5	
				기타농산가공품	161,184	528	
				종자류	67	581	
축산물	33	18	0.01	축산물	124,779	257	0.3
로알제리	33	18		돼지고기	454	1	
				소시지	1,649	5	
				로알제리	140	1	
				우유	46,133	58	
				분유	68,298	151	
				기타낙농품	6,850	9	
				도유	1,255	32	
임산물	6,050	8	0.01	임산물	307,751	395	0.5
합판	450	2		합판	235,805	305	
기타목재류	2,600	4		단판	2,778	2	
기타임산부산물	3,000	2		섬유판	9,706	8	
				건축용목제품	11,308	29	
				젓가락	4	0	
				기타목재생활용품	4	1	
				기타목재류	3,357	3	
				수목류	18,550	29	
				종자류	26,239	18	
수산물	2,892,953	10,357	16.1	수산물	331,880	590	0.7
넙치	1,035	8		넙치	2,500	25	
대구	3,024	7		기타어류	785	6	
새우	171,984	995		김	697	5	
꽃게	1,580	22		꽃	37	9	
기타게	45,299	109		미역	189,990	106	
문어	98,247	290		기타수산물통조림	33	0	
낙지	20,020	50		건조수산물	5,500	30	
파조개	13,232	31		기타수산가공품	132,339	408	
기타조개	742,045	751					
기타연체동물	586,748	986					
기타수산물통조림	15,000	18					
건조수산물	407,208	3,948					
기타수산가공품	684,976	2,681					
기타수산물	102,555	462					
합 계		15,311	23.8	합 계		7,964	9.7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04호(2008.6.1~6.30).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6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1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2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소 계	63,313	2,797	3,473,404	63,432	5,599	3,924,251	7,397,655	450,848
2008.1	2,573 (1,759)	221 (169)	68,930 (55,581)	3,035 (1,848)	496 (340)	71,573 (37,168)	140,504 (92,749)	2,643 (△ 18,431)
2008.2	2,001 (1,533)	181 (170)	59,904 (44,431)	2,368 (1,586)	427 (339)	58,981 (37,797)	118,885 (82,228)	△ 923 (△ 6,634)
2008.3	2,513 (1,93)	209 (166)	79,310 (58,636)	2,886 (1,823)	460 (399)	78,587 (44,515)	157,897 (103,151)	△ 723 (△ 14,121)
2008.4	2,397 (1,803)	213 (180)	72,751 (46,029)	2,576 (1,891)	432 (431)	71,497 (86,840)	144,248 (132,869)	△ 1,254 (40,811)
2008.5	2,505 (2,222)	227 (187)	77,218 (63,397)	3,120 (2,115)	472 (443)	95,506 (88,531)	172,724 (151,929)	18,288 (25,134)
2008.6	2,332 (2,010)	209 (180)	64,410 (57,385)	3,091 (2,094)	471 (409)	82,128 (97,858)	146,538 (155,243)	17,718 (40,473)
소 계	14,321	365	422,524	17,076	703	458,272	880,796	35,748
총 계	102,661	3,612	4,661,272	107,239	7,104	5,415,075	10,076,347	753,803

주: 1) ()안은 2007년 동기 실적임.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02~204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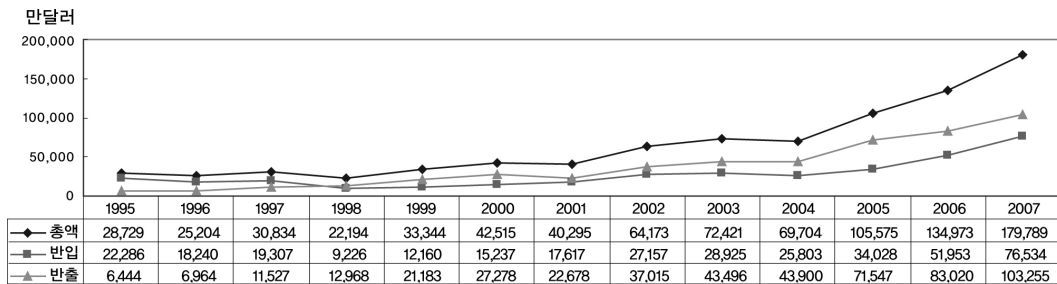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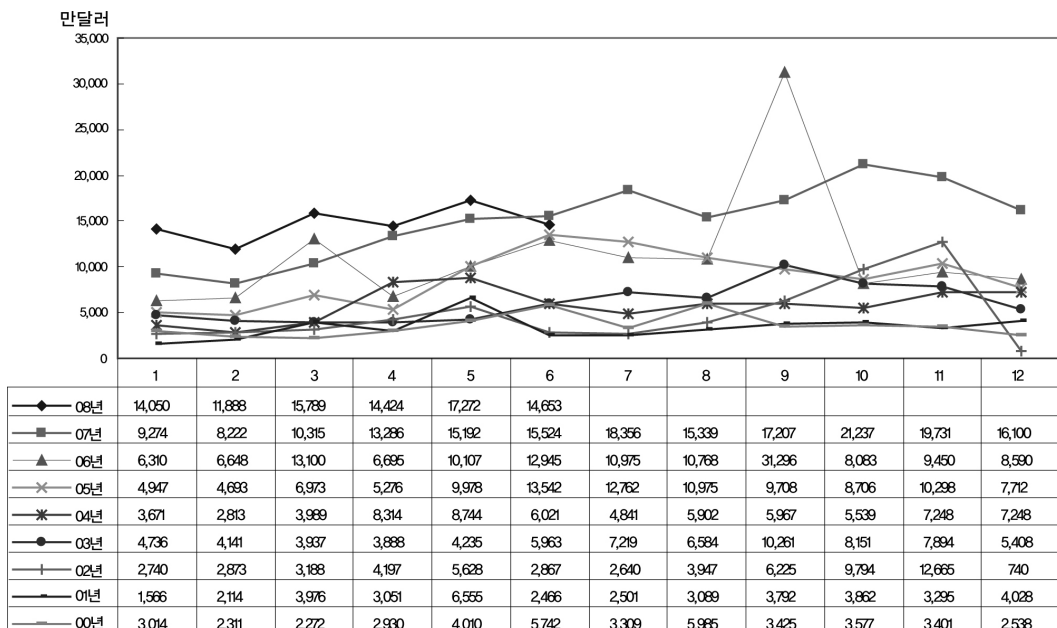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소 계	369,037	3,302	50,566	668,724	1,091,630	805,660	21,784	20,954	14,985	863,383	1,955,013	△228,247
2008.1	5,324 (2,996)	- (-)	10 (26)	12,820 (13,345)	18,154 (16,367)	8,611 (3,002)	165 (32)	320 (41)	397 (27)	9,493 (3,102)	27,647 (19,469)	△8,661 (△13,265)
2008.2	2,751 (-)	- (-)	- (-)	10,849 (-)	13,600 (-)	3,979 (-)	51 (-)	207 (-)	317 (-)	4,554 (-)	18,154 (-)	△9,046 (-)
2008.3	3,855 (2,069)	1 (-)	24 (5)	12,155 (9,666)	16,035 (11,740)	4,475 (3,111)	97 (291)	1,141 (774)	158 (143)	5,871 (4,319)	21,906 (16,059)	△10,164 (△7,421)
2008.4	4,796 (3,386)	- (-)	16 (18)	12,519 (6,250)	17,331 (9,654)	6,674 (2,316)	97 (70)	756 (487)	489 (219)	8,016 (3,092)	25,347 (12,746)	△9,315 (△6,562)
2008.5	4,308 (4,229)	- (-)	2 (-)	11,159 (13,317)	15,469 (17,546)	6,918 (3,405)	120 (162)	1,433 (941)	397 (281)	8,868 (4,789)	24,337 (22,335)	△6,601 (△12,757)
2008.6	4,928 (4,826)	18 (33)	8 (-)	10,357 (11,322)	15,311 (16,181)	6,722 (25,530)	257 (16)	395 (160)	590 (161)	7,964 (25,867)	23,275 (42,048)	△7,347 (9,686)
소 계	25,962 (17,506)	19 (33)	60 (49)	69,859 (53,900)	95,900 (71,488)	37,379 (37,364)	787 (571)	4,252 (2,403)	2,348 (831)	44,766 (41,169)	140,666 (112,657)	△51,134 (△30,319)
총 계	-	-	-	-	1,187,530	-	-	-	-	908,149	2,095,679	△279,381

주: 1) ()은 2007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02~204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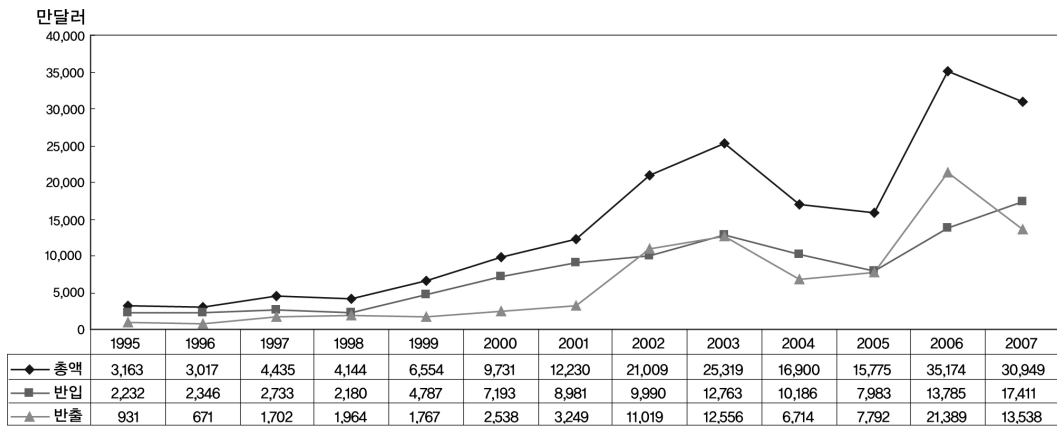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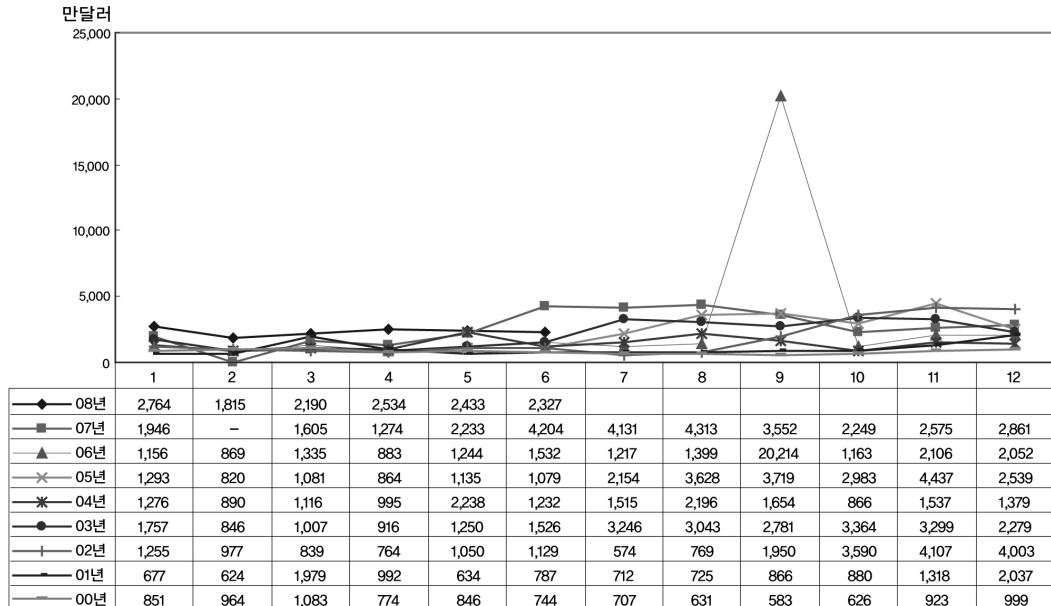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8년 4~6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대동수산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6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은 총 21개로 전체 364개 기업(단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331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16건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8년 6월 말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회사	수산물 제육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과라우수산업(합 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태영수산물(합 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200만불 (65만불)*	'97.10.14 (*98.8.28)*
안중개발(합 작)	조선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정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두레마운영농조립법인** (합 작)	라선경제협회사	나진·선봉지대 협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800만불 (200만불)*	'98.4.8 (*98.7.27)*
국제육수수재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물종 생산·시험 및 제배·적지 확정, 신물종 슈퍼육수수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억원 →216억원* (*99.3.25)*	'98.6.18 (*99.6.18→ 01.6.20)*
백산실험***(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외가 보급, 표고·스타라·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한진 (주)경평인터네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황버섯·소료)	평양	-	'03.10.31 (*04.3.20)*
(주)안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제배 및 판매·제품	평양, 황해도	250만불*	'04.2.18 (*04.9.17)*
제일유통**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제배 및 가공	평양	546만불*	'04.8.21 (*04.8.21)*
상하씨엘**(계약)	개선무역총회사	농수산물 및 토산물 가공·공정 설립·운영	남포	5만불*	'04.9.17 (*04.9.17)*
(주)제이유네트웍스**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정 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판매	평양	-	'04.12.30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판매·판매	원산	15만불*	'05.06.15 (*05.06.15)*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제배 및 판매	황북·분산 황남·연덕	26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제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단경대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평양	30만불*	'05.12.30 (*05.12.30)*
(주)통일고려인삼**	광명성총회사	인삼·제배 및 가공·공정 운영(북한 내수 및 해외판매)	평양, 황북·분산군	285만불*	'07.12.31 (*07.12.31)*
대동수산**	광명성총회사	수산물 가공업	남포	500만불*	'08.06.20 (*08.06.20)*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04호.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 공고 제2008 - 19호, 2008. 5. 8)

○ 개정이유

-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문기간 내에 회수의 제한없이 방북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사업자승인규정을 협력사업승인규정에 흡수하여 승인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여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
- 반출·반입, 수송장비 운행 승인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명령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 교역의 정의조항 보완(안 제2조 제2호)
- 실무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8조 제1항)
- 남북한 왕래 조항 개선
 - (1) 방문증명서 발급 관련,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유효기간 및 조건을 법률에 명시(안 제9조 제3항)
 - (2)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재방문시에는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방문목적에 따라 방문신청을 하여야 함을 명시(안 제9조 제4항)
 - (3) 수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청한 자 중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문기간 내에 회수의 제한 없이 방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5항)
 - (4)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재외국민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안 제9조 제7항)

- 남북한 주민접촉 규정 개선
 - (1)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접촉신고 제외에 관한 위임근거규정 마련(안 제9조의2 제2항)
 - (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규정된 접촉신고 유효기간 및 조건을 법률에 명시(안 제9조의2 제4항)
- 남북간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는 교역당사자 규정을 삭제
- 반출·반입 승인 규정 보완
 - (1) 반출·반입 승인 관련,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유효기간 설정 근거를 마련(안 제13조 제2항)
 - (2) 반출·반입 승인 취소규정 마련(안 제13조 제4항)
-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의 요건·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항, 제2항)
- 협력사업자 승인규정 삭제
- 협력사업 승인규정 보완
 - (1) 협력사업 승인 관련,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17조 제1항)
 - (2) 기존 협력사업자 승인규정에 있던 요건을 추가(안 제17조제1항 제4호)
 - (3)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 및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안 제17조 제2항)
 - (4) 협력사업승인 취소,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제4항, 제5항)
-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의 요건·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37조2항에 규정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음’을 법률에 규정(안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수송장비 운행규정 보완
 - (1)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유효기간 설정근거를 마련(안 제20조 제2항)
 - (2) 운행승인 취소규정 마련(안 제20조 제3항)
-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업무 위탁규정 마련(안 제24조 제2항)
-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의무 명시(안 제25조 제1항)
- 통일부장관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마련(안 제25조의2)
- 업무 위탁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안 제26조의2)
- 협력사업, 교역 관련 허위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 제2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개최

(통일부, 2008. 5. 15)

- 정부는 5월 15일(목) 통일부에서 제2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 등 5개 안전에 대해 심의·의결함.
 - ①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②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기금 지원
 - ③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 ④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 ⑤ 2008 대북지원 민간단체 개별사업 지원에 대한 기금 지원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통일부, 2008. 6. 12)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하여 2008년 6월 12일부터 시행.
 - 개정 취지는 민간단체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
- 주요 개정 내용
 - 대북지원 물품구매 등 경쟁방식 도입 : 대북지원을 위한 물품구매, 공사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에 의하도록 함.
 - 기금지원 규모 조정 : 기금지원 한도액을 전체사업비의 50% 범위 내로 조정(현행 70% 범위 내)
 - 선지급 기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 근거 마련 : 선지급 기금의 환수문제 등 발생 시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증서 징구 근거 명시
 - 지원자금 사용 증빙책임 명시 : 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집행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대해 자금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부과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 2008. 6. 24)

○ 개정이유

- 기금 지원 등의 결정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 지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
- 손실보조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

○ 주요내용

- 주민왕래지원자금 지원 결정시 중요한 사항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안 제2조제1호)
-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지원 결정시 중요한 사항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안 제2조제2호)
-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비지정통화의 인수 결정시 중요한 사항을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안 제2조제4호)
-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시 중요한 사항을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안 제2조제5호)
-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금의 지급”으로 변경(제2조 제5호의 2, 동호의 가목, 나목 및 제3조 제6호, 동호의 가목, 나목)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5억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조 제5호의 2 중 “다음 각목의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의 지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으로 하고, 같은 호의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 제6호의 “다음 각목의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호의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한다.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 2008. 6. 24)

○ 의결주문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제안이유

- 자의적 기금지원 방지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를 시행령상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금 지원등의 환수 기준을 구체화하여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신뢰를 형성
- 손실보조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별로 구분 계리하여 기금 운영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

○ 주요내용

- 포괄적 기금지원 용도를 이산가족교류 지원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등으로 세분화 (안 제8조제3호 가목 내지 라목 신설)
 - (1)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신설
 - (2)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신설
 - (3)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신설
 - (4)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신설
- 손실보조 용어 변경 및 취지 명확화(안 제9조)

“손실보조”라는 용어에서 오는 오해를 해소하고, 대북 교역·경협 사업 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성격의 동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
- 기금의 구분 계리(안 제13조제2항 신설)

북한의 비핵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북한비핵화 계정”에 별도 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기금 지원등의 환수에 대한 기준 구체화(안 제18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지원을 받은 경우, 기금을 해당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환수요건을 구체화하며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규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손실보조”를 “보험”으로 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보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계리)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법 제8조 제5호 중 영 제8조 제3호 가목, 나목 및 라목의 사업에 관한 남북협력계정

2. 법 제8조 제5호 중 영 제8조 제3호 다목의 사업에 관한 북한비핵화계정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 지원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금 지출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및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이 기금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출된 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당해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제20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 2008. 7. 3)

○ 정부는 7월 3일(목)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2008년도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5건(103억원)을 심의·의결함.

① 2008년도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개발지원 성격을 가지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결핵관리 사업」 등 4개 분야 정책사업에 44억 원 상당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 결핵관리사업 10억 원, 의료인력 교육사업 10억 8,500만 원,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협력사업 10억 원, 산림녹화 시범사업 12억 5천만 원 등

②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비품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완공(2008. 8월 중)에 따른 가구 및 장비 등 관련 소요비품 구입과 운송비, 설치비 등 부대경비 총 42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③ 금강산 소방서 건설비용 재의결(안)

- 금강산 관광지구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건물 건립, 소방 장비 지원 등 총 17억 원 상당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④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안)

- 개성공업지구 사업 관련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간소화(수시방북필요사유서 삭제)하고 협력사업 승인처리 기간을 단축(10일→ 7일)

⑤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승인(안)

- 민간경제협력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주)MG상사 등 7개 기업이 신청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건을 승인
- * 신청기업: (주)MG상사 등 7개사, 약정금액: 총 296억 원, 수수료율: 0.375%

〈참고자료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법률 제8852호, 2008. 2. 29)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이하 “<u>南韓</u>”이라 한다)과 그 以北地域(이하 “<u>北韓</u>”이라 한다)間의 相互交流和 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u>出入場所</u>”라 함은 <u>北韓으로</u> 가거나 <u>北韓으로부터</u> 들어올 수 있는 <u>南韓의 港口·飛行場 기타 場所</u>로서 <u>大統領令</u>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u>交易</u>”이라 함은 <u>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搬出·搬入</u>을 말한다. 3. “<u>搬出·搬入</u>”이라 함은 <u>賣買·交換·賃貸·借·使用·賃借·贈與</u>등을 원인으로 하는 <u>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移動</u>(단순히 第3國을 經유하는 物品의 移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u>協力事業</u>”이라 함은 <u>南韓과 北韓의 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이 共同으로 行하는 文化·관광·보건의료·體育·學術·經濟 등에 관한 諸般活動</u>을 말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u>南韓과 北韓과의 왕래·접촉·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務의 제공 등 南北交流和 協力을 目的으</u>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u>이바지하는 것</u>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출입장소</u>”란 <u>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u>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u>남한</u>”이라 한다)의 <u>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u>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u>교역</u>”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u>물품 등</u>”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u>반출·반입</u>”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賃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u>물품 등의 이동</u>(단순히 제3국을 <u>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u>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u>협력사업</u>”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u>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u>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u>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북 교류와 협력</u>을 목적으로

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第4條(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設置) 南韓과 北韓間의 相互交流 및 協力(이하 “南北交流·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政策을 協議·調整하고,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第5條(協議會의 구성) ①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인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2. (생략)

④ (생략)

⑤協議會에 幹事 1人을 두되, 간사는 委員長이 指名하는 者가 된다.

第6條(協議會의 機能)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생략)

2.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各種 許可·승인 등에 관한 重要사항의 協議·調整

3. 반출·반입 승인대상 物품 등의 결정

4. · 5. 6. (생략)

7. 기타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第7條(協議會의 議事)

① · ② (생략)

③協議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實務委員會) ①協議會에 上程할 議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현행과 같음)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허가·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3.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등의 결정

4. · 5.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

案을 준비하고, 協議會의 委任을 받은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協議會에 實務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신 설>

③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 또는 남한을 최초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북한 또는 남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 또는 북한의 주민이 북한 또는 남한을 왕래하려면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방문기간 만료 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북한 또는 남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방문목적에 따라 방문신청을 하고 새로운 방문기간을 부여받아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방문신청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4항에 따라 방문신청한 자 중 외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 등 大統領령이 정하는 자는 방문기간 내에 회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

수에 제한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방문신청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청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2.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⑦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가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후 신고할 수 있다.

②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왕래의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접촉 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0條(海外同胞등의 出入保障) 外國國籍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의 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外居住同胞가 南韓에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旅券法에 의한 旅行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

第11條(南·北韓 往來에 대한 審査) 出入場所에서 南韓과 北韓을 直接 往來하는 南韓과 北韓의 住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등) ①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교역당사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고,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접촉 후 신고, 신고의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지니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에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① <삭 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

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第14條(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 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하여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사항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品目 또는 禁止品目의 구분

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 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 개별적 승인을 갈음하여 물품 등 또는 대금결제 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5.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 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 승인을 要하는 品目에 관한 제한내용 및 承認節次

第15條(交易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통일부장관은 交易에 관한 協定の 준수나 物品의 搬出·搬入의 秩序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搬出·搬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交易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의 승인 등)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출 것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1.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반출이나 반입을 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 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7.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8.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절차 및 청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요하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생략)
4. 협력사업자의 능력이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신 설>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현행과 같음)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

<신 설>

<신 설>

第18條(協力事業에 관한 調整命令等) ①
통일부장관은 協力事業이 南北交流·協力
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協力事業
者에게 그가 施行하는 協力事業에 대하
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신 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6.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
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7.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
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8.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
인 및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
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
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
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그 밖에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
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②통일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力事業者에게 協力事業의 施行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19條(決濟業務의 取扱機關) ①통일부장관은 南北交流·協力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協議하여 決濟業務를 취급할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濟業務取扱機關이 행하는 決濟의 범위·방법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輸送裝備의 運行) ①南韓과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 등을 運行하고자 하는 者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基準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輸送裝備등의 出入管理)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과 그 乘務員이 出入場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法 第69條 내지 第76條의 規正을

③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 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 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
2.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準用한다.

第22條(통신役務의 제공) ①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하여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할 수 있다.

②南韓과 北韓間에 제공되는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의 提供者·종류·料金·取扱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檢疫등) ①北韓으로부터 來港하는 船舶·航空機·荷物은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檢疫조사에 관하여는 「檢疫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檢疫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檢疫증 또는 임시檢疫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③北韓으로부터 南韓으로 오는 者중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이 疑心되는 者와 傳染病菌의 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者는 國立檢疫所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4條(南北交流·協力の 지원) 政府는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法에 따라 행하는 南北交流·協力を 위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第25條(協調要請)

<신 설>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 역무와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역무와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으로부터 내항(來港)하는 선박, 항공기, 하물(荷物)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른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 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지닌 자는 검역소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①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협력사업의 추진과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협조 요청)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

통일부장관은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고 관련政策樹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專門家 및 南北交流·協力の 經驗이 있는 者에게 의견의 陳述 등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協調를 요청받은 者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第26條(다른 法律의 準用) ①交易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對外貿易法등 貿易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②物品의 搬出·搬入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의 賦課·徵收·減免 및 還給등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關稅法에 의한 課稅規定 및 다른 法律에 의한 輸入賦課金에 관한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③南韓과 北韓間의 投資, 物品의 搬出·搬入 기타 經濟에 관한 協力事業 및 이에 隨伴되는 去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法律을 準用한다.

1.~ 9. (생략)

10.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

관의 장에게 남북한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 등,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협력의 經驗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正當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의 반입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그에 대한 特例를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第27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를 發給받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을 왕래한 자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物品을 搬出 또는 搬入한 者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協力事業을 施行한 者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를 발급받거나 제13조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삭제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規定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용할 때는 大統領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13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規定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을 科한다.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3.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4. 제15조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자
5. 제18조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u>기간 이내에</u>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u>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u>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u>의하여</u> 이를 징수한다.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u>자수한 때에는</u> 그 형을 <u>감경 또는</u> 면제할 수 있다. 第30條(北韓住民擬制) 이 法(第9條第1項 및 第11條를 제외한다)의 <u>適用에 있어서</u> 北韓의 路線에 따라 활동하는 國外團體의 構成員은 <u>이를</u> 北韓의 住民으로 본다.	⑤제3항에 따른 <u>기간에</u>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u>내지 아니하면</u>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u>따라</u> 징수한다.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u>자수하면</u> 그 형을 <u>감경(減輕)하거나</u>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u>적용할 때</u>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참고자료 2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통일부고시 제2008-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하 “대북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단체에 한한다)과 1년 이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

제3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①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소개서 1부
2. 대북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서 1부
3. 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지원사업자는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 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 5 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해제) ①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5. 최근 2년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실적(북한주민접촉, 북한방문, 물품반출입 등에 한한다)이 없는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대북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의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자
2.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③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 7 조(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1부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1부

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업 추진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1부
6.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기타 대북지원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 계획 등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부

제 8 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 ②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
2. 대북지원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자체재원 집행실적 등)
5. 분배대상 지역
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③기금의 지원은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 9 조(지원자금의 용도) ①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3. 대북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 ②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8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지원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지급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또는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선지급시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선지급 신청자에게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지원 결정 후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기금집행신청시 물품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물품의 구입 및 수송, 공사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통일부장관이 조정하여 통보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③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등) ①통일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절차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①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물품

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②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하여금 그에 갈음하여 필요한 반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등) ①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인 법인과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조작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기금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남북협력기금지원신청서

①신청인 (단체명)	한글 :	②대표자	
③주소	한자 : (TEL) (FAX)		
④사업명			
⑤사업상대자			
⑥기금신청금액	총소요자금 :		
	자체재원확보액 :		
	기금지원신청액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대북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남북협력기금사용계획서 1부 3.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함) 1부 4.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 상대방과의 의향서 등 포함) 1부 5.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인쇄용지(특급)80g/m²)

〈 참고자료 3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통일부령 제22호, 2004. 5. 14)	개 정 안
제2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협의회 의결사항)----- ----- ----- -----.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u>5억원</u> 이상의 지원	1. ----- <u>3억원</u> -----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u>5억원</u> 이상의 지원	2. ----- <u>3억원</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u>50억원</u> 이상의 자금지원, <u>5억원</u>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 ----- <u>5천만원</u> ----- -----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중 <u>5억원</u> 이상의 보증	5. ----- <u>5천만원</u> -----
5의2.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u>다음 각목의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u>	5의2. ----- --- <u>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의 지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u>
가. 교역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u>5억원</u> 이상	<u>가. 삭제</u>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u>20억원</u> 이상	<u>나. 삭제</u>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제3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경미한 사항)-----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u>다음 각목의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u>	6. ----- <u>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금의 지급</u>
가. 교역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u>5억원</u> 미만	<u>가. 삭제</u>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u>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20억원</u> 미만	<u>나. 삭제</u>

〈 참고자료 4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대통령령 제20721호, 2008. 2. 29)	개 정 안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회회의 의결이 있는 <u>경우에 한한다.</u>	3.----- ----- ----- 경우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가.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라.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 ----- ----- 동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② ----- 보험 -----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계리) ①-----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법 제8조제5호중 영 제8조제3호 가목, 나목 및 라목의 사업에 관한 남북협력계정

2. 법 제8조제5호중 영 제8조제3호 다목의 사업에 관한 북한비핵화계정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 지원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금 지출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및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환수 여부를 결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출된 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당해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¹⁾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8.7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06.1~12 ²⁾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07.1~12 ³⁾	-	9,966	-	한국 2,437, 유엔긴급지원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08.1~7	-	16,772	-	스웨덴 2,911, 아일랜드 1,190, 스위스 1,067, 독일 444, 캐나다 403, 프랑스 250 등
총 계	-	184,533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3) 긴급수해복구 지원도 포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08)

표 2 2008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08.1.1~7.3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CONCERN	아일랜드	1,190,322	보건 및 위생 증진을 위한 식수시설 개선사업 (CON 08 03)
	스웨덴	315,6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소 계	1,505,945	
DRK, ICRC, IFRC	덴마크	835,322	국제지원 (46.H.7-1-164)
FAO	네덜란드	909,798	환경보전형 이모작 감자 생산
GAA	독일	3,110,420	A: 식량이용 증대를 위한 취로사업 B: 식량안보와 과수재배
독일적십자사	독일	443,787	의약품 지원 (VN05 321.50 PRK 01/08)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스웨덴	419,460	ICRC를 통한 인도적 지원
국제적십자연맹 (IFRC)	캐나다	201,410	재난관리, 보건 등 (M-012774)
PMU Interlife	스웨덴	1,243,709	인도적 지원
Premiere Urgence	스웨덴	664,470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프랑스	250,378	2008년 수해지역 인도적 지원
	소 계	914,848	
개인 및 단체	체코	170,213	2008년 수해지역 사과묘목 44,500 그루 지원
Save the Children(영국)	스웨덴	348,847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스웨덴적십자사	스웨덴	1,162,8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보건의료)
UNICEF	캐나다	201,410	2008년 UNICEF 실행계획 (M-012775) 긴급보건지원
	이탈리아	1,399,689	
	소 계	1,601,099	
WFP	이탈리아	777,605	취약 주민 식량지원 식량안보 평가 지원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노르웨이	395,257	
	스위스	1,066,667	
	소 계	2,239,529	
WHO	노르웨이	375,490	북한 주민 인도지원 여성 및 어린이 건강 증진 수해복구 지원 (PRK 0183052) 긴급보건지원
	한국	297,690	
	노르웨이	58,302	
	이탈리아	933,126	
	소 계	1,664,608	
합 계		16,771,818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08)

표 3 2008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08.1.1~7.31)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네덜란드	FAO	909,798	환경보전형 이모작 감자 생산
	독일	GAA	3,110,420	A: 식량이용 증대를 위한 취로사업
	체코	개인 및 단체	170,213	B: 식량안보와 과수재배
			소계 4,190,431	2008년 수해지역 사과묘목 44,500 그루 지원
식량	노르웨이	WFP	395,257	식량안보 평가 지원
	스위스	WFP	1,066,66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이탈리아	WFP	777,605	취약 주민 식량지원
			2,239,529	
보건	이탈리아	UNICEF	1,399,689	긴급보건지원
	이탈리아	WHO	933,126	긴급보건지원
	노르웨이	WHO	58,302	수해복구 지원 (PRK 0183052)
	스웨덴	스웨덴적십자	1,162,8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프랑스	Premiere Urgence	250,378	2008년 수해지역 인도적 지원
	독일	독일적십자	443,787	의약품 지원
	한국	WHO	297,690	여성 및 어린이 건강 증진
			소계 1,915,290	
다부문	스웨덴	CONCERN	315,6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스웨덴	Premiere Urgence	664,470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스웨덴	ICRC	419,460	ICRC를 통한 인도적 지원
	스웨덴	Save the Children(영국)	348,847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스웨덴	PMU Interlife	1,243,709	지남지역 인도적 지원
	캐나다	IFRC	201,410	재난관리, 보건 등(M-012774)
	캐나다	UNICEF	201,410	2008년 UNICEF 실행계획 (M-012775)
	노르웨이	WHO	375,490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
	덴마크	DRK, ICRC, IFRC	835,322	국제지원
			소계 4,605,741	
식수 위생	아일랜드	CONCERN	1,190,322	보건 및 위생 증진을 위한 식수시설 개선사업(CON 08 03)
합 계			16,771,818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08)

표 4 2008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08.1.1~7.31)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캐나다	UNICEF	201,410	2008년 UNICEF 실행계획(M-012775) 재난관리, 보건 등(M-012774)
	IFRC	201,410	
	소계	402,820	
체코	개인 및 단체	170,213	2008년 수해지역 사과묘목 44,500그루 지원
	소계	170,213	
덴마크	DRK, ICRC, IFRC	835,322	국제지원
	소계	835,322	
프랑스	Premiere Urgence	250,378	2008년 수해지역 인도적 지원
	소계	250,378	
독일	독일적십자사	443,787	의약품 지원 (VN05 321.50 PRK 01/08) A: 식량이용 증대를 위한 취로사업 B: 식량안보와 과수재배
	GAA	3,110,420	
	소계	3,554,207	
아일랜드	CONCERN	1,190,322	보건 및 위생 증진을 위한 식수시설 개선사업 (CON 08 03)
	소계	1,190,322	
이탈리아	WFP	777,605	북한주민 지원 (DPRK PRRO 10488.0) 긴급보건지원 긴급보건지원
	UNICEF	1,399,689	
	WHO	933,126	
	소계	3,110,420	
한국	WHO	297,690	여성 및 어린이 건강 증진
	소계	297,690	
네덜란드	FAO	909,798	환경보전형 이모작 감자 생산
	소계	909,798	
노르웨이	WHO	58,302	수해복구 지원 (PRK 1083052) 식량안보 평가 지원 (PRK 1083273)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
	WFP	295,257	
	WHO	375,490	
	소계	829,049	
스웨덴	Save the Children	348,847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스웨덴 적십자사	1,162,8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CONCERN	315,623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ICRC	419,460	ICRC를 통한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Premiere Urgence	664,470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PMU-Interlife	1,243,709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
	소계	4,154,932	
스위스	WFP	1,066,66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소계	1,066,667	
합계		16,771,818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uly 31, 2008)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WFP, 북한의 식량 위기 가능성 경고

- 토니 벤버리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지역사무소장은 지난해 8월 발생한 홍수 피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긴급지원을 호소함.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8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68만 톤으로 2007년 부족량의 2배에 달하며 이는 2001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밝힘.
- 평양의 주요 식량 가격은 2004년 이후 가장 비싸며 지난해 가격에 비해 2배 이상임.
 - 현재 쌀 가격은 kg당 2,000원으로 2007년 4월의 700~900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이며 옥수수 가격도 kg당 600원으로 지난해의 350원과 비교할 때 거의 2배 수준임.
 - 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5,500원, 계란은 개당 200원임.
 - 일반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 6,0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평양의 물가가 매우 비싸다는 판단임.
-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WFP는 6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였으나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2006년부터 지원 대상이 110만 명으로 줄었음.
 - 현재의 지원 계획에 의하면 WFP는 2008년 8월까지 북한의 203개 시·군 중 50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45,000톤의 식량을 지원할 예정임.
 - 현재 WFP가 시행 중인 대북 식량지원계획에 따라 한국(2,000만 달러), 러시아(800만 달러), 스위스(660만 달러), 독일(340만 달러), 호주(240만 달러), 유엔긴급지원기금(230만 달러) 등이 원조에 참여하고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WFP, WFP warns of potential humanitarian food crisis in DPRK following critically low harvest, April 16, 2008)

□ WFP, 정부에 대북식량지원 요청

- 정부는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대북 식량지원 요청을 접수,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함.
- 통일부 당국자는 6월 1일 “지난 달 26일 WFP 측으로부터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접수했다”면서 현재 지원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여러 가지 상황과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힘.
- 정부는 2001~2004년 WFP를 통해 매년 옥수수 10만t 가량을 북한에 지원했고 작년에도 WFP를 통해 콩, 옥수수 등 3만2천t 가량의 식량을 지원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정부에 대북식량지원 요청..상황 고려해 검토,” 2008. 6. 1)

□ WFP, 식량지원사업 연장기로 북한과 합의

- 오늘 8월 말로 시한이 완료되는 WFP의 대북 식량지원사업 연장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조만간 양측이 합의서에 공식 서명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WFP는 2002년까지만 해도 북한에 10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4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다시 10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WFP와 함께 미국이 지원하는 식량을 함께 분배할 미국의 민간단체는 평양, 평안북도 신의주, 자강도 희천 등 3곳에 상주사무소를 두기로 북한과 합의함에 따라 WFP는 나머지 7개의 지역사무소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됨.
- WFP는 이번 협상이 마무리 되면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대북 식량지원사업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北, 식량지원사업 연장기로,” 2008. 6. 27)

□ 세계식량계획, 북한의 500만 주민에게 식량 지원하기로 북한과 합의 발표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과 북한의 500만 주민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이번 합의는 미국이 북한에 향후 1년 동안 50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6월 28일 북한 당국과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1차 분 37,000톤의 밀을 남포를 비롯한 동서해안 항구에 하역함.
 - 이번 합의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50여명의 인도지원 요원을 북한에 추가로 파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식량지원 대상 지역도 50개에서 128개로 늘어남.
 - 미국이 제공하는 50만 톤 중 세계식량계획은 40만 톤, 나머지 10만 톤은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맡아 전달하게 됨.
- 세계식량계획의 토니 밴버리 아시아사무소장은 한국말을 쓸 줄 아는 직원이 북한에서 식량분배를 감시하게 되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7월 1일 보도함.
 - 또한 WFP는 식량분배 감시요원의 수를 현재 10명에서 59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북한과 합의하였음.
 - 식량분배 모니터링 팀이 식량분배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요청 후 1~2주를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방문허가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방문할 수 있게 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WFP, Agreement reached as first US ship in DPRK with food aid, June 30, 2008)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한국말 구사자가 北식량분배 감시,” 2008. 7. 2)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 1차분 WFP 통해 북한에 도착

- 미국 정부가 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식량 1차분 밀 37,000톤이 6월 29일 북한에 도착함.
 - 총 37,000톤 중 18,000톤은 남포항을 통해, 나머지 19,000톤은 함경남도 홍남항과 함경북도 청진항을 통해 인도하였음.
 - 미국은 지난 5월 6, 7일 양일 동안 평양에서 북측과 식량 제공에 관한 협의를 한 후 16일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기로 공식 발표한 바 있음.

- 미국의 CNN 방송은 미국과 북한, WFP 측은 6월 27일 북한에 대한 식량제공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고 전함.
- WFP는 식량 인도요원의 추가 파견이 가능할 경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자료: <http://www.korea-np.co.jp> (朝鮮新報, “米食糧支援1次分, 朝鮮に到着,” 2008. 7. 7.

□ 유엔아동기금, 북한 동북부 지방 접근 재개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북한의 동북부 지방의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식량, 의약품 공급을 재개함.
- 이번에 공급되는 물품은 급성영양실조 어린이에게 줄 영양식 우유 11톤, 가공된 식품 1.5톤을 비롯하여 3개월 동안 40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초 의약품 키트 93조 등임.
- 유엔은 동북부 지역에 인도지원을 재개하기 위하여 2007년 초부터 북한 당국과 협상을 한 결과 금년 7월 4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음.
- 유엔아동기금이 이 지역에 지원품을 공급한 것은 2006년 말 이래 처음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ICEF, Humanitarian access to the North Eastern Provinces of DPRK resumes, July 11, 2008)

□ WFP 실사 결과 북한 주민 3분의2 하루 두끼 식사

-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현지 조사 결과 북한 주민 약 3분의2가 식량난으로 하루 두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WFP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사자를 속출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근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 WFP는 지난 6월 11일부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과 실사단을 조직하여 북한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북부 도시 징거에서 기근 초기 징후들이 발견되었다는 예비 평가 결과를 내린 바 있음.
- 5월말 WFP로부터 대북 지원 동참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옥수수 5만 톤

직접 지원 안을 북측에 타진하였으나 북한이 거부하였으며 WFP의 북한 현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WFP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주민 3분의2 하루 두끼 식사,” 2008. 7. 17)

□ WFP/FAO의 북한에 대한 긴급식량안보평가 실사 결과

-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 대한 긴급식량안보평가(RFSA)를 실시한 결과 지난 수개월 동안 식량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기구의 평가 결과 함경북도, 양강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은 종합적인 식량안보 및 인도적 상황(IPC)이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됨.
 - 세계식량계획은 종합적인 식량안보 및 인도적 상황을 1단계(식량안보 확보)에서 5단계(기아 상황)로 분류하며 3단계는 심각한 식량위기(acute food and livelihood crisis) 상황으로 분류됨.
 - 이들 지역은 앞으로 8~9월 경 현재의 3단계에서 4단계(긴급 인도적 상황)로 한 단계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지역은 현재의 2단계(만성적 식량안보 불안 상황)에서 3단계(심각한 식량위기)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WFP는 현재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의 전역 130개 군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음.
 - 식량분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WFP는 국제직원 45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총 59명의 국제직원을 두는 것으로 북한 당국과 합의한 바 있음.
 - 국제직원 중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두기로 북측과 합의하였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WFP, Hunger's global hotspots: 22 Jul 2008, July 22, 2008)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미국, 북한에 식량 50만 톤 제공

- 미국 정부는 다음달부터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12월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함.
- 미 국제개발처(USAID)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심각한 식량부족에 직면했음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미국과 북한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재개 프로그램의 기준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음을 밝힘.
- 이 같은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 내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조정과 집중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임

- 미국은 북한과 5월 6, 7일 이틀 동안 평양에서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16일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공식 발표함.
- 50만 톤 중 10만 톤은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며 나머지 40만 톤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제공할 계획임.

- 북한 중앙통신은 17일 미국의 대북 50만t 식량지원 계획을 보도하면서 미국 정부의 식량제공은 북한의 식량 부족 해결에 일정하게 도움이 될 것이며 북미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함.
- 북한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미 국무부가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한지 12시간 정도 만에 나온 것으로 신속할 뿐 아니라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간접적인 사의 표명도 감지되어 매우 이례적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50만t 제공,” 2008. 5. 17)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매체, 美식량지원 발표 신속 보도,” 2008. 5. 17)

<http://www.korea-np.co.jp> (朝鮮新報, “米國,朝鮮に食糧50만トン提供,” 2008. 5. 21.)

□ 한국 정부, 대북 인도지원 3원칙 표명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3대 원칙을 밝힘.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힌 대북 인도지원 3대 원칙은 ①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핵 등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며 ② 북한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해서 직접 지원하고 ③ 북한 주민의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식량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임.
 - 지난 5월 2일만 해도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입장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북한이 지원을 요청해오면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중립적으로 말한 데서 한 발짝 더 나간 발언임.
 - 한편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 북한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어야 지원한다는 입장임을 밝힘.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정부, 대북 인도지원 ‘3원칙’ 표명,” 2008. 5. 19)

□ 민간단체, 긴급 대북 식량지원 잇따라

-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하여 오는 5월 29일과 31일 쌀 100t과 밀가루 50t을 각각 긴급 지원키로 함.
 - 지원 물량은 이 단체가 긴급 편성한 예산 5천만원과 대한성공회가 기부한 성금 1억 5천만원으로 마련했으며 개성시 개풍군을 비롯한 황해남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임.
- 지난 3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 운동을 벌여온 굿네이버스는 내달 초 밀가루와 분유 등 4천만원 어치를 평양과 남포, 사리원 등 육아원 9곳에 지원할 예정임.
- 기독교사회책임과 국제기아대책기구 등 16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대북 식량지원 긴급 행동’도 50억원 모금을 목표와 가두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준공기를 감안해 6월말 이전에 1차 지원 물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민간단체, 긴급 대북 식량지원 잇따라,” 2008. 5. 23)

□ JTS, 부산서 대북 지원 밀가루 선적식

- 국제구호단체인 JTS(이사장 법륜 스님)는 5월 27일 오후 부산항 3부두에서 북한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보내는 긴급 지원 밀가루 200t(1억5천만원) 선적식을 가짐.
- 1만 포대에 나뉘어 담긴 밀가루는 부산항에서 화물선에 실려 함경북도 라선항을 거쳐 함경북도 육아원과 애육원, 초중등학교, 농아학교와 량강도 혜산시 어린이집, 회령시 양로원 등 9개 시설에 전달될 예정임.
- 이번 밀가루 지원은 북한의 식량위기가 국제 이슈화한 이후 남측 민간단체가 추진한 긴급 식량지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것임.
- JTS는 또 31일까지 북한의 대량아사 발생을 막기 위해 옥수수 1만t 확보를 목표로 전국 12개 대도시에서 긴급구호운동을 전개할 예정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부산서 北 긴급지원 밀가루 200t 선적식,” 2008. 5. 27)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1차분 6월 말 북한 도착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1차 선적분 밀 3만7천t과 옥수수 2만4천t이 각각 이달 말과 내달 말 북한에 도착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이미 5월 31일 서부 워싱턴주의 항구에서 밀 선적을 시작했고 오는 6월 16일부터는 남북 루이지애나 주 항구에서 옥수수 선적을 시작할 예정임.
- 미국산 밀은 북한에 도착하면 세계식량계획(WFP)가 북한에 보관 중인 비축식량과 혼합돼 북한 내 공장에서 학교 급식용 어린이 영양과자와 임산부용 인스턴트 국수 등으로 가공돼 북한 주민에게 공급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WFP를 인용해 보도함.
- 한편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21일 WFP에 대북 식량지원용 75만 유로(12만달러)를 기부했다고 VOA가 보도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의 대북 식량지원 1차분 이달 말 北 도착,” 2008. 6. 4)

□ 유럽 구호단체 대북 식량지원 활발

-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의 구호단체들이 대북 식량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네덜란드의 구호단체인 ‘도르가국제지원’은 이번 주부터 북한의 중부 지역 어린이 1,700여명에게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옥수수과 야채가 들어간 영양편빵을 향후 1년 동안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
- 2005년 북한 당국에 의해 활동 중단을 요구받고 철수하였던 스웨덴의 구호단체 ‘피엔유 인터라이프(PMU Interlife)’는 조만간 125만 달러 상당의 대북 식량지원사업을 재개할 계획임.
- 피엠유 인터라이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스웨덴 국제개발처(SIDA)는 향후 2년 동안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주민에게 식용 옥수수를 제공하고 농기계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4월 100만 유로 상당의 곡물 2,650톤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한 바 있으며 독일 정부는 지난 달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약 120만 달러를 WFP에 기탁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유럽 구호단체 대북 식량지원 활발,” 2008. 6. 14)

□ 호주 국제개발처, 북한, 파키스탄, 짐바브웨 식량지원

- 호주 정부는 로마에서 열린 FAO식량안보회의 직후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식량계획의 긴급지원 호소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3,00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 이번에 제공하는 원조는 호주 정부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의 2007~08년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임.
- 호주 정부가 이번에 밝힌 식량원조계획은 북한을 비롯하여 파키스탄과 짐바브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tralian food assistance to Pakistan, Zimbabwe, and North Korea, June 6. 2008)

□ 이탈리아 정부, 다자지원 형태로 북한에 식량 지원

- 이탈리아 정부는 북한의 인도지원 목적으로 세계식량계획에 50만 유로를 제공하였다고 밝힘.
- 이탈리아 정부가 제공한 원조액은 세계식량계획의 ‘DPRK PRRO 10488.0’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 식량지원에 사용될 예정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Government of Italy, Multilateral contribution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ne 18. 2008)

□ 한국 정부, 북한에 옥수수 5만 톤 지원 제안..북한, 무응답

- 정부는 지난 달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 직후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위한 접촉을 제안했으며 현재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밝힘.
- 김하중 장관은 6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해 합의된 옥수수 5만t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면서 약 3주 전 판문점 대한적십자사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옥수수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고 밝힘.
- 정부는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을 계기로 북측으로부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옥수수 지원을 요청받은 뒤 작년 12월 옥수수 5만t 지원을 결정했지만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중국의 식량 수출 쿼터제 실시 등으로 인해 집행이 늦춰지고 있음.
- 작년 지원을 결정할 당시 옥수수 가격은 톤 당 350달러였지만 현재는 420달러 정도게 달해 당초 추정된 금액으로는 5만 톤을 다 줄 수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한 5만 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제의에 대해 북측은 아직 명확한 답을 해오지 않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정부, 北에 옥수수 5만t 지원제안..北 무응답,” 2008. 6. 4)

□ 러시아의 대북 지원 식량 북한에 도착

- 러시아가 북한 제공하기로 약속한 식량 2,860톤이 열차 편으로 평안북도 신의주에 도착함.
- 이 식량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Xinhua News Agency, Russian food aid arrives in DPRK, Jul 08. 2008)
<http://www.korea-np.co.jp> (朝鮮新報, “ロシア提供の食糧到着,” 2008. 7. 16.

□ 미국의 5개 민간단체 북한에 식량지원 발표

- 머시코, 월드비전 등 미국의 5개 민간단체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식량 10만 톤을 미국 정부를 대행하여 전달키로 했다고 발표함.
- 대북 식량지원에 참여할 대행기관은 머시코(Mercy Corps)와 월드비전(World Vision) 이외 Samaritan's Purse, Global Resource Services, Christian Friends of Korea 등임.
- 이들 단체가 지원할 식량 지원 대상 지역은 평안북도와 자강도이며 주된 수혜자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55만 명임.
- 이들 단체들은 식량 지원에 앞서 9명의 전문가가 거의 3주 동안 북한의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식량 상황 평가를 실시하였음.
- 식량 상황 평가 결과 해당 지역의 주민은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영양실조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였음.
- 북한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량 재고가 거의 바닥 수준이어서 조만간 식량배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음도 확인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Mercy Corps, Samaritan's Purse, World Vision, Aid agencies to deliver U.S. food assistance to North Korea, June 30. 2008)

북한 고역 동향

1. 북한의 수입 동향

표 7. 북한의 주요 곡물류 대중 수입 실적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10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수입액(천 달러)							
2007.11	0	2,880	1,570	164	3,527	840	8,981
	(0)	(317)	(1,118)	(17)	(2,129)	(24)	(3,615)
12	0	1,758	7,217	164	5,350	72	14,561
	(0)	(592)	(1,191)	(0)	(2,646)	(30)	(4,459)
2008. 1	0	547	3,707	0	1,770	674	6,698
	(0)	(88)	(1,164)	(19)	(2,518)	(250)	(4,040)
2	0	6,875	2,976	2	0	1,331	11,184
	(0)	(268)	(1,952)	(19)	(1,257)	(686)	(4,181)
3	160	4,300	38	0	0	7,166	11,665
	(3)	(168)	(279)	19	(1,880)	(26)	(2,374)
4	0	0	0	0	0	97	97
	(0)	(662)	(2)	(40)	(2,888)	(467)	(4,059)
5	0	0	0	0	0	166	166
	(0)	(0)	(0)	(0)	(2,115)	(2,930)	(5,045)
6	0	11,504	0	0	0	0	11,504
	(0)	(431)	(2,903)	(0)	(2,581)	(3,754)	(9,669)
합 계	160	27,845	15,508	330	10,647	10,083	64,856
	(7)	(2,525)	(8,609)	(115)	(18,014)	(8,167)	(37,435)

수입량(천 톤)							
2007.11	0	14,400	5,065	364	13,565	1,424	34,818
	(0)	(2,113)	(3,855)	(57)	(10,138)	(62)	(16,225)
12	0	9,253	21,870	443	20,577	73	52,216
	(0)	(3,700)	(3,970)	(0)	(12,600)	(91)	(20,361)
2008. 1	0	2,605	11,233	0	6,556	1,087	21,481

	(0)	(550)	(3,880)	(0)	(10,948)	(658)	(16,036)
2	0	27,501	8,752	21	0	2,773	39,047
	(0)	(1,673)	(6,729)	(60)	(5,464)	(1,804)	(15,731)
3	390	15,927	99	0	0	14,930	31,346
	(13)	(985)	(845)	(60)	(8,173)	(71)	(10,147)
4	0	0	0	0	0	123	123
	(0)	(3,780)	(1)	(0)	(12,544)	(1,226)	(17,681)
5	0	0	0	0	0	210	210
	(0)	(0)	(0)	(0)	(8,956)	(9,912)	(18,868)
6	0	37,111	0	0	0	0	37,111
	(0)	(2,485)	(9,685)	(0)	(10,818)	(12,145)	(35,133)
합 계	390	107,032	46,966	828	40,518	20,658	216,392
	(26)	(15,335)	(28,948)	(373)	(79,648)	(25,987)	(150,317)

주: () 안은 전년 동기 실적임.

자료: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북한은 2007년 가을 수확 이후 2008년 6월까지 중국으로부터 216,392톤의 곡물류를 수입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수입이 44% 증가하였음.
-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은 6,486만 달러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음.
- 2007/08 양곡연도 동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을 늘리는 것은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07년 11월과 12월의 곡물 수입 증가 현상은 중국의 곡물 수출쿼터제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2008년 4~6월 동안 옥수수과 두류를 제외한 나머지 곡물의 수입실적이 전무함.
- 4~5월 동안 옥수수 수입 실적이 없었으나 6월에는 큰 폭으로 늘어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옥수수 수출 쿼터를 확대한 것으로 보임.
- 4월 이후 콩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6월에는 수입 실적이 없음.
- 밀가루는 1월 이후 수입 실적이 전혀 없음.
- 북한은 2008년 1~6월 동안 중국에서 총 21,488톤의 화학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수입액은 757만 달러임.
- 2007년 같은 기간의 수입량 55,327톤(수입액 8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 2008년의 수입 단가는 톤당 352달러로 2007년 같은 기간의 수입 단가 145달러에 비해 2배 이상임.
- 2008년 전체 수입 비료의 86%는 요소 비료이며 12%는 유안임. 2007년의 경우 요소와 유안 비료의 수입 비중은 각각 36%, 32%였음.
- 북한이 2008년 중국에서 수입한 화학비료를 성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9,000톤에 불과하여 적정 필요량의 1.5%에 불과함.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기 온

- 금년 4~6월의 기온은 평년에 비해 대체로 높았음.
 - 4~6월의 27개 관측지점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각각 2.0도, 0.4도, 0.5도 높았음.
 - 지역적으로는 북동부 지역이 평년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으며 북서부 지역과 중서부 지역은 각각 5월과 6월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간 낮은 현상을 보임.
- 금년 4~6월의 높은 기온은 겨울작물의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을에 수확할 벼와 옥수수 등 식량 작물의 파종과 발아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북동부 지역의 높은 기온은 봄감자 생육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6월 들어 곡창지대인 중서부 지역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간이나마 낮은 것은 가을에 수확할 작물의 초기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강수량

- 1~3월에 이어 4~6월의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낮아 지역에 따라서는 봄 가뭄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됨.
 - 4월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26.6mm로 평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5월과 6월의 강수량도 평년에 비해 각각 10.5mm, 33.2mm 적게 내렸음.
 - 지역별로는 5월의 경우 중서부 평야지대, 6월에는 북부 지방과 남포, 사리원, 신계 등 일부 서해안 지방의 강수량이 특히 적었음.
- 금년도 북한 지역은 3월을 제외하고는 6개월 동안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파종이나 이앙 등 봄철 농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감자, 보리, 밀 등 이모작 작물의 작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됨.
 - 가을 수확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의 기상이 가을 작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까지의 기상 상황은 중서부 평야지대의 작물 생육에 부정적임.

□ 누적강수량, 4~6월

단위: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211.8 (210.1)	194.0 (337.4)	228.3 (179.1)	137.0 (223.3)	91.1 (218.9)	201.4 (281.9)	129.7 (248.2)
김책	수풍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184.0 (175.1)	197.2 (227.1)	97.6 (272.4)	226.5 (242.0)	230.5 (273.2)	132.9 (262.4)	127.7 (223.3)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장전
73.1 (203.5)	126.6 (217.2)	166.8 (241.9)	312.9 (291.3)	215.9 (220.0)	105.3 (180.6)	238.9 (313.7)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104.0 (214.4)	135.5 (257.7)	204.0 (201.4)	232.2 (249.6)	175.6 (286.8)	191.5 (266.8)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C(기온), mm(강수량)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4월	기 온	11.8 (9.7)	12.7 (10.5)	13.2 (10.5)	9.2 (7.0)	11.8 (9.7)	12.5 (10.5)
	강수량	30.1 (37.3)	54.7 (53.4)	42.0 (57.4)	11.0 (36.4)	22.1 (54.2)	16.1 (56.6)
5월	기 온	16.2 (15.6)	17.0 (16.3)	16.1 (15.8)	12.6 (12.0)	16.6 (15.3)	16.9 (15.9)
	강수량	29.0 (71.3)	50.0 (68.9)	69.0 (73.8)	121.1 (42.0)	22.3 (57.6)	78.7 (84.7)
6월	기 온	21.2 (20.4)	21.7 (21.0)	21.1 (20.3)	16.7 (15.5)	19.1 (18.6)	18.8 (19.0)
	강수량	67.5 (108.6)	111.2 (97.7)	121.2 (118.4)	96.2 (100.7)	83.3 (111.5)	218.1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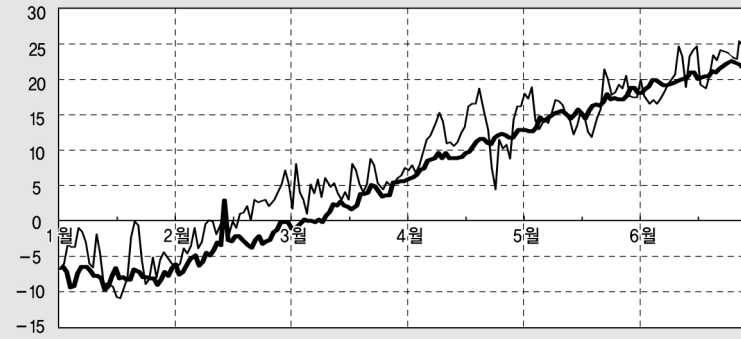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장전,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 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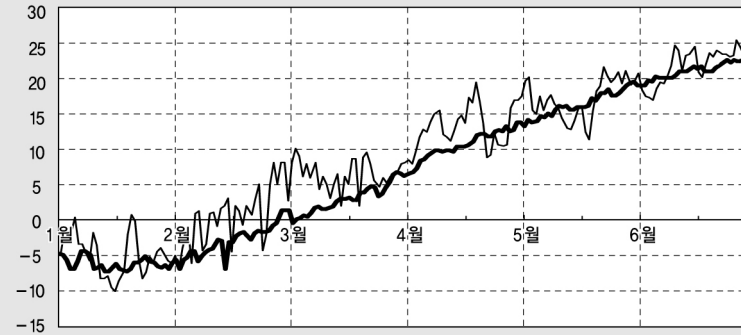
안주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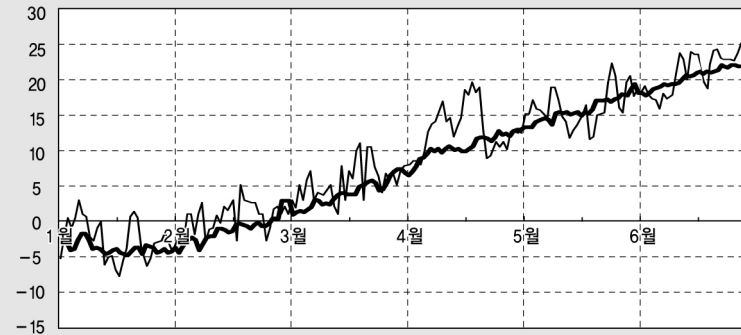
평양

기온(℃)



해주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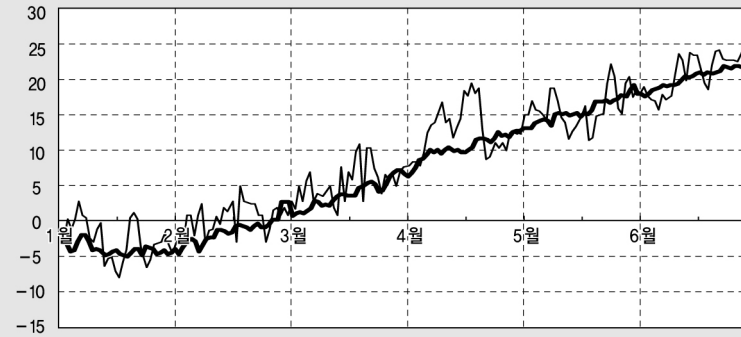


— 08년

— 평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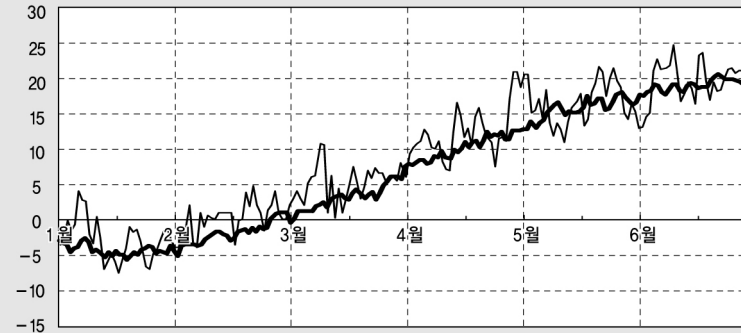
청진

기온(°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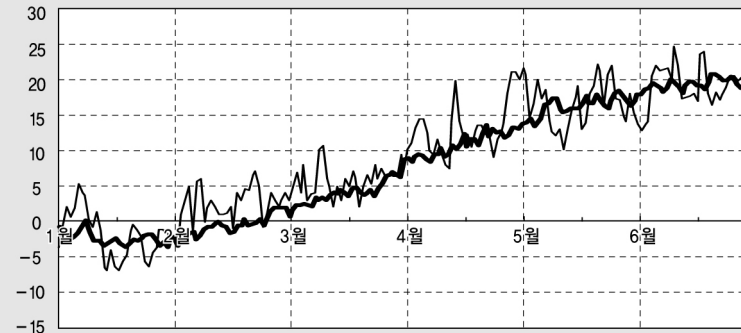
함흥

기온(°C)



원산

기온(°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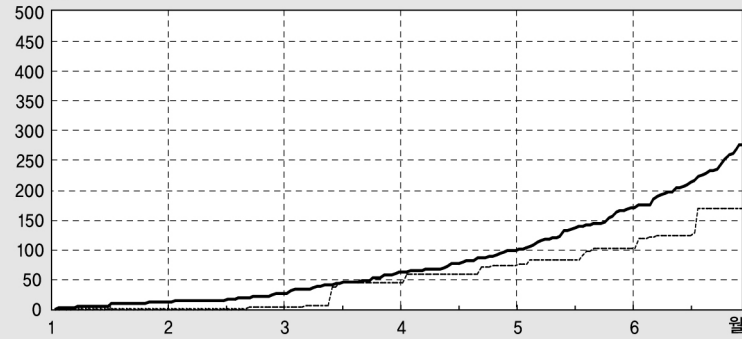
— 08년

— 평년 기온

□ 누적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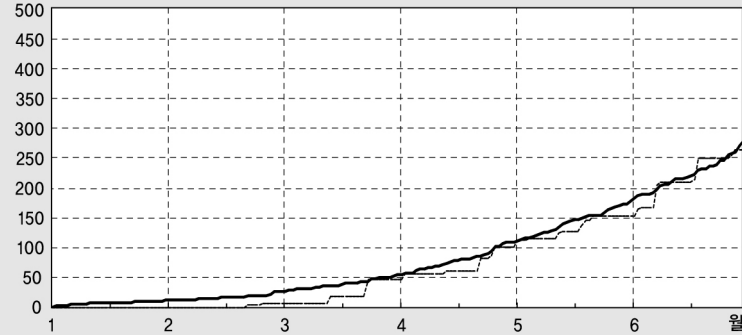
안주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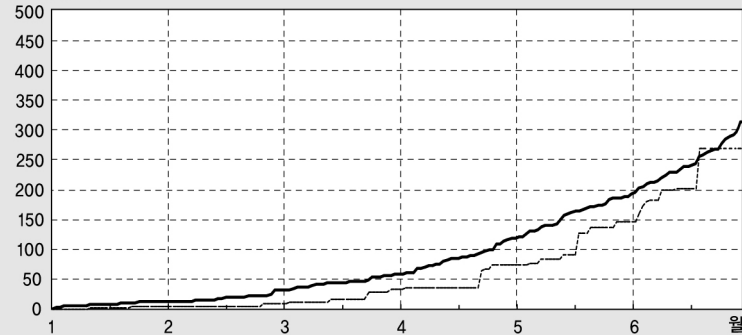
평양

강수량(mm)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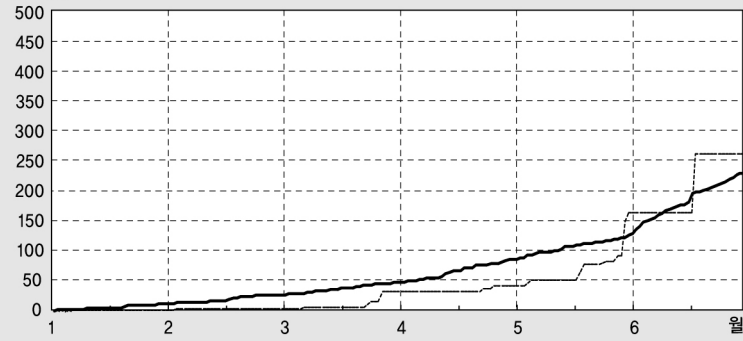
강수량(mm)



— 2008년 강수량 - - - - 평년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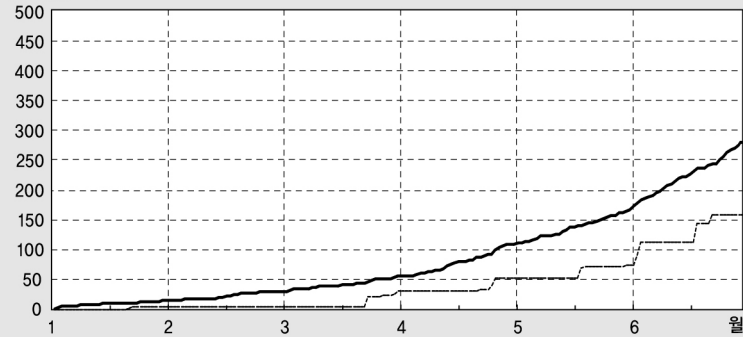
청진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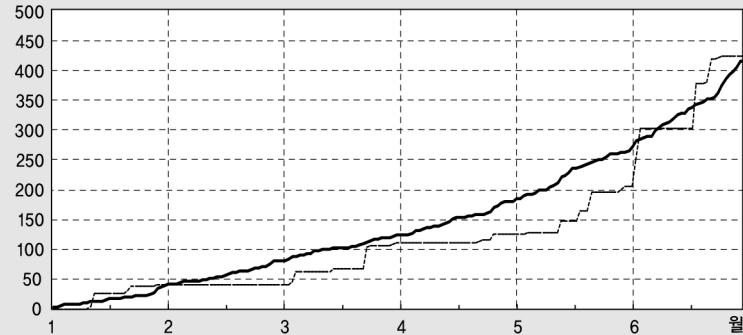
함흥

강수량(mm)



원산

강수량(mm)



— 2008년 강수량 - - - - - 평년 강수량

E02-2008-02 KREI 북한농업동향 제10권 제2호

찍 은 날	2008. 7.	펴낸날	2008. 7.
발 행 인	최 정 섭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2263-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